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mpliance
in Electronic Supervision
Focused on Curfew Order

박형민 · 박준희 · 황만성



머리말

2019년은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사회 내 처우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에 대해서는 도입을 전후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전자감독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준수사항의 법적인 성격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재범예방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야간외출제한을 비롯한 준수사항이 다양하게 부과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었다. 특히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의 운영이 법적인 기반이 없이 자체적인 지침과 실무자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었기에 제도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전자감독 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을 환기시킨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수시과제를 제안해 준 법무부 특정범죄 관리과의 담당자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과제 제안 이후 효과성 측정을 위한 양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일선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얻어주어 보호관찰 직원들과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연구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과 법무부의 가교역할을 해 주고,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정진경 사무관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자감독 제도와 준수사항의 운영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들려주신 일선의 보호관찰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꺼내기 쉽지 않은 전자감독 대상자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들 드린다.

아울러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황만성 교수님의 노고와, 법무부에서 제공해 주신 새로운 자료를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전자감독과 준수사항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신 박준희 전문연구원의 수고를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전자감독의 준수사항에 관한 완결적인 성과를 내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연구가 향후 전자감독과 준수사항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보호관찰의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연구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10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박 형 민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서 론 · 박형민	5
-----------------------	---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7
---------------------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8
-----------------------	---

1. 연구의 구성	8
-----------------	---

2. 연구 방법	9
----------------	---

제2장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 황만성 ···	11
--------------------------------------	----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논의의 배경	13
------------------------------	----

제2절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부과 이론적 논거	16
----------------------------------	----

1.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의 의의와 필요성	16
--------------------------------	----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17
---------------------------	----

3.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22
----------------------	----

제3절 외출제한명령의 부과와 집행	28
--------------------------	----

1. 준수사항 부과 현황	28
---------------------	----

2. 외출제한명령의 부과 현황	31
------------------------	----

3. 준수사항 집행과 보호관찰관의 임무	32
-----------------------------	----

제4절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39
--------------------------	----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현황	39
-----------------------	----

2. 위반시 제재방안	40
-------------------	----

3. 실무에서의 제재수단	41
---------------------	----

| 제3장 | 준수사항 부과의 효과성 • 박준희 43

제1절 효과성 분석내용	45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	46
제3절 효과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48
1. 연구목적	48
2. 분석대상	50
3. 변수의 설정	51
4. 분석 방법	60
제4절 기초통계량	60
1. 전체 분석 대상	61
2. 각 변인별 재범에 미치는 효과	88
제5절 효과성 분석결과	107
1. 비교집단 구성: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107
2.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 비교집단과의 재범률 차이	110
3. 재범에의 영향요인	111
제6절 소결	117

| 제4장 |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 박형민 119

제1절 피면접자 특성	121
제2절 보호관찰 직원의 인식	123
1.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재범방지 효과	123
2. 재검토가 필요한 준수사항	127
3.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일시감독정지	134
4. 준수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	141
5. 기타 개선 사항	148

제3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식	151
1. 전자감독 또는 준수사항 부여에 대한 순응	151
2. 전자감독 또는 준수사항 부여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153
3. 준수사항 위반 경험	160
4. 준수사항 위반 충동 여부	162
5. 일시감독정지 경험	163
6. 준수사항의 긍정적 효과	165
7. 제도 개선 의견	166
제4절 소결	168

| 제5장 | 결 론 • 박형민·황만성 171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과 효과성	173
1.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173
2. 준수사항 부과 효과성	174
3.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174
제2절 준수사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75
1. 개인 특성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	175
2.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의 근거규정 신설	177
3. 보호관찰 전담 판사 제도 운영	179
4. 준수사항 부과 내용 정비	179

참고문헌 183

Abstract 187

표 차례

〈표 2-1〉 전체 연도별 분포	29
〈표 2-2〉 전체 연령별 분포	29
〈표 2-3〉 전체 범죄유형	29
〈표 2-4〉 연도별 범죄유형	30
〈표 2-5〉 처분유형	31
〈표 2-6〉 준수사항 부과현황	31
〈표 2-7〉 연도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	32
〈표 2-8〉 외출제한명령 위반건수 및 위반율	39
〈표 3-1〉 부착명령 실시사건* 현황	49
〈표 3-2〉 전자감독 및 성범죄자 재범 관련 선행연구	52
〈표 3-3〉 재범유발 요인	53
〈표 3-4〉 범죄 죄명 분류	54
〈표 3-5〉 성범죄자 유형	55
〈표 3-6〉 정신질환 분류 : DSM-5 기준	57
〈표 3-7〉 처분유형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유형	58
〈표 3-8〉 연도별 범죄 유형	61
〈표 3-9〉 지역적 분포	62
〈표 3-10〉 연령별 분포	62
〈표 3-11〉 학력별 분포	63
〈표 3-12〉 혼인상태	64
〈표 3-13〉 동거인 유형	64
〈표 3-14〉 동거인과 친밀도	65
〈표 3-15〉 직업유무	66
〈표 3-16〉 경제적 상태	66
〈표 3-17〉 주거안정성	67
〈표 3-18〉 범죄 유형별 차이	68
〈표 3-19〉 본건 죄명	69
〈표 3-20〉 재범 죄명	70
〈표 3-21〉 본건 피해자 성별	71
〈표 3-22〉 재범 피해자 성별	71
〈표 3-23〉 본건 피해자와의 관계	72

〈표 3-24〉 재범 피해자와의 관계	72
〈표 3-25〉 감독상태	73
〈표 3-26〉 위치추적기간 여부	73
〈표 3-27〉 재범 시기별 구분	74
〈표 3-28〉 범행시간 야간 여부	75
〈표 3-29〉 본건 시간대별 분포	75
〈표 3-30〉 재범 시간의 야간여부	76
〈표 3-31〉 재범 시간대별 분포	76
〈표 3-32〉 재범 빈도	77
〈표 3-33〉 범죄 경력	77
〈표 3-34〉 수사의뢰 횟수	78
〈표 3-35〉 공범 수	78
〈표 3-36〉 신상정보 공개 여부	79
〈표 3-37〉 처분 유형	79
〈표 3-38〉 가해제 여부	80
〈표 3-39〉 진단자 및 의심자 여부	80
〈표 3-40〉 진단자와 의심자의 교차 분석	81
〈표 3-41〉 입원 경험	81
〈표 3-42〉 연도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	82
〈표 3-43〉 위치추적장치 훼손 여부	82
〈표 3-44〉 심리치료 경험 여부	83
〈표 3-45〉 심리치료와 재범간의 관계	84
〈표 3-46〉 정신질환 유형별 범죄 분포	86
〈표 3-47〉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여부에 대한 정신질환 유형의 분포	87
〈표 3-48〉 학력별 차이	88
〈표 3-49〉 학력별 차이 분석	88
〈표 3-50〉 재범에 대한 연령의 효과	89
〈표 3-51〉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	89
〈표 3-52〉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90
〈표 3-53〉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	90
〈표 3-54〉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	91
〈표 3-55〉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91
〈표 3-56〉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92
〈표 3-57〉 주거안전성에 대한 차이	92

〈표 3-58〉 주거안정성에 따른 차이 분석	93
〈표 3-59〉 동거인과의 친밀도에 따른 차이	93
〈표 3-60〉 동거인과의 친밀도에 따른 차이 분석	94
〈표 3-61〉 범죄유형별 차이	94
〈표 3-62〉 범죄유형별 차이 분석	95
〈표 3-63〉 본건 세부 죄명별 재범률 차이	95
〈표 3-64〉 본건 세부 죄명별 재범률 차이 분석	96
〈표 3-65〉 처분유형에 따른 차이	97
〈표 3-66〉 처분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97
〈표 3-67〉 감독여부에 따른 차이	98
〈표 3-68〉 감독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98
〈표 3-69〉 신상정보공개여부에 따른 차이	99
〈표 3-70〉 신상정보공개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99
〈표 3-71〉 장치 훼손여부에 따른 차이	100
〈표 3-72〉 장치 훼손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101
〈표 3-73〉 가해제 여부에 따른 차이	102
〈표 3-74〉 가해제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102
〈표 3-75〉 입원경험 유무	103
〈표 3-76〉 입원경험 유무 분석	103
〈표 3-77〉 정신질환 진단자 여부에 따른 차이	104
〈표 3-78〉 정신질환 진단자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104
〈표 3-79〉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차이	105
〈표 3-80〉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106
〈표 3-81〉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프로빗 분석결과	107
〈표 3-82〉 NN(Nearest Neighbor) matching 결과	108
〈표 3-83〉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매칭의 질 평가: 매칭전후	109
〈표 3-84〉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 비교집단과의 재범률 차이	111
〈표 3-85〉 재범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114
〈표 3-86〉 야간시간 재범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116
〈표 4-1〉 보호관찰 직원 피면접자 분포	121
〈표 4-2〉 전자감독 대상자 피면접자 분포	122

그림 차례

[그림 3-1] 심리치료와 재범간의 관계	84
[그림 3-2] 정신질환 유형별 분포	85
[그림 3-3] 성향점수 매칭 결과	108
[그림 3-4] 성향점수 매칭 결과(2)	109

국문요약

전자감독은 일정 시간대에 한하여 범죄자의 외출을 금지시켜 제약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범죄자의 위반행위 내용이 명료하다는 점에서 사회방위 및 범죄자의 사회복귀, 명확성의 요소를 충족시키나 합리성 및 합헌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감독은 제도 도입시기부터 사생활 및 주거이전의 자유제한, 경제력에 따른 평등권 침해여부 등 헌법상의 권리침해 여부가 제도의 법적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처우에 대한 거부감 또는 인식에 대한 반발과 저항가능성, 낙인효과와 회피가능성 또한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자감독에 대한 논의는 ‘전자감독’ 자체의 법적 성격 및 타당성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감독은 그 목적이 전자감독을 ‘통한’ 재범예방에 있으므로, 전자감독 그 자체 뿐 아니라 ‘야간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과 같은 부과 명령의 타당성 및 효과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재범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야간외출 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운영 실태 및 효과성을 연구하여, 전자감독이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의 실무적 적용에 있어서 전자감독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의 경우 재량권의 범위가 모호하며, 특히 외출제한, 야간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결국 준수사항을 둘러싸고 사회내 처우라는 측면과 범죄예방을 위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효과적인 실무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전자감독은 그 목적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전자감독제도 그 자체 뿐 아니라 준수사항의 내용과 집행도 그 목적 달성에 있어서

2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예방목적을 가진 처우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수사항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추가 변경 삭제가 허용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며 그 집행에 있어서의 효력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준수사항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그 준수사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정변경에 의한 준수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전담보호관찰관의 판단을 기초로 한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정당한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준수사항 부과 효과성

준수사항 부과가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주요 변수로는 나이와 교육, 동거인과의 친밀도, 경제수준, 결혼여부 등이었다. 특히 결혼은 모든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에서 재범억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법 시행 이후 대상이 성범죄 외에 살인, 강도, 유괴로 점차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 범죄유형별로 구분해서 분석해보았으나, 범죄유형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의 확률이 높은 범죄자 유형은 수사의뢰횟수가 많은 경우와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가해제 대상인 경우였다.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성범죄와 가장 크게 관련성을 가지는 유형은 변태성욕장애와 충동조절장애로 나타났으며, 살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질환은 정신증적 장애와 인격성 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보호관찰직원들은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따라 준수사항에 대해 일시 감독정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때 보호관찰관의 최종 판단을 따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담당자의 재량과 판단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직원들은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생업, 효과적인 사회복귀 등을 위해 준수사항에 대한 일시 감독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준수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장소에의 출입금지’ 등 일부 준수사항은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감독 이외에 여러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재범억제를 위해 준수사항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대체로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감독 기간과 준수사항 부과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호관찰직원들 중에서도 감독 기간이 긴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직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일정기간 위반하지 않을 경우 ‘가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대상자와 보호관찰 직원이 있었다.

○ 정책제언

먼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절히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착명령의 청구단계에서 범죄와 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전문화해야 할 것이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특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범방지와 피부착자의 사회화에 가장 효과적인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의 청구전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판결전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과 양형기준 등과 같이 준수사항 부과 기준 등을 만들어 범행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부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범방지와 원만한

4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사회적응을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일시정지를 허가해주는 것이 전자장치부착법과 보호관찰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무상으로도 생업종사 등의 사유에 관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정이 없이 내부지침인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러한 집행에 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재범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기반의 안정, 가족관계의 유지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준수사항의 일시적 정지는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호관찰 전담 판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내 처우의 확대 경향으로 인해, 향후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및 운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호관찰 전담판사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준수사항에 대한 일시 정지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운영의 신속성과 합리성을 위해서는 판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준수사항 부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및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대체로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일부 실질적 효과가 의심되는 준수사항도 기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보호관찰 직원들의 인식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장소에의 출입금지’ 규정은 운영도 어렵고 효과도 의심스러우므로, 이같은 준수사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야간외출제한’, ‘접근금지’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이외에 ‘생업종사’, ‘병원진료’ 등 사회복귀를 위한 준수사항도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취업알선’, ‘치료비 지원’ 등의 적절한 지원이 수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박 형 민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운영 실태 및 효과성을 연구하여, 전자감독이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준수사항 운영의 실태 및 효과분석을 통해 준수사항 감독방식 개선을 제언하여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일정 시간대에 한하여 범죄자의 외출을 금지시켜 제약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범죄자의 위반행위 내용이 명료하다는 점에서 사회방위 및 범죄자의 사회복귀, 명확성의 요소를 충족시키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 및 합헌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도입시기부터 사생활 및 주거이전의 자유제한, 경제력에 따른 평등권 침해여부 등 헌법상의 권리침해 여부가 제도의 법적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처우에 대한 거부감 또는 인식에 대한 반발과 저항가능성, 낙인효과의 회피가능성 또한 제기된 바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자감독에 대한 논의는 ‘전자감독’ 자체의 법적 성격 및 타당성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감독은 그 목적이 전자감독을 ‘통한’ 재범 예방에 있으므로, 전자감독 그 자체 뿐 아니라 ‘야간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과 같은 부과 명령의 타당성 및 효과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재범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운영 실태 및 효과성을 연구하여, 전자감독이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의 실무적 적용에 있어서 많은 모호한 사항이 존재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직접 관리해야 하는 보호관찰관 및 직원들을 위해서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에 대해 재량권의 범위가 모호하며, 특히 야간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 내 치우라는 측면과 범죄예방을 위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효과적인 실무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의 실무적 적용을 위해 이들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에 대해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준수사항이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제3장 준수사항 부과 효과성”에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내부자료를 분석하여 준수사항의 연도별 부과율(부과기간, 형태), 위반율, 위반자 재조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들 변수를 통해 준수사항 부과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제4장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에서는 보호관찰관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준수사항 부과 의제효과 및 저항효과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준수사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법적, 제도적 논거를 제시하는 문헌연구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양적 분석, 보호관찰 직원과 전자감독 대상자 면접 결과를 분석하는 질적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법적, 제도적 논거를 제시하는 문헌연구는 제2장에서 사용된 방법이며, 제3장은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총 6,544명의 부과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를 양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보호관찰관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와 이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통해 전자감독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제 2 장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황 만 성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논의의 배경

2006년 용산 초등학교 성폭행사건 이후,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종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소위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 4. 27.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재범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2008. 10. 28.로 예정된 시행일에 이르기 전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국회는 다시 2008. 6. 13. 법률을 개정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법원이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외출제한·특정장소에서의 출입금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 제정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행일이 10월이었던 것도 2008년 개정을 통해 9월로 앞당겨지기도 하였다.

위 법률은 2009. 5. 8. 다시 개정되면서, 그 대상범죄로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추가하고 법률의 명칭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2010. 4. 15.에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세분하여 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 검사가 부착명령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로 연장하고, 법원이 부가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 지역의 제한”을 추가하였으며, 피부착자의 주거이전 및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형집행 중이거나 집행종료·가종료·가출소·가석방·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법률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의 명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2008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서 뿐 아니라, 법률이 개정되어 그 대상과 요건이 확대·완화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러한 논의들은 전자감독제도의 법적인 성격 및 타당성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¹⁾

전자감독은 그 목적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있으

1)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2005, 239-251면;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여름호, 147- 174면;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658-673면;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가을호, 201 -228면;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2008, 225-251면;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2009/6, 321- 349면; 김재중,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18 권 제1호, 2010/4, 203-232면; 장연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0권 제2호, 2010, 137-162면; 강호성·문희갑, “전자팔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보호관찰 제10 권 제2호, 2010, 39-135면; 박선영·심희기·이춘화,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형사정책연구원, 2010; 이수정·황의갑·박선영,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형사정책연구원, 2010; 정지훈, 보안처분의 기능과 정당화 과제 -형 집행 종료 후 개시되는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15).; 최정향,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14. 9.).; 서보학,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2013).; 강호성,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2014) 등

로, 전자감독제도 그 자체 뿐 아니라 ‘야간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과 같은 준수사항의 내용과 집행도 그 목적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준수사항의 내용이 신설되고 추가되었으며, 준수사항의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준수사항의 부과명령의 타당성 및 효과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재범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운영 실태 및 효과성을 연구하여, 전자감독이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의 실무적 적용에 있어서 이들의 법적 성격을 논의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에 대해 재량권의 범위가 모호하며, 특히 외출제한, 야간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내 처우라는 측면과 범죄예방을 위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전자감독 제도의 효과적인 실무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부과 이론적 논거, 외출제한명령의 부과·집행, 준수사항 집행과 보호관찰관의 임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수사항 부과와 집행에 있어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기로 한다.

제2절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부과와 이론적 논거

1.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의 의의와 필요성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에서는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①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②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③주거지역의 제한, ④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⑤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⑥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은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일반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동조 제3항에서는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일반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 동조항에서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②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③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④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⑤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이 있다.

2) 「보호관찰법」 제32조의 준수사항과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준수사항은 기본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한 것인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중복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입법론적으로 양자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한영수/강호성/이형섭, 한국 전자감독제도론, 117면).

이처럼 보호관찰대상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저지른 범행 및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대상자의 생활습관이나 환경에서 초래되는 범행에의 유혹을 차단하여 대상자 스스로에게도 정상적인 재사회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다고 할 것이다.

이는 「보호관찰법」 제3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처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별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위하여 개별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의 내용과 종류도 구체화되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의 내용과 종류,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 제대로 파악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범죄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동기,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자의 특성 및 생활태도, 가족사항, 성장과정, 학력사항, 직업사항, 주거 및 경제상태, 대인관계 및 여가활동, 음주 흡연 여부, 인지능력, 건강상태, 정서 및 성격특성과 같은 가정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이 반영된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1) 논의의 출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입법과정에서는 물론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꾸준히 논의가 있어 왔다. 논의의 중점은 종래 형벌과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문제,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종래의 보안처분의 정당성의 논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은, 형집행정지 후 부과되는 부착명령(「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내지 제21

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전자장치 부착의 소급적용이 죄형법적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견해의 차이

가. 형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

현행법상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재사회화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안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³⁾, 징벌적 규제적 성격이 강한 전자형벌이라는 입장⁴⁾, 사회복귀의 수단 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로서의 형벌이라는 입장⁵⁾ 등이 있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견해⁶⁾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에 비추어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형 집행 후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부과되는 추가적 제재인 동시에 자유의 제한 내지 인격권의 침해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들은 일반적인 보안처분에 법적 성격에 관한 종래의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보안처분의 실질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는 견해로서, 재범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실질적 자유의 제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고 보는 견해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종료 후의 전자장치의 부착은 당해 범죄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재이며, 이는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라고 하며, 보안처분

3) 김봉수,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36집, 68-72면. 이 견해는 전자장치 부착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형 집행종료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에는 형벌 또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가석방 등, 집행유예시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4) 원혜옥,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보호관찰 제12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90면; 이인영,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2013),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918면;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205면

5)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366면

6)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2008. 12, 234면

중에서도 시설 내에서 집행되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아닌 시설 밖, 즉 사회 내에서 집행되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는 입장⁷⁾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보안처분이라고 보는 견해

종래의 보안처분의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사부재리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보안처분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논거는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결⁸⁾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제도의 목적, 요건, 보호관찰 부가 등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형벌과 구별되므로,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⁹⁾는 입장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이나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논의내용에는 전자감시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보다는, 일사부재리와 관련한 논의에서 합헌론이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보안처분으로서의 목적 및 그 정당성을 논하는데 그쳤으며,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그 법적 처분이 보안처분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형벌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 즉 ‘장래의

7)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658면

8)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9)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 201헌바393(병합)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 부착명령의 보안처분적 성격이 과연 이러한 인식 내지 판단기준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비판적 견해가 주목을 끈다.¹⁰⁾

(3) 검토 -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유형별 검토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¹¹⁾, '가석방 및 가중료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¹²⁾ 그리고 '집행유예시의 전자장치 부착'¹³⁾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은 일반적인 전자감시제도로 시행되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형벌대체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¹⁴⁾ 서구의 전자감시제도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의 해결, 구금비용의 절감, 구금에 의한 범죄감염의 문제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는 점¹⁵⁾과는 달리 현행법의 3가지 유형은 형종료후 또는 가석방 및 집행유예시의 감시장치부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징역형 종료 이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부착목적 내지 입법취지(제1조) 그리고 ②재범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제5조) 등을 들어, 그 법적 성격을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부정하는 견해¹⁶⁾도 있으

10) 김봉수, 앞의 글, 62-63면

11) 제2장(제5조-제21조)

12) 제3장(제22조-제27조)

13) 제4장(제28조-제31조)

14) 김봉수, 앞의 글, 67면;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217-223면.

15) 이러한 전자감시 유형은 단기구금에 의해 경범죄자가 범죄학습기회를 얻거나, 약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형벌대체수단이기 때문에, 주로 비폭력적인 범죄자, 재범위험성이 낮은 자, 중요범죄의 전과가 없는 자, 약물남용의 전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김봉수, 앞의 글, 69-72면. 그 논거로 본래 전자감시제도는 처벌보다는 재사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로서 재사회화의 가능성이 높은 교통법규위반범죄, 절도범죄, 마약범죄, 가정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초범자’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하여 우리의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오히려 강력범죄(성폭력, 미성년자유괴, 살인 등)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를 그 적용대상군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 장래의 위험성에 터잡고 있는 보안처분의 본질상, 재범위험성은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 특유의 성격표지인 동시에 처분의 정당화근거가 되는데 어떠한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형집행정료자의 재범위험성을 조사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행법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 보안처분이 지향하는 교육·교화·치료에 의한 ‘재사회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나, 전자장치 부착법 제1조는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7항은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과 별개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하고 형벌의 종류를 법정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집행의 형태와 강도를 보더라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일정한 준수사항 부과 및 전자장치 부착 그 자체로 인해서 부착자의 행동의 자유가 법적·사실적으로 제한되지만, 모든 형사제재는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수반하고, 전자장치 부착으로 부착대상자가 사회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3개월마다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 그 중에서도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석방 및 가종료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단지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적은 인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적인 기술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입장¹⁷⁾도 있으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판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 유형에 따른 전자감시의 법적 성격은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가석방 및 보호관찰의 수단 내지 보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⁸⁾

형집행유예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현행법 제28조는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램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집행종료자에 대한 전자감시를 재사회화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17) 법적 성격은 동일하게 이해하면서도 제도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의문을 갖는 견해도 있다. 즉, 개선의 점이 있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자에게 사회내처우로서 허용되는 가석방결정하면서 굳이 의무적 부착에 의한 획일적인 감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이 가석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호관찰의 능률성 제고 및 행정감독상의 편의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김봉수, 앞의 글, 72-73면

18) 장연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0권 제2호, 2010, 145-150면.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착기간 중 의료적인 치료나 상담치료 등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여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 준수사항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의 집행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보호관찰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형의 양정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범위험성 보다는 당해 범죄의 종류와 경중 및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적 성격이 감쇄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1)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준수사항과 「보호관찰법」상의 준수사항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3가지 유형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부착명령의 주체와 요건을 구별하고 있으며 준수사항의 내용에 관한 규정도 「전자장치부착법」이나 「보호관찰법」에 규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준수사항의 근거와 내용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즉,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과 사회방위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가 일정한 성폭력범죄자 가운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사실판단을 참고로 하여 법률가인 검사와 판사가 이를 결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범죄자의 죄질, 재범 위험성의 경중,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준수사항 부과 여부 및 부착기간을 차별화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또한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되고(제9조 제7항),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은 부착명령의 요건에 대한 심사, 그에 따른 부착명령의 선고 여부 및 선고되는 부착기간의 결정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는 전자감시 부착명령이 형벌과 그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징역형의 대체수단으로 취급하여 함부로 양형을 감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¹⁹⁾

한편, 2010. 4. 15.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그런데 이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보호관찰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요소는 지도·감독과 원호(또는 보호)로서, ‘지도·감독’이란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고, ‘원호’는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위치추적 감시는 이러한 지도·감독과 원호의 수단이 된다.

이처럼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준수사항은 전자감독대상자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일반적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준수사항도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저지른 범행 및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대상자의 생활습관이나 환경에서 초래되는 범행에의 유혹을 차단하여 대상자 스스로에게도 정상적인 재사회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준수사항과 그 목적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내용과 종류도 양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1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 참조

(2) 형벌과 준수사항

가. 논의의 이유

검사는 특정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특정범죄사건의 형벌과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같이 선고된다. 준수사항이 형벌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특별히 부과된 준수사항의 성격의 형벌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의는 법원이 선고한 형벌 또는 준수사항에 관하여 향후 집행기관이 이를 변경, 일시정지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련하여 중요한 논거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벌의 확정력과 탄력적 형의 집행

먼저, 형벌의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를 통한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력이 발생한다. 재판의 확정은 형식적 확정과 내용적 확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 확정의 효력도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으로 나뉜다.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의 절차면에서의 효력으로서 중급재판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종결되며, 그 시점이 재판집행의 기준이 된다²⁰⁾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에 따라 그 의사표시적 내용도 확정되는데 이를 내용적 확정이라고 하며, 재판의 내용적 확정에 의하여 그 판단내용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내용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재판이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재판에 있어서는 집행력이 발생하며, 특히 형을 선고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형벌집행력이 발생한다. 재판이 확정되면 그 판단내

20) 형사소송법 제459조

용이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후소법원도 동일한 사정하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를 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이라고 하며 재판의 불가변적 효력을 의미한다.²¹⁾

이처럼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다른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는 기관도 당연히 형의 집행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징역형 등 형벌의 경우에도 형의 집행중 가석방을 하거나, 형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아닌 가석방위원회나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 전에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²²⁾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²³⁾ 가석방제도는 죄를 뉘우치고 있는 수형자에게 불필요한 구금기간을 단축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특별예방적 목표를 염두에 둔 제도이다. 가석방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에게 수형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수형기간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자유형의 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에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향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²⁴⁾

한편,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인 때,

21) 형식재판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재기소가 허용된다. 이때 사정의 변경이란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22) 형법 제72조, 제76조

23) 이에 대하여 당초 형을 선고한 법원이 가석방 심사의 주체가 되는 사법처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각주 보충

24) 형사소송법 제470조

③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²⁵⁾

법원의 형의 선고와 확정에 의하여 발생한 형벌의 집행력은 다른 집행기관이나 법원은 물론 당해 법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재사회화와 원만한 사회복귀의 목적에 따라 탄력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처우의 목적에 정당화되기도 하며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제도와 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3)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형벌의 본질적 내용과 효력, 판결확정의 불가변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예방목적을 가진 처우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준수사항이 보안처분의 구체적인 처우라는 법적 성격은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여러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준수사항의 부과는 그 전제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을 선고할 때에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²⁶⁾, 전자장치부착명령-준수사항은 전제적으로 자유제한적 보호관찰의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5) 형사소송법 제471조

2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향후 준수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의 선고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수사항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추가 변경 삭제가 허용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며 그 집행에 있어서의 효력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형벌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불가변력을 가지게 되는데에 반하여 준수사항에 관하여 향후 이를 변경신청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재판의 확정력이 미치는 범위의 별도의 부수처분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준수사항의 변경은 그 목적이 대상자의 재범방지, 재사회화라는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정료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보호관찰소장²⁷⁾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을 보호관찰의 본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치료, 전자장치의 교체, 그 밖에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착자의 신체 또는 주거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처럼 형벌과의 본질적 차이점, 준수사항 변경 삭제제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가해제 제도, 전자장치의 일시분리 등을 고려할 때, 준수사항은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법원이 준수사항의 부과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자유를 일정한

27) 구체적으로는 당해 대상자를 전담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주체가 될 것이다.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예방목적에 가진 처우프로그램이어야 하므로 준수사항의 내용 자체가 그러한 특별예방 목적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처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⁸⁾ 준수사항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대상자에 따라 개별화 되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및 재사회화에 적합한 수준의 내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3절 외출제한명령의 부과와 집행

1. 준수사항 부과 현황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준수사항이 부과된 경우는 <표 2-1>과 같이 전체 6,544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도와 2013년도 그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200명 가까이 증가한 원인도 있으나 성범죄자에 대한 것이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의 법에서 소급적용을 규정함으로써 이미 형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자감독을 청구한 사건이 증가한 것도 증가의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에 준수사항 부과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개정에서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였지만, 2013년도에 강도죄를 대상범죄로 하여 준수사항이 부과된 사례가

28) 같은 취지로는 김성돈, “보호관찰 실효성 활성화 방안”,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그와 같은 특별예방적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생활수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적극성을 펼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하나도 없는 반면에, 성범죄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가 전년 대비 2.9배(300명에서 859명)나 급증한 것은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1〉 전체 연도별 분포

	전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명	6,544	183	419	672	1,037	635	1,178	866	621	802	131

주: 당해 연도에 판결을 받은 대상자를 의미함. 누적 대상자 분포와는 상이.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작자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대가 1,9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1,696명이며 50대가 1,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로 인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고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가 전체 중 55.5%에 달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연령분포와 관련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3〉에서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성범죄로 인하여 부과받은 자가 3,634명으로 55.5%에 이르고 있고, 살인죄인 경우가 2,276명으로 34.8%이며, 강도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624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유괴범인 경우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전체 연령별 분포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명	6,544	30	902	1,696	1,992	1,410	388	126
%	100	0.5	13.8	25.9	30.4	21.5	5.9	1.9

〈표 2-3〉 전체 범죄유형

	전체	강도범	살인범	성범죄	유괴범
명	6,544	624	2,276	3,634	10
%	100	9.5	34.8	55.5	0.2

〈표 2-4〉에서와 같이 준수사항이 부과된 연도별 현황을 보면, 매년 준수사항이 부과된 대상자에 많은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의 주요원인은 성범죄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변동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전자장치 부착요건이 완화되거나 특정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준수사항의 부과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연도별 범죄유형

	전체	강도범	살인범	성범죄	유괴범
2008	183	0	0	183	0
2009	419	0	0	419	0
2010	672	6	223	442	1
2011	1,037	0	412	622	3
2012	635	2	330	300	3
2013	1,178	0	319	859	0
2014	866	151	222	493	0
2015	621	198	243	179	1
2016	802	227	446	127	2
2017	131	40	81	10	0
명	6,544	624	2,276	3,634	10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원인된 처분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현황을 보면, 가석방으로 인하여 준수사항이 부과된 경우가 3,278명으로 50.1%에 이르며, 소급형기종료가 1,501명으로 22.9%, 형기종료 1,268명으로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처분유형

	명	%
가석방	3,278	50.1
가종료	250	3.8
가출소	86	1.3
소급형기종료	1,501	22.9
집행유예	161	2.5
형기종료	1,268	19.4
합계	6,544	100

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표 2-6〉에서와 같이,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7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이 749명, 접근금지명령이 742명, 출입금지명령이 380명, 주거지역제한명령이 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준수사항 부과현황

	명	%
야간외출제한명령	749	11.4
출입금지명령	380	5.8
주거지역제한	80	1.2
접근금지명령	742	11.3
이수명령	757	11.6
기타	3,967	60.6
전체	6,544	100

2. 외출제한명령의 부과 현황

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는 749명으로 전체 준수사항중 약 11.4%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도와 2010년에 외출제한명령이 가장 많이 부과되었고 각각 163명, 144명이 그 대상자가 되었다.

다른 준수사항과 비교하여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비율은 2010년도에 21.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표 2-7〉 연도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

	전체	외출제한명령	그외	부과율(%)
2008	183	5	178	2.7
2009	419	31	388	7.4
2010	672	144	528	21.4
2011	1,037	112	925	10.8
2012	635	33	602	5.2
2013	1,178	163	1,015	13.8
2014	866	103	763	11.9
2015	621	58	563	9.3
2016	802	91	711	11.3
2017	131	9	122	6.9

3. 준수사항 집행과 보호관찰관의 임무

(1)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원호

「전자장치부착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하도록 그 임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이에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유지, 주거이전 신고 의무 등의 피부착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지도,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의 필요조치 이행협력을 위한 지도, 기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 등을 의미한다.²⁹⁾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관찰법」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도·감독의 방법으로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고, 피부착자에게 「보호관찰법」 제32조 및 「전자장치부착법」

29) 한영수/강호성/이형섭, 앞의 책, 150면

제9조의2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고 피부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원호(援護)’란 전자장치 부착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 그의 개선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소 및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환경의 개선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을 뜻한다.(「보호관찰법」 제34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와 원호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피부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만큼, 준수사항에 집행에 있어서의 지도와 원호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외출제한명령이 피부착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원만한 재사회화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외출제한시간에 불가피하게 생계를 위한 활동 등이 필요한 이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 원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보호관찰관의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전자장치부착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에 따라 이해되어야 하는데, 동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의 영역에 관하여서만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법원이 결정한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그 준수사항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준수사항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그 준수사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이에 관한 근거규정 및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사항의 위반이라는 사정변경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준수사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할 것인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에 따른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³⁰⁾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제1항과는 달리 제2항의 사정변경의 사유는 준수사항 위반 등의 위법한 사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준수사항의 삭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형집행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시의 준수사항의 사정변경에 의한 삭제뿐 아니라, 「보호관찰법」 제3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가석방 등의 경우, 집행유예 등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사정변경에 의한 삭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준수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전담보호관찰관의 판단을 기초로 한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

30) 제14조의2 제1항의 사유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이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찰관의 준수사항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정당한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준수사항의 집행에 있어서의 보호관찰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준수사항의 부과 취지와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상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 신청 요건인 '부과된 준수사항을 본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사회적응 경과의 정도, 사정변경의 지속성, 지도 감독 순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의 경과 정도가 지나치게 짧다거나 사정변경의 원인이 된 행위가 지속될 것인가 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관찰 집행 초기에 준수사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변경신청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관이 재량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3)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³¹⁾의 허용 근거와 한계

가.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의 허용 근거

피부착자의 명령집행 기간 중에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준수사항을 일시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을 일시적으로 감독정지를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대리운전기사, 자동차보험 긴급출동기사, 화물자동차 야간운전자 등 생계유지를 위한 업무가 야간외출제한 시간에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야간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의 일시 감독정지로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장치부착법」과 「보호관찰법」에서는 보호관찰관의

31) 한영수/강호성/이형섭, 앞의 책 154면에서는 '준수사항의 일시 감독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법원이 부과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감독하는 것은 보호관찰관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보호관찰관의 임무를 피부착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독정지를 허가하는 것(보호관찰관의 감독 의무를 스스로 허가해 준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위치추적이나 이동 경로의 확인 등의 감독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감독의 일시정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준수사항의 일시 유예 및 그 허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용어 사용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글에서도 '준수사항의 일시 감독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숙소 및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환경의 개선 등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호의 제공이라는 범위에서 보호관찰관의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의 집행과 관련한 재량적 판단의 정당성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호관찰관의 필요한 조치로서 준수사항의 일시 감독정지는 피부착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피부착자들 교도소 등 시설에 오래 수용되어 급변하는 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 주변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크고 이러한 경제적 환경이 재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외출제한명령이 화물차운전자, 자동차보험 긴급출동기사, 일용직 노동자³²⁾ 등에게 준수사항으로 부과된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판단에 따른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보호관찰관과의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이라는 점이다.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사회적 지지수준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³³⁾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활동과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피부착자와 담당 보호관찰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한 재범억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전화통화나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이 겪고 있는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의 멘토역할을 함으로써 피부착자와의 깊은 유대감 및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⁴⁾ 피부착자에게 부득

32) 일반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될 때 야간외출제한이 끝나는 시간이 오전 6시이고,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인력시장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오전 6시 전후이며 이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집에서는 오전 6시 이전에 나서야 하는데 이는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이 된다.

33) 한영수/강호성/이형섭, 앞의 책 284면

34) Id.

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경직된 사고로 이러한 경우들을 준수사항 위반으로만 처리하면 피부착자의 반감을 키우고 준수사항 순응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보호관찰관과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피부착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돈독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재범억제를 근거로 들 수 있다. 가족의 피부착자에 대한 지지는 피부착자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범방지를 위해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대상자의 오랜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출소 후에는 이웃 사람들의 비난과 경계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은 가족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피부착자가 가족과 함께 여행하도록 하는 것도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착자의 야간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으로 인하여 1박 이상의 가족여행은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가족의 건전한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위하여도 이러한 경우에는 외출제한명령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무분별하고 잦은 여행을 빌미로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이 일시 감독정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판단과 적절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제도가 준수사항 부과의 궁극적 취지에 부합하고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신청에 이를 정도의 제반 요건(보호관찰기간의 경과, 순응도, 일반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직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구비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일정요건(허가기간 제한, 허가기간 동안 이동경로 분석 등을 토대로 그의 행적을 면밀히 파악하여 생활형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등)을 전제로 운용된다면 '남용'에 의한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의 한계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제도를 ‘남용’하여 준수사항 부과 본래의 취지와 법률이 규정하는 준수사항 추가변경제도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정변경에 의하여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의 변경신청절차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4항의 준수사항 추가변경 제도를 명시한 이유는, 대상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필연적으로 제한되고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며, 신청과 인용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에 의해 대상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법」에 규정된 ‘준수사항 추가변경제’와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는 다른 것이지만, 특정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만한 재사회화를 공통된 목적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준수사항 추가변경제도’ 활용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제도로 하고 할 것이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4항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사유를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그 구체적 이유와 조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입법기술상 그 경우의 수를 모두 열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는 이러한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선현장에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신청하기에는 신청의 사유와 보호관찰 기간의 경과 등 종합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목전의 현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당면하게 될 지도감독 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변경제도’의 전단계적 성격으로 이해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현황

지난 5년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자들이 매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건수는 <표 2-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3천여 건 내외에 이르고 있다. 외출제한명령은 주로 야간 시간대인 22:00~06:00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를 1년을 기준으로 그 위반율을 계산하면 1.15%~1.75%의 비율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부과된 외출제한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외출제한 위반 경보 발생 시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1차 대응(전화) 후 신속대응팀으로 경보를 이관한다. 경보를 이관받은 신속대응팀이 2차 대응(전화, 필요시 현장출동)을 하게 된다. 익일 전담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위반상황을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소환하여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원인에 따라 제재조치는 달라지게 되는데, 형기종료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외출제한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 해당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준수사항 위반 횟수 및 사안의 정도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게 되고 피부착자는 제39조 제3항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유예자에 대하여는 준수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9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보호관찰법」 제38조의 경고, 「보호관찰법」 제39조에 따라 구인될 수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원처분인 가석방이나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표 2-8〉 외출제한명령 위반건수 및 위반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외출제한 부과자 수	508	596	702	765	780
외출제한 위반 건수	3,253	3,060	3,274	3,217	2,098
준수사항 위반율*	1.75%	1.41%	1.28%	1.15%	1.48%

* 준수사항 위반율 : 위반건수/(부과자 수 × 365일)

2. 위반시 제재방안

징역형 종료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와 가석방, 가출소, 가종료, 집행유예 단계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제재의 종류와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형종료이후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기를 종료한 후에 새롭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는 특성과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취소될 원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징역형 종료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를 근거로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점에 비해, 가석방, 가출소, 가종료, 집행유예 단계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동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제9조의2를 적용받지 아니하며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준수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재조치의 차이가 발생한다.

효용의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며, 형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 외에도 가석방, 가출소, 가종료, 집행유예 피부착자도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착명령 개시 또는 재부착 후 최근 2년 이내에 5회 이상 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향후 지속적인 위반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때 또는 1개월 동안 동종 위반 행위를 3회 이상 행한 때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제1항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위반사실이 무거운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수사의뢰할 수 있다.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택장치의 무단 설치 변경
2. 휴대장치의 신호 실종
3. 재택장치의 신호 실종
4. 전자장치의 감응범위 이탈
5.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위반
6.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of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에 불응

7.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8.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위반
 9. 주거지역의 제한 위반
 10. 그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반
- ※ 가석방·가중료 등·집행유예 피부착자는 1~4호까지만 해당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수사의뢰 된다.

3. 실무에서의 제재수단

실무에 있어서 준수사항 위반시 수사의뢰의 기준으로 '3회 이상 위반'을 삼고 있는데, 3회 이상 위반의 경우 반드시 수사의뢰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징역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수사의뢰 기준으로서 '3회 이상' 요건은 수사의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3회 이상'의 요건을 수사의뢰의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본적 사유와 반성 정도, 동일 위반사항의 향후 재발가능성, 위반경보와 직업 간의 관계 등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없이 제재만을 우선하게 되므로, 이는 피부착자의 재범억제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규정한 「보호관찰법」 제33조의2의 이념과 배치되며, 「전자장치 부착법」의 제정 목적이 추구하는 '재사회화'라는 궁극적 목적과도 상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원처분 취소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석방자, 가출소자, 가중료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가석방자등의 원처분이 취소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법」 제51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종료되며,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착명령도 동시에 종료되는 특성으로 인해 제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준수사항 부과의 효과성

박 준 희

준수사항 부과의 효과성

제1절 효과성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먼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자와 다른 명령을 부과받은 자간의 재범률(재범여부)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하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중에서 특별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한 경우에 이들의 재범 억제에 이 명령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의 억제효과(효과성)을 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가설 또는 전제로 두어야 하는 점은, 1) 재범이 야간시간에 이루어진 경우 당해 명령위반으로서 억제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과 2) 재범이 야간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명령위반을 회피한 누수효과로서 간접적으로는 억제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엄격하게 말하면 온전히 재범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재범’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결과변인으로 두어 각 변인별 특성을 살펴야 하고, 다음으로 ‘재범이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를 결과변인으로 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함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추적기간 사이에 재범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이후 재범을 했다면 완전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분석한 자료상으로는 위치추적기간 이후 재범을 한 비중은 0.7% 수준에 불과하여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범여부, 재범시간의 야간 여부를 구별하여 각 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분석에서는 어떠한 범죄유형에 있어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효과적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죄유형을 크게 강도, 살인, 성범죄, 유괴 등 4가지로 구분하였고,

본건 및 재범 범죄유형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경우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함께 가족 및 동거인의 친밀 여부, 직업적 안정성 및 경제적 수준, 정신질환 여부, 범행시간대 등이었으며,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관련변인들을 분석 변수로 투입하였다. 정신질환의 경우 분류는 진단명을 기준으로 DSM-5에 따라 구분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

범죄의 재범 및 재범예측에 관한 유사 연구로서 홍영오 외(2012)의 연구에서는 재범여부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이는 강력범과 절도범에 한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재범요인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전범죄학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특정억제이론을 따라 구금형의 범죄억제효과를 강조하거나, 이와 반대로 강한 형벌을 통한 공식적 통제보다는 결혼이나 직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결속에 의한 재범 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구금이 공식기간에 의한 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 후에 다시 사회에 적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여 결국 강한 처벌이 다시 범죄경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 특정억제이론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다(Becker, 1963; Lemert, 1967; 이현희, 2004). 형벌과 재범 간의 인과적 관계에 있어서 낙인효과와 특정억제효과간의 논쟁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범죄경력, 사회결속력, 범죄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분석 방식으로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는데(Spohn & Holleran, 2002; 이현희, 2004 재인용, 최인섭·박철현, 1994), 단순히 개인의 상태로서 측정한 결혼, 직업활동, 교육수준 등을 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으로 본 연구(Dejong, 1997; Liu, 1998; Sherman & Smith, 1992)에서 나아가 부부 관계의 친밀도나 고용의 안정성,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질적 내용이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Shampson & Laub, 1992)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결속을 재범과의 관계 분석에 도입한 연구들은 대체로 사회적 결속력이 재범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 특히 범죄경력과 연령은 재범예측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Baumer, 1997),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힘이 떨어지고 직업이나 결혼을 통해 사회규범질서로 통합되면서 재범가능성을 떨어뜨린다(Baumer, 1997; Dejong, 1997; 이현희, 2004)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과 가구원수와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실증연구(최인섭·박철현, 1994)에서는 오히려 형벌과 범죄경력 요인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

정신질환의 범죄 성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살인과 성범죄의 가능성이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살인 중에서는 특히 가정 내 살인(비속살인)이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나고(Feldman, 1993), Burnam et al.(1988)는 우울장애 환자의 성범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을 보이기도 한 바 있다. 정신질환 중 ‘양극성 장애’의 경우, 폭력의 위험이 높고 강간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자기억제감 결여로 인해 절도, 공갈, 상해를 저지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박소은, 2009), 특히 조증상태에서는 폭력범죄를 저지름 가능성이 높고(Cassel & Berstein, 2007), 조증 직후 방화한다는 사례도 보고된다(Gunderson, 1974). 율증상태에서는 절도, 살인 등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중 상당수가 자살을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은, 2009). 정신장애 중 ‘정신분열’은 가장 심각하게 분류되는데, 폭력범죄와 살인의 경우가 특징적이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범죄에서는 살인이 가장 많고, 가족내 살인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이현정 외, 1990). 외국의 선행연구(Häkkänen-Nyholm, 2009)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군이 사이코패스 평가척도(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감정이입의 결여(lack of empathy), 자기에적 과장(grandiose self-worth)과 관련된 소책도가 높은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전국 30개 교정시설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이수정 외(2000)의 연구에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관련하여 MMPI 점수를 통해 교도소 수형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였는데, 강도, 강간, 폭행범들의 반사회성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과 범죄간의 관계의 보다 세밀한 특징을 보여준다. 미국정신의학회(1995)에 따르면,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사회적 행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특성(대한신경정신의학

회, 2007)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범죄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가해행위에 정신과적 질환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도 성폭력 가해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정신과적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Dunseith et al., 2004)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의 85%가 정신장애 진단 범주에 있었으며, 이 중에서 '성도착증(paraphilia)'의 유병률은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웨덴에서의 성폭력 가해자와 일반인과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군이 일반인에 비해 '정신과적 입원이력'이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Fazel 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범 요인들과 정신질환 유형들을 고려하여 전자감독제도 대상자들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효과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1. 연구목적

2006년 용산 초등학교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이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시행³⁵⁾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 이 제도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제도의 설계자와 감시자로서는 당연한 의심과 기대이다. 시행 당시부터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은 초기의 꽤 많은 연구들을 양산하였으며, 특히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의 재범 뉴스들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의 보호관찰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처음 시행된 이래 2017년까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현황은 2008년 188명, 2009년 347명, 2010년 465명으로부터 2017

35) 당초 2008.10.28.시행 예정이었으나 2007.12.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조기 시행됨.

년 4,350명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확대되어 왔으며, 초기 성폭력범죄에만 국한되던 것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에까지 대상자가 증가했다. 이로써 10년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면서 당해 법률에 근거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효과성을 점검해볼 시기가 충분히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3-1〉 부착명령 실시사건* 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05	591	714	1,561	1,747	2,555	3,260	3,598	4,066	4,350
성폭력	205	591	465	685	874	1,747	2,370	2,650	2,894	3,046
유괴		-	-	2	2	2	4	8	7	16
살인			249	874	871	806	705	585	761	925
강도							181	355	404	363

* 실시사건 : 전년도 이월된 사건과 금년도 신수사건의 합

출처: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직접적인 근거법률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특정범죄³⁶⁾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³⁷⁾ 하는 부가적인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당해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가적인 준수사항으로서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명령, 특정

3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3, 3의2, 3의3호.

37)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후 또는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동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종료 후 또는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자가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를 2회이상 범한 자에 해당한다(동법 제5조 1항 내지 4항).

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명령, 주거지역의 제한명령, 피해자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준수사항'³⁸⁾이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최인섭·진수명, 2002:112)되는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최근 야간시간대에 명령을 위반하여 재범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바, 본 연구에서는 준수사항 중 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에 집중하여 분석함으로써 당해 명령의 적합성과 함께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계량적 연구를 통해 도출해내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8~2017년 판결을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강도, 살인, 성범죄, 유괴 등 강력범죄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2008년 법률시행 당시에는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였으나, 2009년에 미성년자 유괴범이 추가되었고, 2010년에는 살인범이 추가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인정되었으며³⁹⁾, 2014년부터는 강도범을 추가 시행하게 되어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왔다.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범죄행위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되는 강도, 살인, 성범죄, 유괴에 해당하는 죄⁴⁰⁾를 범한 자이다.

38) 동법 제9조의 2.

39) 2010.8. 소급부착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있었으나, 2012.12. 소급부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짐.

40) "성폭력범죄"란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 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준수사항에 국한하여 전자감독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2008년~2017년까지의 전자감독 대상자(현재 및 종료) 사건 6,544건(2017년 3월 기준)이며, 준수사항 중에서도 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자와 부과받지 않은 자(다른 명령을 받은 자 및 전혀 부과받지 않은 자)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3. 변수의 설정

종속변수는 재범여부와 야간시간대 재범여부이고, 독립변인은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별하기 위한 변수로서 준수사항 중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를 사용하여,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경우는 1, 그 외 명령에 해당하는 접근금지, 출입금지, 주거지역제한, 이수명령, 기타 등을 부과받은 경우 0으로 두었다.

통제변인으로는 대상 범죄자들의 나이, 범죄유형, 동거인과의 친밀도, 결혼, 학력, 직업, 경제수준, 주거안정성, 감독여부, 수사의뢰횟수, 처분유형, 입원경험, 치료상태, 전자장치훼손여부, 정신질환유형, 진단자여부, 신상정보공개여부, 재범시 음주여부 등으로 두어 각 분석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 구성은 기존 전자감독제도 및 성범죄자의 재범 관련 선행연구들로부터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살인범죄"란 「형법」 제2편 제1장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 제24장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251조(영아살해)·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4조(미수범)·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 제32장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전단·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전단·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강도범죄"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치상)·제338조(강도살인·치사)·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41조(상습범)·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도출한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힌 재범예측 또는 재범위험성 요인들에는 나이, 성별, 학력, 범죄경력, 학대경험 및 가출경험, 직업안정성,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혼여부, 생활수준, 정신질환, 성적이상성, 친밀감결여, 알코올 및 약물남용, 범죄에 대한 태도 및 지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기회 등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측면과 범죄관련 측면, 사회적 결속력 또는 태도, 정신의학적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나이, 성별, 경제수준, 직업유무, 학력, 주거안정성은 ‘인구사회학적 측면’으로, 수사의뢰횟수, 재범시 음주여부, 감독여부, 가해제 여부 등은 ‘범죄관련 측면’으로, 결혼, 동거인과의 친밀도, 제도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결속력 또는 지지 태도’로, 입원경험, 심리치료횟수, 정신질환유무 및 유형은 ‘정신의학적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상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 특성, 정신병리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재범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3-2〉 전자감독 및 성범죄자 재범 관련 선행연구

〈2017년 법무부 연구〉 -전자감독 효과성 : LSI-R 구성변인 ⁴¹⁾ -	〈2006년 법무부 연구〉 -성범죄 재범가능성 위험요인- ⁴²⁾	〈2002년 형정원 연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측- ⁴³⁾
범죄경력 학력(교육) 직업 경제적 수준(재정상태) 가족/결혼 주거환경 여가 및 오락 동료/친구관계 음주 및 약물 정서 및 인성(정신과 치료경력) 태도 및 지향	1. 정적 위험요인(static risk factor) : 나이 성별 범죄경력* 학대경험 피해자유형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예의 참여여부 2. 동적 위험요인(dynamic risk factor) : 성적 이상성 정신질환 친밀감결여 등 반사회적 생활양식 인지적 왜곡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범죄에 대한 태도(범죄의 부인과 최소화, 적개심,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기회 거주환경	나이 성별* 학력* 중퇴경험* 가출경험 전과유무 직업안정성 소년/성인 생활수준 폭력사범 재산사범 약물사범* 소년처분 성인처분* (*는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한정시 유의미한 변인)

41) 이민식·김혜선(2009). LSI-R을 이용한 성별·범죄유형별 재범유발요인.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

〈표 3-3〉 재범유발 요인

인구사회학적 측면	범죄관련 측면	사회적 결속력/ 지지 및 태도	정신의학적 측면
나이 성별 경제수준 직업유무 학력 주거안정성	수사의뢰횟수 재범시 음주여부 감독여부 가해제여부	결혼여부 동거인과의 친밀도 제도순응적 태도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	입원경험 심리치료횟수 정신질환유무 정신질환 유형

구체적인 죄명의 구분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 및 재코딩하였다. 기본적으로 당해 법률의 대상 범죄유형 분류는 강도, 살인, 성범죄, 유괴로 구분되나, 구체적인 범죄유형으로 코딩하기 위해 대분류로 A. 살인, B. 성범죄, C. 강절도, D. 폭력, E.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F. 기타법 위반으로 구분하고, 다시 중분류로 1. 살인, 2. 강간, 3. 준강간, 4. 강제추행, 5. 강도강간, 6. 기타 성범죄(2~6은 B에 속함) 7. 강절도, 8. 폭력, 9.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10.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①살인, ②살인교사, 예비, 음모, ③존속살해(이상 '살인'으로 분류), ④강간, ⑤미성년자 강간, ⑥친족

1호.

- 42) 박광배·고민조(2006). 한국 성범죄자들의 재범예측을 위한 가능한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법무부.
- 43) 최인섭·진수명(2002)의 연구에서는 재범예측을 위한 재범위험평가모델(I, II, III)의 적합성 검정을 통해 재범예측표를 도출하였다. 모델 I은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모델 II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모델 III은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로짓분석을 통해 재범위험평가의 예측모델을 구성하여 각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수인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했다. 모델 I에 투입된 전체 변인들로는 나이, 성별, 학력, 중퇴경험, 가출경험, 전과유무, 직업안정성, 소년/성인, 생활수준, 폭력사범, 재산사범, 약물사범, 소년처분, 성인처분의 14개 변인이며, 이 중 성별, 학력, 중퇴경험, 가출경험, 전과유무, 소년/성인, 재산사범여부, 약물사범여부, 소년처분, 성인처분의 10개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남자이면서, 학력이 낮고, 중퇴경험이 있고, 가출경험이 있으며, 전과를 가지고 있고, 소년이면서, 재산사범이나 약물사범인 경우, 소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임시퇴원을 받고 성인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가출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범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로 한정된 모델 II에서는 나이, 성별, 중퇴경험, 전과, 약물사범, 소년처분의 변인이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리고, 남자이며, 중퇴경험이 있고, 전과가 있으며, 약물사범이고, 기소유예나 임시퇴원, 3호처분을 받은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 예측모델인 모델 III에서는 나이, 가출경험, 전과, 직업안정성, 생활수준, 폭력사범, 재산사범, 소년처분의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성별, 학력, 중퇴경험, 약물사범, 성인처분"의 5개 변인만이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에 해당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인 경우 남자이면서, 학력이 낮고, 중퇴경험이 있고, 약물사범이면서, 기소유예나 가출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하여 성인재범예측도구를 정리(p.94)하였다.

강간, ⑦강간살인, 상해, 치상(이상 '강간'으로 분류), ⑧준강간, 친족 준강간(준강간'으로 분류), ⑨강제추행, ⑩미성년자 강제추행, ⑪장애인 강제추행, ⑫친족 강제추행, ⑬강제추행 살인, 상해, 치상(이상 '강제추행'으로 분류), ⑭강도강간, ⑮약취유인, ⑯기타 성범죄, ⑰강절도범죄, ⑱폭력범죄 ⑲「전자장치부착법」 위반, ⑳ 기타법 위반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본건 및 재범에서의 죄명 구분은 각 세부죄명으로부터 중분류 및 대분류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4〉 범죄 죄명 분류

	구분1	구분2
A. 살인	1. 살인	① 살인
		② 살인교사, 예비, 음모
		③ 존속살해
B. 성범죄	2. 강간	④ 강간
		⑤ 미성년자 강간
		⑥ 친족 강간
	3. 준강간	⑦ 강간 살인, 상해, 치상
		⑧ 준강간, 친족 준강간
		⑨ 강제추행
	4. 강제추행	⑩ 미성년자 강제추행
		⑪ 장애인 강제추행
		⑫ 친족 강제추행
		⑬ 강제추행 살인, 상해, 치상
C. 강절도	5. 강도강간	⑭ 강도강간
		⑮ 약취유인
D. 폭력	6.기타 성범죄	⑯ 기타 성범죄
		⑰ 강절도범죄
E.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7. 강절도	⑱ 폭력범죄
F. 기타 법위반	8. 폭력	⑲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9.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⑳ 기타 (도로교통법, 화확물질관리법 등) 법 위반
	10. 기타	

Marshall & Barbaree(1990)에 따르면, 성범죄자 집단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동종 집단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는 집단일 수 있다. Knight & Prentky (1990)는⁴⁴⁾ 강간범의 경우에도 기회주의적 강간범, 가학적 강간범, 비가학적 강간범,

44) R. A. Knight & R. A. Prentky(1990). Classifying sexual offenders: The development and

보복적 강간범, 일반화된 분노에 의한 강간범으로 분류하고, 아동 성학대범(높은 성이상성과 낮은 성이상성으로 구분), 노출행위범, 그리고 인터넷 성폭력범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Carnes et al.(2001)은 인터넷 성폭력범에 대해 발견집단, 기존성향 표출집단, 만성화된 성범죄집단 등 3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다. 즉, 단순히 사법적 개념에 따라 성범죄 유형을 구분하기보다 심리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성범죄 유형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 표는 그 중 성범죄 유형에 대하여만 구분해놓은 분류로서, 범죄자의 성향이나 태도 등에 따라 구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 성범죄자 유형

분류		특성
강간범 (rapist)	기회주의적(the opportunistic rapist)	여성과 강압적 성관계를 갖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공격지향적 태도(pro-offending attitude)를 나타냄. 성적 판타지나 분노보다는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높음.
	가학적 (the sadistic sexual rapist)	잦은 성적 상상을 하는 성적 요인과 공격적 요인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을 나타냄.
	비가학적 (the non-sadistic sexual rapist)	욕구불만과 우월성의 욕구 충족의 유인에 의한. 높은 수준의 성적 흥분, 성에 대한 왜곡된 태도로 설명되는 성적 판타지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름.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며, 성범죄 당시 제압에 필요한 힘만을 사용함.
	보복적 (the vindictive rapist)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또는 피해자를 굴복시키거나 보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성범죄를 저지름.
	일반화된 분노 (pervasively angry rapist)	일상생활에 젖어있는 공격성, 분노, 적개심 등 부정적 정서가 통제불가능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형태가 성범죄로 나타남. 폭력성과 관련된 전과가 많음.
아동 성학대범 (child sexual abuser)	높은 성이상성 (high deviancy)	아동이나 성에 대한 심한 인식 왜곡이 있으며, 아동을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봄. 피해자 수가 많고, 성범죄 관련 횡수도 많음. 피해자는 대부분 가족 외, 남자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낮고, 아동과의 정서적 일치감(emotional identification)이 나타나는 반면, 성인 여성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움. 독단적인 성향이 낮고, 자존감이 낮음.
	낮은 성이상성 (low deviancy)	낮은 성도착증 집단의 경우 피해자가 가족내 여자 아동이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은 역시 낮고, 아동과의 정서적 일치감이 나타나지 않음.

corroboration of taxonomic models.(pp. 23-52).

분류		특성
노출행위범(Exhibitionist)		직접적 성적 접촉과 관련된 성범죄자들 대부분 이전에 성기노출 관련 성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성기노출과 관련된 성범죄자는 직접적 성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범죄심각성이 낮게 간주되는 경향이나, 미래에 직간접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재범위험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인터넷 성폭력범 (internet sexual offenders)	발견집단 (the discovery group)	성적 판타지나 성 관련 행동보다는 인터넷의 사용이 성범죄를 유발.
	기존성향 표출집단 (the predisposed group)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성적 판타지와 충동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제력없이 분출됨.
	만성화된 성 범죄집단 (the lifelong sexually compulsive group)	인터넷이 성범죄행위의 연장선에서 성범죄 행위중 하나이며, 성적 문제를 보다 위험스럽게 하는 요인으로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 시키거나 이미 존재해있는 위험성에 새로운 위험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

출처: 박광배·고민조(2006: 35-4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성범죄자를 비롯하여, 본 연구의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병원의 정신의학박사의 자문을 받아 진단명을 DSM⁴⁵⁾-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본 데이터의 각 변수들을 의학적 병명으로 소분류한 후, DSM-5기준으로 중분류하였으며, 최종 대분류는 알수없음과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총 9개 범주로 구분하였다(예: ADHD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소분류) < 신경발달장애(중분류) < 기타정신장애(대분류) 가 됨).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45) DSM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준말로서,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의 진단기준과 통계가 수록된 진단기준표이다. 정신질환과 장애의 진단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기준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DSM이고, 다른 하나는 ICD이다. ICD는 모든 질병의 분류체계로서 WHO가 만들었으나 나라마다 주로 사용하는 분류기준이 다른 데 비해, DSM은 전적으로 정신질환과 장애만을 다루며, 미국에서 만들어 유럽 등 보다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표 3-6〉 정신질환 분류 : DSM-5 기준

대분류	code	중분류
정신증적장애	1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정신분열, 분열정동장애)
기분장애	2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3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물질사용장애	4	알코올·약물 등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도박장애 등
성격장애	5	편집성·분열성·반사회성 성격장애,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6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변태성욕장애	7	성도착, 소아성애, 성충동, 이상성선희 등
기타정신장애 ⁴⁶⁾	8	신경발달장애, 신경인지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신체증상 관련 장애(전환장애), 수면-각성장애 등
신체장애	9	간질등, 간헐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체장애, 당뇨
알수없음	10	
해당없음	11	

전자장치는 처분유형별로는 ‘형집행 종료 후’, ‘가석방 및 가종료·가출소 후’, ‘형집행유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은 검사가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석방 피부착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면, 가종료·가출소 피부착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다. 그리고 집행유예 피부착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의 경우에는 각 당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때, 당해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때, 당해범죄를 2회이상 저지른 습벽이 인정된 때, 성폭력범죄의 경우 19세미만인 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저지른 때에 전자감독을 청구하게 된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당해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후 후 다시 당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거나 저지른 경우이다.

46) ‘기질성 정신장애’와 기타 정신장애로 각각 범주화할 경우 빈도수는 적고 구분수가 많아져 ‘기타 정신장애’로 함께 범주화함.

〈표 3-7〉 처분유형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유형

구분	처분내용
소급 형기종료	본건에 대한 형기를 다 마친 이후 소급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된 경우
형기종료	본건에 대한 판결시 실행 및 부착명령이 부과된 자로 형기가 종료되면 부착명령을 집행함
가출소·가종료	부착명령을 사전동의하여 가출소·가종료된 경우
가석방	가석방 시 부착명령을 사전동의하여 출소한 경우
집행유예	판결시 집행유예와 함께 부착명령이 부과된 경우

출처: 김대진·최천근(2017: 41).

가석방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경우 의무적으로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 범죄자가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한다(단,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보호감호 집행중 가출소 되는 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시 보호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이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판결전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생업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상당 기간동안의 지도감독상 ‘일시 감독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재량권 일탈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야간 시간대에 외출제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보호관찰관에게 있으므로, 이에 ‘가해제’를 신청하여 허가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재범여부의 분석에 있어서는 어떠한 처분 유형 하에서 재범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가해제 여부 역시 범죄자의 생업종사 및 보호관찰기간동안의 태도 등을 대변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재범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대상자의 범죄유형(살인, 강도, 성범죄, 유괴) 및 범죄명(본건 및 재범), 처분유형(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소급형기종료, 집행유예, 형기종료), 신상정보공개여부, 정신질환 유형(정신증적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 성격장애, 충동조절장애, 변태성욕장애, 기타정신장애, 신체장애)을 추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대체하여 활용한 변수로는 나이(연속형 변수) 외에 연령대(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변수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제도순응적 태도는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나이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범죄경력 변수 대신 수사의뢰횟수를 사용하고, 가해제여부 역시 처분 및 범죄관련 변수로 사용하였다. 정신의학적 측면에 활용된 변수로는 입원경험, 입원횟수, 치료상태, 입원형태 중 분석상 입원경험 유무를 주된 변인으로 선택하였고, 추가적으로 시스템상 신상정보공개여부를 재범여부와 관련된 변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기술적 특성만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분한 기준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관련 요인 중 피해자와의 관계(victim-offender relationship)를 분류한 연구들이 크게 ‘낯선 사람, 친족, 친족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으로 구분하거나(강호성, 2012), ‘낯선 사람(stranger), 친족(relative), 친밀한 관계((ex)intimate partner), 아는 사람(acquaintance)’으로 구분(H. Häkkänen-Nyholm et al., 2009)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1), 친족(2), 지인(3), 낯선사람 및 기타(4)로 분류하였다. 이때 배우자 및 전배우자, 내연남/녀, 애인(현재 및 과거)의 경우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의 준비속 등 가족은 ‘친족’, 선후배나 동료 등은 ‘지인’, 나머지는 ‘기타’로 묶었다. 동거인 분류의 경우, 배우자 및 동거남녀, 직계가족, 기타친족, 친족외 타인, 단독거주로 코딩하였다. 또한 이러한 동거인과의 친밀도 역시 높음, 중간, 낮음으로 코딩하였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심리치료 여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전체 심리치료 횟수와의 관계성을 통해 살펴보고, 변인별 차이들은 입원형태, 입원횟수, 치료상태, 입원경험 유무로 대체하였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통제기법으로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준수사항을 통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재범’으로 나타나나, 각 준수사항의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형법」 제64조 제2항), 위반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되거나, 동종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수사의뢰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 수사의뢰 등의 제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시행지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준수사항 위반횟수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의 존부, 위반하게 된

경위, 이후 위반의 지속가능성 및 평소 보호관찰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의뢰로까지 나아간 경우라 함은 그 위반의 정도나 성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석에 ‘수사의뢰횟수’ 변인을 재범자의 위반 성향의 대리지표로 포함시켰다. 한편, 위반성향을 설명할 변수로서 재범이나 수사의뢰횟수 외에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도 분석에 추가하였다.

4. 분석 방법

야간외출제한명령의 재범 억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 순서는 먼저, 전체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 집단과 그 외 명령 부과집단의 각 변인별 분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범죄특성적 요인, 정신심리학적 요인별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집단과 그 외 명령 부과집단간 재범여부의 차이를 비교하기로 하였다. 부가적으로 연도별, 범죄별, 처분별, 정신질환별 등 재범률(여부)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을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구성하여 두 집단간 재범여부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 집단의 재범에의 영향 요인들을 산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이론에서 살펴본 재범 요인들을 도출하여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제4절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우선 분석할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대상자 및 재범자, 보다 세분하여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기타 명령 부과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지역, 나이, 동거인 친밀도, 혼인, 직업, 학력, 경제수준, 음주여부), 범죄 및 보호관찰 관련 특성(범죄명, 처분유형, 원호여부, 치료여부, 정신질환여부, 정신질환유형, 진단자여부, 범죄경력, 수사의뢰횟수, 재범횟수, 감독상태, 부착명령기간, 신상정보공개여부, 가해제여부,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 등)을 나타내고, 범죄유형별 재범률, 연도별 특별준수명령 부과현황 및 변경 현황, 처분법별 부과현황, 범죄 및 재범 시간대

등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범죄유형별, 처분유형별, 정신질환유형별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대상자에 대한 기초통계를 분석한 후, 전체 대상자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효과성 분석을 위해 준수사항 부과대상자, 특히 여기서 정책처리집단에 해당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집단과 그 외 명령 집단에 대해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1. 전체 분석 대상

(1) 전체 연도별 범죄유형

〈표 3-8〉 연도별 범죄 유형

	전체	강도범	살인범	성범죄	유괴범
2008	183	0	0	183	0
2009	419	0	0	419	0
2010	672	6	223	442	1
2011	1,037	0	412	622	3
2012	635	2	330	300	3
2013	1,178	0	319	859	0
2014	866	151	222	493	0
2015	621	198	243	179	1
2016	802	227	446	127	2
2017	131	40	81	10	0
명	6,544	624	2,276	3,634	10
%	100	9.5	34.8	55.5	0.2

주: 당해 연도에 판결을 받은 대상자를 의미함. 누적 대상자 분포와는 상이함.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각 범죄별로 판결을 통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부과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판결을 받은 연도별로 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8년 첫 해에는 183명으로 작은 숫자였으나, 2009년 419명, 2010년 672명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37명으로 천명을 넘겼고, 2012년 줄었다가 다시 2013년에 1,178명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15년 621명, 2017년 3월 현재 13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처음에는 성범죄자가 전부였으나, 점차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살인범, 강도범, 유괴범도 증가하였고, 전체 대상으로 볼 때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

살인범은 34.8%, 강도범은 9.5%, 유괴범이 0.2%로 다양해졌다.

(2) 지역적 분포

〈표 3-9〉 지역적 분포

	전체	수원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부산	창원	의정부	전주	청주	울산	춘천	제주
명	6,544	952	947	711	584	535	481	460	453	347	322	256	206	194	96
%	100	14.5	14.5	10.9	8.9	8.2	7.4	7	6.9	5.3	4.9	3.9	3.1	3	1.5

지역적으로는 각 지역별 보호관찰소 중에서 수원과 서울이 14.5%로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구가 10.9%, 대전 8.9%, 인천 8.2%, 광주 7.4%, 부산 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연령별 분포

〈표 3-10〉 연령별 분포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10대	명	5	25	30
	%	(0.67)	(0.43)	(0.46)
20대	명	104	798	902
	%	(13.89)	(13.77)	(13.78)
30대	명	232	1,464	1,696
	%	(30.97)	(25.26)	(25.92)
40대	명	249	1,743	1,992
	%	(33.24)	(30.08)	(30.44)
50대	명	126	1,284	1,410
	%	(16.82)	(22.16)	(21.55)
60대	명	27	361	388
	%	(3.6)	(6.23)	(5.93)
70대이상	명	6	120	126
	%	(0.8)	(2.07)	(1.93)
전체	명	749	5,795	6,544
	%	(100)	(100)	(100)
평균		41.0	43.2	42.9

t=-5.15, p=0.000

$\chi^2=33.37$, p=0.000

전체 대상자 6,544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40대(30.4%)였으며, 30대가 25.9%로 다음으로 많았고, 50대 21.5%, 20대 13.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장년층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2.9세였고, 가장 적은 15세에서 가장 많은 84세 사이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4) 학력별 분포

〈표 3-11〉 학력별 분포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초졸이하	명	98	899	997
	%	(13.21)	(15.65)	(15.37)
중졸이하	명	183	1,184	1,367
	%	(24.66)	(20.62)	(21.08)
고졸이하	명	350	2,755	3,105
	%	(47.17)	(47.97)	(47.88)
전문대이상	명	111	905	1,016
	%	(14.96)	(15.76)	(15.67)
전체	명	742	5,743	6,485
	%	(100)	(100)	(100)

$$\chi^2 = 8.0183 \quad Pr = 0.046$$

전체 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47.9%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하가 21.1%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초졸이하와 전문대 이상이 15%씩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해 있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대상자 중에서 1,000명 이상 차지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와 그 외 명령 대상자간에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으나, 비중 측면에서는 전체와 유사하였다.

(5) 혼인상태

〈표 3-12〉 혼인상태

	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혼인	명	84	934	1,018
	%	(11.31)	(16.24)	(15.67)
혼인아님	명	659	4,818	5,477
	%	(88.69)	(83.76)	(84.33)
전체	명	743	5,752	6,495
	%	(100)	(100)	(100)

$\chi^2 = 12.1115$ Pr = 0.001

전체 대상자 중에서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는 15.7%였고, 사별, 이혼, 별거 등 혼인 외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83.4%로 혼인외 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중 혼인한 경우는 11.3%로 그 외 명령 대상자의 16.2%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6) 동거인의 유형

〈표 3-13〉 동거인 유형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배우자 및 연인	명	851	104	955
	%	(15.5)	(14.5)	(15.4)
직계가족	명	2,157	256	2,413
	%	(39.3)	(35.7)	(38.9)
기타친족	명	113	12	125
	%	(2.1)	(1.7)	(2.0)
타인	명	262	35	297
	%	(4.8)	(4.9)	(4.8)
단독거주	명	2,108	310	2,418
	%	(38.4)	(43.2)	(38.9)
전체	명	5,491	717	6,208
	%	(100)	(100)	(100)

$\chi^2 = 6.8$ Pr = 0.147

대상자들의 동거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배우자 및 연인을 제외한) 직계가족(39%)과 단독거주(39%)인 경우였으며, 배우자나 연인의 경우가 15.4%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를 외출제한명령 부과대상과 그 외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외출제한명령 부과 집단에서는 전체의 경우와 비슷하게 직계가족(39.3%)과 단독거주(38.4%)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명령 부과 집단에서는 단독거주의 경우가 43.2%로 조금 더 많고 직계가족의 경우가 35.7%로 다음 순이었다. 배우자 및 연인이 동거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양 집단 모두 15% 내외로 비슷했다.

(7) 동거인과의 친밀도

〈표 3-14〉 동거인과 친밀도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높음	명	334	2,657	2,991
	%	(45.69)	(46.89)	(46.75)
보통	명	218	1,724	1,942
	%	(29.82)	(30.42)	(30.35)
낮음	명	179	1,286	1,465
	%	(24.49)	(22.69)	(22.9)
전체	명	731	5,667	6,398
	%	(100)	(100)	(100)

$\chi^2 = 1.1847$ Pr = 0.553

전체 대상자들 중 동거인과의 친밀도가 높은 경우는 46.7%였으며, 보통인 경우가 30%, 낮은 경우는 23%에 해당하였고,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대상자의 경우에는 친밀도가 낮은 비중이 24.5%로 평균보다 높았다.

(8) 직업유무

〈표 3-15〉 직업유무

	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직업있음	명	524	3,553	4,077
	%	(69.96)	(61.31)	(62.3)
직업없음	명	225	2,242	2,467
	%	(30.04)	(38.69)	(37.7)
전체	명	749	5,795	6,544
	%	(100)	(100)	(100)

$$\chi^2 = 21.1226 \quad Pr = 0.000$$

전체 대상자들 중 직업이 있는 경우가 62.3%였고, 직업이 없는 경우는 37.7%로 약 2/3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직업이 있는 비율이 오히려 70%로 더 높았다. 그 외 명령 대상자가 직업을 가진 비율은 그보다 낮은 61.3%였다.

(9) 경제적 상태

〈표 3-16〉 경제적 상태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높음	명	42	335	377
	%	(5.65)	(5.81)	(5.79)
보통	명	330	2,392	2,722
	%	(44.35)	(41.51)	(41.84)
낮음	명	372	3,035	3,407
	%	(50)	(52.67)	(52.37)
전체	명	744	5,762	6,506
	%	(100)	(100)	(100)

$$\chi^2 = 2.2028 \quad Pr = 0.332$$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는 5.8%에 불과했고, 중간 수준은 41.8%,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는 52.4%로 대상자 중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자신 또는 담당자가 대상자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객관적 지표라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야간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다고 생각한 비율은 전체와 유사하게 5.6%에 불과했으나, 보통(44.35%)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그 외 명령 대상자(41.5%)보다 높았고, 경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0%로 그 외 명령대상자(52.7%)보다 낮았다.

(10) 주거안정성

〈표 3-17〉 주거안정성

	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자택 및 전월세	명	609	4,501	5,110
	%	(81.31)	(77.67)	(78.09)
기타	명	140	1,294	1,434
	%	(18.69)	(22.33)	(21.91)
전체	명	749	5,795	6,544
	%	(100)	(100)	(100)

$\chi^2 = 5.1302$ Pr = 0.024

거주하는 환경이 자택이나 전·월세 등 일정한 경우 주거가 안정적이라고 보고, 기타 다른 장소에서 숙식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안정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들은 자택이나 전월세 등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그 외 명령 대상자들보다 높았고(81.3%), 기타 거주환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안정성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11) 범죄유형별 차이

〈표 3-18〉 범죄 유형별 차이

		외출제한명령	그 외	전체
강도범	명	65	559	624
	%	(8.68)	(9.65)	(9.54)
살인범	명	124	2,152	2,276
	%	(16.5)	(37.14)	(34.78)
성범죄	명	560	3,074	3,634
	%	(74.7)	(53.05)	(55.53)
유괴범	명	0	10	10
	%	(0)	(0.17)	(0.15)
전체	명	749	5,795	6,544
	%	(100)	(100)	(100)

$\chi^2 = 139.1$, $Pr = 0.000$

외출제한명령 대상자들과 그 외 명령 대상자들간의 차이는 범죄유형에서 크게 나타났다.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74.7%)이 성범죄였고, 살인범(16.5%), 강도범(8.68%)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 성범죄의 비중은 53%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 비해 20%p 가까이 낮았고, 살인범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37.1%에 해당했다(〈표 3-18〉).

본건과 재범으로 나누어 구체적 죄명에 따라 살펴보면, 외출제한명령 대상자들의 경우 살인의 비중은 13.5%였던 반면, 강간의 비중이 45.9%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였고, 강제추행이 11.6%, 준강간이 2%, 강도강간은 6.4%로 나타나 그 외 명령 대상자들의 그것과 차이가 컸다. 동일한 죄명에 대하여 그 외 명령 대상자들은 살인의 비중이 36.6%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보다 약 23%p나 높았고, 강간의 비중은 29.5%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보다 16%p나 낮았다. 강절도나 폭력의 비중은 두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표 3-19〉).

이러한 분포가 재범에서는 변동이 있는데,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나 그 외 명령 대상자 모두 살인이나 강간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살인의 경우 두 집단 각각 13.5%→0.8%, 36.6%→0.6%, 강간의 경우 45.9%→15.9%, 29.5%→12.4%), 약취 및 기

타성범죄에 집중적으로 증가된 양상(두 집단 각각 6.7%→43.7%, 4.6%→40.6%)을 보였다. 강절도 역시 두 집단에서 모두 13~14%대에서 3~4%대로 낮아진 반면, 폭력의 비중이 10~20%p 가까이 증가했다.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0.1%→11%로,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 0%→19.2%로 급격히 증가했다. 재범시 전자감독법 위반이 발생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8.73%로서 그 외 명령 대상자의 4.79%의 두 배 가까이로 나타났다(〈표 3-20〉).

〈표 3-19〉 본건 죄명

본건 죄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살인	명	93	1,975	2,068
	%	(13.5)	(36.6)	(34.0)
강간	명	315	1,592	1,907
	%	(45.9)	(29.5)	(31.4)
준강간	명	11	97	108
	%	(2)	(2)	(2)
강제추행	명	80	629	709
	%	(11.6)	(11.7)	(11.7)
강도강간	명	44	119	163
	%	(6.4)	(2.2)	(2.7)
약취 및 기타성범죄	명	46	250	296
	%	(6.7)	(4.6)	(4.9)
강절도	명	98	722	820
	%	(14.3)	(13.4)	(13.5)
폭력	명	7	0	7
	%	(0.1)	(0.0)	(0.1)
전체	명	5,391	687	6,078
	%	(100)	(100)	(100)

$\chi^2=193.9$, $p=0.000$

〈표 3-20〉 재범 죄명

재범 죄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살인	명	1	4	5
	%	(0.8)	(0.6)	(0.6)
강간	명	20	83	103
	%	(15.9)	(12.4)	(13)
준강간	명	1	3	4
	%	(1)	(0)	(1)
강제추행	명	17	115	132
	%	(13.5)	(17.2)	(16.6)
강도강간	명	1	8	9
	%	(0.8)	(1.2)	(1.1)
약취 및 기타성범죄	명	55	271	326
	%	(43.7)	(40.6)	(41.1)
강절도	명	6	24	30
	%	(4.8)	(3.6)	(3.8)
폭력	명	14	128	142
	%	(11.1)	(19.2)	(17.9)
전자감독법 위반	명	11	32	43
	%	(8.73)	(4.79)	(5.42)
전체	명	126	668	794
	%	(100)	(100)	(100)

 $\chi^2=9.8, p<0.001$

(12) 본건 및 재범의 피해자성별

전체 대상자의 피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본건에서는 여성이 4,606명으로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남성의 경우도 1,415명으로 21.6%였으며, 재범에서도 여성의 비중은 69.4%로 유사했고, 남성의 비중이 30.6%로 조금 증가했다. 다만, 본건의 피해자 성별에서 '알수없음'으로 결측 처리가 되었던 부분이 존재하므로 명확한 성별 비중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고 본건과 유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표 3-21〉 본건 피해자 성별

본건	명	%
남	1,415	21.6
여	4,606	70.4
다수	4	0.1
알수없음	517	7.9
해당없음	2	0
전체	6,544	100

〈표 3-22〉 재범 피해자 성별

재범	명	%
남	197	30.6
여	447	69.4
전체	644	100

(13)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낯선사람 및 기타’의 경우가 84.7%로 가장 많았고, 지인(10.85%)과 친족(4%)의 비중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우나나 애인(전배우자 및 전애인, 동거 포함) 등의 친밀한 관계의 경우는 0.5%도 되지 않을 만큼 미미했다.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 보다 분포의 상태가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 비해 고른 편이었는데, ‘낯선사람 및 기타’의 비중은 65% 수준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보다 20%p 가까이 낮았던 반면 지인(20%)이나 친족(13%)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배우나 또는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비중은 2%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재범의 경우에는 ‘낯선사람 및 기타’의 비중이 더 높아져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90%에 달하였고, 그 외 명령의 경우에도 86%에 해당하여 두 경우에서 절대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재범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지인인 경우는 본건에서의 비중보다 각각 절반 가까이 낮은 5.9%와 10.5%였으며, 친족의 비중은 모든 경우에서 3% 수준이었다. 재범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아, 대체로 재범은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본건 피해자와의 관계

본건 피해자와의 관계	명	야간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배우자 또는 애인 등 친밀한 관계	명	3	111	114
	%	(0.42)	(2.03)	(1.85)
친족	명	29	708	737
	%	(4.03)	(12.97)	(11.93)
지인	명	78	1,098	1,176
	%	(10.85)	(20.11)	(19.04)
낯선사람 및 기타	명	609	3,542	4,151
	%	(84.7)	(64.88)	(67.19)
전체	명	719	5,459	6,178
	%	(100)	(100)	(100)

〈표 3-24〉 재범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피해자와의 관계		야간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배우자 또는 애인 등 친밀한 관계	명	1	4	5
	%	(0.74)	(0.56)	(0.59)
친족	명	5	20	25
	%	(3.7)	(2.81)	(2.96)
지인	명	8	75	83
	%	(5.93)	(10.55)	(9.81)
낯선사람 및 기타	명	121	612	733
	%	(89.63)	(86.08)	(86.64)
전체	명	135	711	846
	%	(100)	(100)	(100)

(14) 감독상태

〈표 3-25〉 감독상태

	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감독진행	명	357	1,731	2,088
	%	(47.66)	(29.87)	(31.91)
중단 및 종료	명	392	4,064	4,456
	%	(52.34)	(70.13)	(68.09)
전체	명	749	5,795	6,544
	%	(100)	(100)	(100)

$$\chi^2 = 96.6496 \quad Pr = 0.000$$

대상자에 대한 감독상태를 살펴보면,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는 감독이 중단 및 종료된 경우가 70%에 해당하고, 감독이 진행중인 경우는 30%에 불과했던 반면,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감독이 중단되거나 종료된 경우가 52%로 그 외 명령 대상자들보다 비중이 낮고, 감독이 진행중인 경우는 48%로 그 외 명령 대상자들에 비해 감독 진행중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재범시기별 구분

〈표 3-26〉 위치추적기간 여부

	명	%
위치추적기간 후	7	0.8
위치추적기간 내	824	99.2
전체	831	100

〈표 3-27〉 재범 시기별 구분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3개월이내	명	21	84	105
	%	(15.44)	(12.07)	(12.62)
3개월~1년	명	40	221	261
	%	(29.41)	(31.75)	(31.37)
1-2년	명	43	170	213
	%	(31.62)	(24.43)	(25.6)
2-3년	명	19	138	157
	%	(13.97)	(19.83)	(18.87)
3-4년	명	7	57	64
	%	(5.15)	(8.19)	(7.69)
4-5년	명	5	22	27
	%	(3.68)	(3.16)	(3.25)
종료당일	명	1	4	5
	%	(0.74)	(0.57)	(0.6)
전체	명	136	696	832
	%	(100)	(100)	(100)
부착후 재범까지의 기간(일) 평균	일	493.92	547.04	538.35
표준오차		35.10	17.12	15.44

$$\chi^2 = 7.10, t = 1.27, p > 0.05$$

재범 시기를 살펴보면, 전체의 12.6%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지 3개월 내에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는 45%, 2년 이내에 75%가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였다. 시기별 결과를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와 그 외 명령 대상자간에 비교하여 살펴보면,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는 1-2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가 31.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다. 장치의 부착 후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의 평균은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493.9일인 반면,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 547일로 두 집단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27, p>.05$).

(16) 본건 범행시간의 야간여부

〈표 3-28〉 범행시간 야간 여부

		야간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야간 외	명	89	438	527
	%	(66.42)	(64.6)	(64.9)
야간	명	45	240	285
	%	(33.58)	(35.4)	(35.1)
전체	명	134	678	812
	%	(100)	(100)	(100)

$\chi^2 = 0.1620$ Pr = 0.687

본건의 경우 범행을 저지른 시간을 살펴보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야간’시간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33.6%로, 그 외 명령 대상자의 35.4%인 경우 보다 약간 낮았으며,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야간시간 외’의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비중이 66.4%로 야간시간대의 두 배 수준에 달하였다.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57.8%가 야간 및 새벽(밤23시~오전6시)에 범행을 저지르며, 저녁(7시~10시 사이)에 16.3%, 오후(1시~6시)에 14.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는 야간 및 새벽(42.8%) 오후시간(22%), 저녁(21%) 순이었다. 오전시간의 비중 또한 14.3%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11.4%) 보다는 높았다.

〈표 3-29〉 본건 시간대별 분포

		야간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오전(7~12시)	명	74	687	761
	%	(11.38)	(14.25)	(13.91)
오후(13~18시)	명	94	1,063	1,157
	%	(14.46)	(22.04)	(21.14)
저녁(19~22)	명	106	1,008	1,114
	%	(16.31)	(20.9)	(20.36)
야간및새벽(23~6시)	명	376	2,064	2,440
	%	(57.85)	(42.8)	(44.59)
전체	명	650	4,822	5,472
	%	(100)	(100)	(100)

$\chi^2 = 53.9634$ Pr = 0.000

(17) 재범 시간의 야간여부

〈표 3-30〉 재범 시간의 야간여부

		야간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야간 외	명	274	2,758	3,032
	%	(42.15)	(57.2)	(55.41)
야간	명	376	2,064	2,440
	%	(57.85)	(42.8)	(44.59)
전체	명	650	4,822	5,472
	%	(100)	(100)	(100)

 $\chi^2 = 52.4564$ Pr = 0.000

재범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는 시간을 살펴보면, 야간시간과 야간시간 외에 범행을 하는 비중이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와 그 외 명령 대상자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야간에 범행한 경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57.9%에 달하였던 반면, 그 외 명령의 경우에는 42.8%에 불과하였다.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재범에서도 저녁시간(7시~20시)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36.6%), 야간 및 새벽시간(밤 11시~ 6시) 역시 33.6%로 유사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명령의 경우에는 야간 및 새벽시간(35.4%), 오후시간(1~6시)(25.2%), 저녁시간(17~22시)(22.9%) 순으로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

〈표 3-31〉 재범 시간대별 분포

		야간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오전(7~12시)	명	16	112	128
	%	(11.94)	(16.52)	(15.76)
오후(13~18시)	명	24	171	195
	%	(17.91)	(25.22)	(24.01)
저녁(19~22시)	명	49	155	204
	%	(36.57)	(22.86)	(25.12)
야간및새벽(23~6시)	명	45	240	285
	%	(33.58)	(35.4)	(35.1)
전체	명	134	678	812
	%	(100)	(100)	(100)

 $\chi^2 = 12.4494$ Pr = 0.006

(18) 재범빈도

〈표 3-32〉 재범 빈도

	명	%
1회	552	64.9
2회	156	18.4
3~5회	120	14.1
6~10회	18	2.1
11회이상	4	0.5
전체	850	100

전체 대상자 6,544명 중 재범을 한 사람은 850명으로, 그 비중은 13%에 해당하였다. 재범의 빈도를 구분해 보면, 전체 850명 가운데 1회에 한한 경우는 552명으로 가장 많았고(65%), 재범을 2회 한 경우는 18.4%, 3~5회는 14%였다. 6회 이상 재범을 한 사람은 전체의 2.6%에 해당하였다.

(19) 범죄경력

〈표 3-33〉 범죄 경력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야간외출제한명령	744	4.01	3.59	1	28
그외명령	5,722	3.11	3.53	0	62
전체	6,466	3.2	3.5	-	62

difference=0.9, $t=-6.43$, $p=0.000$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최소 1회에서 최대 28회인 반면,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 62회로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범죄경력은 3.2회인데,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평균 4회로 나타나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평균 3.1회)에 비해 더 범죄경력이 많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6.43$, $p<.001$).

(20) 수사의뢰횟수

〈표 3-34〉 수사의뢰 횟수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야간외출제한명령	744	0.27	0.596	0	12
그외명령	5,747	0.13	0.888	0	9
전체	6,491	0.2	0.6	-	12

difference= 0.14, t=-4.16, p=0.000

수사의뢰는 보호관찰 조사관이 대상자의 위반사항 또는 범행이 중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범죄로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자들의 평균 수사의뢰횟수가 0.27건인데 반해 그 외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절반에 못미치는 0.13건으로 훨씬 적었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16$, $p<.001$). 즉,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들의 평균적인 범죄의 경중이 훨씬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다.

(21) 공범수

〈표 3-35〉 공범 수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야간외출제한명령	131	2.24	2.32	1	16
그외명령	664	2.11	1.60	1	23
전체	795	2.1	1.7	1	23

difference=0.13, t=-0.65, p=0.000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함께 범행을 한 공범의 수는 2.1명으로 최소 1명에서 최대 23명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여부로 구분하여 보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범수가 평균 2.24명으로, 그 외 명령의 경우(2.1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0.65$, $p<.001$).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들의 범행 특성으로 공범이 많은 점이 도출된다.

(22) 신상정보공개자여부

〈표 3-36〉 신상정보 공개 여부

	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신상정보공개	명	218	1,493	1,711
	%	(29.11)	(25.76)	(26.15)
해당없음	명	531	4,302	4,833
	%	(70.89)	(74.24)	(73.85)
전체	명	749	5,795	6,544
	%	(100)	(100)	(100)

$\chi^2 = 3.8361$ Pr = 0.050

범죄자들의 죄질, 성격에 따라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29.1%).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인 비중이 25.7%로 나타나 이들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chi^2 = 3.8361$, $p=.05$).

(23) 처분유형별

〈표 3-37〉 처분 유형

	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가석방	명	223	3,055	3,278
	%	(29.77)	(52.72)	(50.09)
가중료	명	16	234	250
	%	(2.14)	(4.04)	(3.82)
가출소	명	65	21	86
	%	(8.68)	(0.36)	(1.31)
소급형기종료	명	285	1,216	1,501
	%	(38.05)	(20.98)	(22.94)
집행유예	명	7	154	161
	%	(0.93)	(2.66)	(2.46)
형기종료	명	153	1,115	1,268
	%	(20.43)	(19.24)	(19.38)
전체	명	749	5,795	6,544
	%	(100)	(100)	(100)

$\chi^2 = 517.7259$ Pr = 0.000

처분유형에서 외출제한명령과 그 외 명령 부과자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소급형기종료의 비중이 38%로 가장 많았고, 가석방(30%), 형기종료(20%) 순이었던 반면, 그 외 명령 부과자의 경우 가석방의 비중이 50%로 가장 많고, 소급형기종료(23%), 형기종료(19%)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chi^2 = 517.72$, $P < .000$).

외출제한명령이나 그 외 명령 모두 형기종료나 가석방의 경우가 많은 점을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24) 가해제 여부

〈표 3-38〉 가해제 여부

	명	야간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가해제	명	42	650	692
	%	(5.61)	(11.22)	(10.58)
가해제 아님	명	707	5,143	5,850
	%	(94.39)	(88.78)	(89.42)
전체	명	749	5,793	6,542
	%	(100)	(100)	(100)

$\chi^2 = 22.0911$ Pr = 0.000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 대상자 749명 중 가해제의 상태에 있는 경우는 5.6%(42명)인데 반해, 그 외 명령 대상자 중에서 가해제의 경우는 11.2%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chi^2 = 22.09$, $p = 0.000$). 즉,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게 가해제는 보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25) 진단자 및 의심자 여부

〈표 3-39〉 진단자 및 의심자 여부

	전체	진단자	의심자
명	6,544	774	365
%	100	11.8	5.6

전체 대상 중에서 정신질환 진단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774명으로 약 12%에 해당하였고, 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365명으로 5.6%에 해당하였다. 정신질환 진단자와 의심자간 관계에는 i)의심자이면서 진단자인 경우 26명, ii)의심자이나 진단자가 아닌 경우 43명, iii)진단자이기만 한 경우 64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3-40〉 진단자와 의심자의 교차 분석

			의심자여부		전체
			비해당	해당	
진단자 여부	비해당	명	616	43	659
		진단자여부 중 %	93.5%	6.5%	100%
		의심자여부 중 %	90.6%	62.3%	88%
	해당	명	64	26	90
		진단자여부 중 %	71.1%	28.9%	100%
		의심자여부 중 %	9.4%	37.7%	12%
전체		명	680	69	749
		%	90.8%	9.2%	100%

(26) 입원경험

〈표 3-41〉 입원 경험

	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있음	명	55	458	513
	%	(7.67)	(8.23)	(8.17)
없음	명	662	5,106	5,768
	%	(92.33)	(91.77)	(91.83)
전체	명	717	5,564	6,281
	%	(100)	(100)	(100)

$$\chi^2 = 0.2662 \quad Pr = 0.606$$

입원 횟수를 통해 입원경험 유무를 재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경우나 그 외 명령을 부과받은 경우 모두 입원경험이 있는 비중은 7.7%과 8.2%로 10% 미만이었으며, 양 집단간에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chi^2=0.266$, $p>.05$).

(27) 연도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

〈표 3-42〉 연도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

	전체 (명)	외출제한명령 (명)	그외 명령 (명)	외출제한명령 부과율 (%)
2008	183	5	178	2.7
2009	419	31	388	7.4
2010	672	144	528	21.4
2011	1,037	112	925	10.8
2012	635	33	602	5.2
2013	1,178	163	1015	13.8
2014	866	103	763	11.9
2015	621	58	563	9.3
2016	802	91	711	11.3
2017	131	9	122	6.9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첫해에는 2.7%로 전체 183명 중 5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부과율의 비율이 2배를 넘어 7.4%가 되었고, 2010년에는 21.8%로 가장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여 현재 1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8)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

〈표 3-43〉 위치추적장치 훼손 여부

	명	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훼손하지 않음	명	721	5,679	6,400
	%	(96.26)	(98)	(97.8)
훼손함	명	28	116	144
	%	(3.74)	(2)	(2.2)
전체	명	749	5,795	6,544
	%	(100)	(100)	(100)

$$\chi^2 = 9.2946 \quad Pr = 0.002$$

위치추적장치 명령을 받은 자가 장치를 훼손하는 것은 대상자의 제도순응 정도와 폭력성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할 수 있다. 전체 6,544명 중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한 경우는 144명으로 2.2%에 불과하였는데, 외출제한명령 부과 집단의 그 훼손 비율이 3.74%로 그 외 명령 부과 집단(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도 존재($\chi^2 = 9.29$, $Pr = 0.002$)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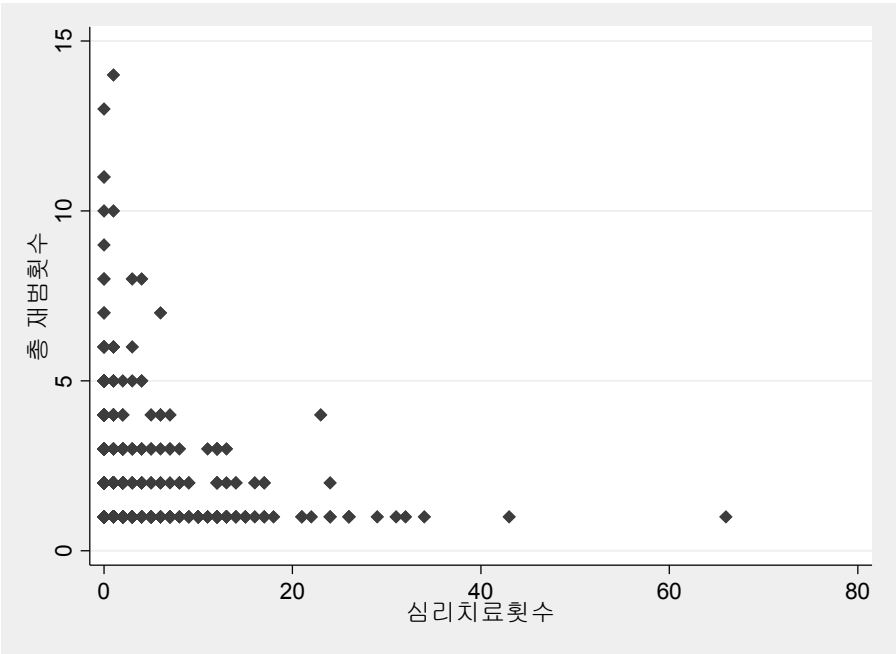
(29) 심리치료 경험여부

〈표 3-44〉 심리치료 경험 여부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
	명	%	명	%	
2015년이전	217	3.3	6,312	96.7	6,095
2016년	536	8.2	5,994	91.8	6,530
2017년	341	5.2	6,188	94.8	5,847
체험형					
2015년이전	719	11	5,813	89	5,094
2016년	762	11.7	5,769	88.3	6,531
2017년	399	6.1	6,130	93.9	5,731

분석대상 중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의 비중은 2015년 이전의 경우 3.3%, 2016년 8.2%, 2017년 5.2%였고, 체험형의 경우에는 2015년 이전의 경우 11%, 2016년 11.7%, 2017년 6.1%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경험했을 수 있다. 각 개인별 종류별 연도별 경험여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경험한 심리치료와 재범예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변수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심리치료 변수(psy)로 생성하였다.

대상자들의 총 심리치료횟수와 총 재범횟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coefficient = -0.02, $p < .05$ 로 나타나 심리치료횟수가 많을수록 총재범횟수가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대상자의 전체 심리치료 총횟수와 재범횟수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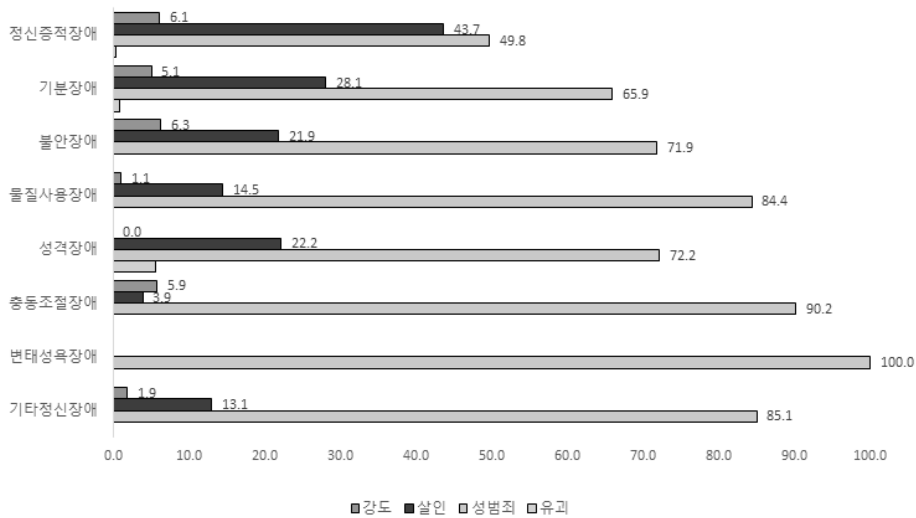


[그림 3-1] 심리치료와 재범간의 관계

〈표 3-45〉 심리치료와 재범간의 관계

총재범횟수	Coef.	S.E.	t	P>t
psy	-0.02	0.01	-2.05	0.04
_cons	1.78	0.05	32.52	0

(30) 정신질환 유형별 분포



[그림 3-2] 정신질환 유형별 분포

정신질환 유형별로 각 범죄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정신증적 장애의 경우 성범죄의 비중이 50%, 살인의 비중은 44%, 강도범죄의 경우 6%로, 성범죄와 살인범죄의 비중이 비슷하면서 대부분이었던 반면, 변태성욕장애의 경우에는 범죄유형이 모두 성범죄(100%)로 나타나 범죄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살인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신질환은 정신증적 장애(44%)였고 다음으로 기분장애(28%), 성격장애(22.2%), 불안장애(21.9%) 순이었다. 변태성욕장애 다음으로 성범죄의 비중이 높은 정신질환은 ‘충동조절장애’(90.2%), 기타정신장애(85.1%), 물질사용장애(84.4%) 순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의 비중은 불안장애 6.3%, 정신증적 장애의 경우 6.1%,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5.9%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신증적 장애 환자의 경우 성범죄(50%)와 살인(44%)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석 결과는 정신분열 환자의 범죄에 살인의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기분장애 환자의 범죄 비중에서 성범죄가 66%를 차지하는 점은 Burnam, Stein, Golding. et al.(1988)의 연구에서 우울장애 환자가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포함한 성격장애의 경우 성범죄가

72%, 살인이 22%를 차지하고 있어 반사회성 성향과 강도·강간·폭행 범죄와의 높은 관련성을 도출한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가해자 중에서 성도착증의 비율이 60%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Dunseith et al., 2004)와 같이, 본 분석에서도 성도착, 성충동 및 이상성선호를 포함하는 변태성욕장애의 범죄유형이 모두(100%) 성범죄로 나타나고 있어, 그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표 3-46〉 정신질환 유형별 범죄 분포

		강도	살인	성범죄	유괴	전체
정신증적장애	명	15	108	123	1	247
	%	(6.07)	(43.72)	(49.8)	(0.4)	(100)
기분장애	명	11	61	143	2	217
	%	(5.07)	(28.11)	(65.9)	(0.92)	(100)
불안장애	명	2	7	23	0	32
	%	(6.25)	(21.88)	(71.88)	(0)	(100)
물질사용장애	명	3	41	238	0	282
	%	(1.06)	(14.54)	(84.4)	(0)	(100)
성격장애	명	0	4	13	1	18
	%	(0)	(22.22)	(72.22)	(5.56)	(100)
충동조절장애	명	3	2	46	0	51
	%	(5.88)	(3.92)	(90.2)	(0)	(100)
변태성욕장애	명	0	0	41	0	41
	%	(0)	(0)	(100)	(0)	(100)
기타정신장애	명	2	14	91	0	107
	%	(1.87)	(13.08)	(85.05)	(0)	(100)
신체장애	명	1	3	13	2	19
	%	(5.26)	(15.79)	(68.42)	(10.5)	(100)
알수없음	명	19	95	129	0	243
	%	(7.82)	(39.09)	(53.09)	(0)	(100)
해당없음	명	568	1,941	2,770	4	5,283
	%	(10.75)	(36.74)	(52.43)	(0.08)	(100)
전체	명	624	2,276	3,632	10	6,542
	%	(9.54)	(34.79)	(55.52)	(0.15)	(100)

주: '정신증적 장애'에는 조현병, 정신분열 및 분열정동장애가 포함되고, '기분장애'에는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등이, '불안장애'에는 불안, 강박 등 관련 장애가 포함되고, '물질사용장애'에는 알코올이나 약물 등의 중독장애 및 도박장애를 포함한다. '성격장애'에는 편집성, 분열성, 반사회성 성격장애, 인격장애가 포함되고, '충동 조절장애'에는 파괴적, 품행장애 및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포함된다. '변태성욕장애'에는 성도착, 소아성애, 성충동, 이상성선호 등이 포함되며, '기타정신장애'에 신경발달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전환장애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로 구분하여 각 정신질환의 비중을 살펴보면, 야간외출제한명령 집단과 그 외 명령 집단 모두 알코올, 약물 등 물질관련 장애 및 중독장애와 도박장애를 포함한 물질사용장애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각 5.61%, 4.14%), 조현병 또는 정신분열 등의 정신증적 장애의 비중이 각 3.9%, 3.8%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3-47〉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여부에 대한 정신질환 유형의 분포

		야간외출제한명령	그 외 명령	전체
정신증적 장애	명	29	218	247
	%	(3.88)	(3.76)	(3.78)
기분장애	명	22	195	217
	%	(2.94)	(3.37)	(3.32)
불안장애	명	3	29	32
	%	(0.4)	(0.5)	(0.49)
물질사용장애	명	42	240	282
	%	(5.61)	(4.14)	(4.31)
성격장애	명	3	15	18
	%	(0.4)	(0.26)	(0.28)
충동조절장애	명	6	45	51
	%	(0.8)	(0.78)	(0.78)
변태성욕장애	명	8	33	41
	%	(1.07)	(0.57)	(0.63)
기타정신장애	명	15	92	107
	%	(2.01)	(1.59)	(1.64)
신체장애	명	2	17	19
	%	(0.27)	(0.29)	(0.29)
알수없음	명	27	216	243
	%	(3.61)	(3.73)	(3.71)
해당없음	명	591	4,692	5,283
	%	(79.01)	(80.98)	(80.76)
전체	명	748	5,794	6,542
	%	(100)	(100)	(100)

$\chi^2 = 8.3075$ Pr = 0.686

2. 각 변인별 재범에 미치는 효과

(1) 학력별 재범여부 차이

〈표 3-48〉 학력별 차이

	학력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중졸이하	.22	.413	281
	고졸이상	.16	.371	461
	전체	.18	.388	742
그외명령	중졸이하	.14	.350	2083
	고졸이상	.11	.315	3660
	전체	.12	.329	5743

R Squared = .006 (Adjusted R Squared = .005)

〈표 3-49〉 학력별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4.229	3	1.410	12.503***
절편	62.612	1	62.612	555.367***
야간외출제한여부	2.483	1	2.483	22.024***
학력	1.070	1	1.070	9.488**
야간외출제한* 학력	.069	1	.069	.614
오차	730.667	6481	.113	
합계	845.000	6485		
수정 합계	734.896	6484		

*** $p < .001$, ** $p < .01$, * $p < .05$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에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재범률이 0.22 (std=.413)로 고졸이상인 경우(0.16, std=.371)에 비해 높았고,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도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재범률이 0.14(std=.35)로 고졸이상의 학력인 경우 (0.11, std=.315)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과 야간외출제한명령여부는 각각 재범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야간외출제한명령: $F=22.02$, $p < .001$, 학력: $F=9.48$, $p < .01$),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614$, $p > .05$).

(2) 연령별 재범에의 차이

〈표 3-50〉 재범에 대한 연령의 효과

	B	S.E.	z	p
나이	-0.018	0.003	-5.13	0.000
야간외출제한명령	-0.574	0.403	-1.43	0.154
나이* 야간외출제한명령	0.025	0.009	2.67	0.008
cons_	-1.219	0.148	-8.23	0.000

Log likelihood = -2503.22, Pseudo R2= 0.0095, Prob > chi2 = 0.000

*** p<.001, **p<.01, *p<.05

나이가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재범률이 적어지는 것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B=-0.018$, $p<.001$),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재범을 통제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3) 혼인여부에 따른 재범에의 차이

〈표 3-51〉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

	혼인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혼인외	.20	.398	659
	혼인	.10	.295	84
	전체	.19	.389	743
그외명령	혼인외	.13	.338	4818
	혼인	.08	.272	934
	전체	.12	.329	5752

R Squared = .007 (Adjusted R Squared = .007)

〈표 3-52〉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5.399a	3	1.800	15.995***
절편	17.292	1	17.292	153.675***
야간외출제한여부	.444	1	.444	3.949*
혼인	1.595	1	1.595	14.172***
야간외출제한* 혼인	.177	1	.177	1.569
오차	730.406	6491	.113	
합계	846.000	6495		
수정 합계	735.805	6494		

*** $p < .001$, ** $p < .01$, * $p < .05$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중 혼인을 한 자와 혼인하지 않은 자 간에 재범률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혼인한 자의 재범률(0.1, $std=.295$)이 혼인하지 않은 경우(0.2, $std=.398$)에 비해 절반이나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에 대한 통계적 차이 역시 존재했다($F=14.17$, $p<.001$). 즉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게 있어서 혼인 여부는 재범 감소에 효과적인 변수라 볼 수 있으며, 야간외출제한명령 역시 혼인여부가 재범률에 차이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3.95$, $p<.05$).

(4)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

〈표 3-53〉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

	직업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직업없음	.16	.372	225
	직업있음	.19	.395	524
	전체	.18	.388	749
그외명령	직업없음	.12	.323	2242
	직업있음	.13	.331	3553
	전체	.12	.328	5795

R Squared = .004 (Adjusted R Squared = .003)

〈표 3-54〉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2.690	3	.897	7.959***
절편	51.077	1	51.077	453.304***
야간외출제한여부	1.804	1	1.804	16.011***
직업	.175	1	.175	1.552
야간외출제한*직업	.065	1	.065	.575
오차	736.903	6540	.113	
합계	850.000	6544		
수정 합계	739.594	6543		

*** $p < .001$, ** $p < .01$, * $p < .05$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자에 있어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0.19, std=.395)와 직업이 없는 경우(0.16, std=.372)간에 재범률에 차이를 보이는 반면, 그 외 명령 부과자는 직업의 유무에 따라 재범률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각 0.13, std=.331; 0.12, std=.323). 검정모형에서도 직업유무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는 나타나지만($F=16.01$, $p < .001$), 직업유무 자체는 재범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1.55$, $p > .05$).

(5)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표 3-55〉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경제수준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하	.22	.415	372
	중	.15	.362	330
	상	.12	.328	42
	전체	.19	.389	744
그외명령	하	.15	.360	3035
	중	.09	.279	2392
	상	.13	.332	335
	전체	.12	.329	5762

R Squared = .013 (Adjusted R Squared = .012)

〈표 3-56〉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9.670a	5	1.934	17.254***
절편	22.128	1	22.128	197.422***
야간외출제한여부	.509	1	.509	4.544*
경제수준	2.926	2	1.463	13.054***
야간외출제한* 경제수준	.196	2	.098	.875
오차	728.540	6500	.112	
합계	849.000	6506		
수정 합계	738.210	6505		

*** $p < .001$, ** $p < .01$, * $p < .05$

재범률에 대해서 야간외출제한명령과 그 외 명령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하면, 그 외 명령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평균 0.15($\text{std}=.36$)의 재범률을 보인 반면,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평균 0.22($\text{std}=.415$)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어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가 그 외 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높았고($F=4.54$, $p < .05$), 경제수준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F=13.05$, $p < .001$), 경제수준과 야간외출제한명령 변인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0.875$, $p > .05$).

(6) 주거안정성에 따른 차이

〈표 3-57〉 주거안정성에 대한 차이

	주거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기타	.16	.372	140
	자택및전월세	.19	.392	609
	전체	.18	.388	749
그외명령	기타	.12	.326	1294
	자택및전월세	.12	.329	4501
	전체	.12	.328	5795

R Squared = .003 (Adjusted R Squared = .003)

〈표 3-58〉 주거안정성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2.576a	3	.859	7.621***
절편	36.468	1	36.468	323.604***
야간외출제한여부	1.216	1	1.216	10.787**
주거	.077	1	.077	.687
야간외출제한* 주거	.048	1	.048	.422
오차	737.017	6540	.113	
합계	850.000	6544		
수정 합계	739.594	6543		

*** p<.001, **p<.01, *p<.05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와 주거안정성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하여 보면, 그 외 명령의 경우에는 주거안정성 수준과 무관하게 재범률이 0.12(std=.326)로 차이가 없는 반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자택 및 전월세 등으로 주거안정성이 높은 경우 오히려 재범률이 0.19(std=.392)로 높고, 기타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의 재범률이 0.16(std=.372)으로 더 낮았다. 이 경우 야간외출제한명령 자체의 효과는 있었으나($F=10.787$, $p<.01$), 주거안정성이 재범률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0.687$, $p>.05$).

(7) 동거인과의 친밀도에 따른 차이

〈표 3-59〉 동거인과의 친밀도에 따른 차이

	친밀도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하	.27	.444	179
	중	.15	.359	218
	상	.16	.371	334
	전체	.19	.389	731
그외명령	하	.19	.396	1286
	중	.12	.326	1724
	상	.09	.285	2657
	전체	.12	.328	5667

R Squared = .019 (Adjusted R Squared = .018)

〈표 3-60〉 동거인과의 친밀도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13.907a	5	2.781	25.096***
절편	65.515	1	65.515	591.139***
야간외출제한여부	2.182	1	2.182	19.690***
친밀도	4.883	2	2.442	22.031***
야간외출제한*친밀도	.268	2	.134	1.209
오차	708.419	6392	.111	
합계	830.000	6398		
수정 합계	722.326	6397		

*** $p < .001$, ** $p < .01$, * $p < .05$

야간외출제한명령과 그 외 명령으로 구분하여 동거인과의 친밀도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하면, 그 외 명령의 경우 친밀도가 낮은 경우 평균 0.1(std=.396)의 재범률을 보인 반면,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친밀도가 낮은 경우 평균 0.27(std=.444)의 재범률을 나타냈다. 각 친밀도 수준에서도 모두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가 그 외 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률이 높았다. 동거인과의 친밀도 수준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F=22.03$, $p < .001$), 야간외출제한명령과 동거인과의 친밀도 변인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209$, $p > .05$).

(8) 범죄유형별 차이의 존재여부

〈표 3-61〉 범죄유형별 차이

	범죄 유형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강도범	.02	.124	65
	살인범	.03	.177	124
	성범죄	.24	.426	560
	전체	.18	.388	749
그외명령	강도범	.02	.126	559
	살인범	.02	.146	2152
	성범죄	.21	.409	3074
	유괴범	.30	.483	10
	합계	.12	.328	5795

R Squared = .084 (Adjusted R Squared = .083)

〈표 3-62〉 범죄유형별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62.112	6	10.352	99.885***
절편	3.948	1	3.948	38.090***
야간외출제한여부	.043	1	.043	.420
범죄유형	21.274	3	7.091	68.422***
야간외출제한* 범죄유형	.048	2	.024	.231
오차	677.482	6537	.104	
합계	850.000	6544		
수정 합계	739.594	6543		

*** p<.001, **p<.01, *p<.05

범죄유형과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야간외출 제한명령 부과자 중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0.24(std=.426)로 가장 높고, 살인 범(0.03, std=.177)이나 강도범(0.02, std=.124) 순이었는데 반해, 그 외 명령 부과자 중에는 유괴(N=10, mean=0.3, std=.483)의 재범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범죄 (0.21, std=.409), 강도 및 살인(각 평균 0.2) 순이었다. 이러한 재범률의 차이에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F=0.42$, $p>.05$), 범죄유형별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8.42$, $p<.001$).

〈표 3-63〉 본건 세부 죄명별 재범률 차이

	본건 죄명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살인	.03	.178	93
	강간	.23	.419	315
	준강간	.09	.302	11
	강제추행	.34	.476	80
	강도강간	.27	.451	44
	약취및기타성범죄	.20	.401	46
	강절도	.02	.142	98
	전체	.18	.386	687

	본건 죄명	평균	표준편차	N
그외명령	살인	.02	.139	1975
	강간	.22	.413	1592
	준강간	.20	.399	97
	강제추행	.21	.410	629
	강도강간	.18	.383	119
	약취및기타성범죄	.18	.382	250
	강절도	.02	.143	722
	폭력	0.00	0.000	7
	전체	.11	.319	5391

R Squared = .091 (Adjusted R Squared = .089)

〈표 3-64〉 본건 세부 죄명별 재범률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59.549a	14	4.254	43.517***
절편	9.216	1	9.216	94.287***
야간외출제한여부	.122	1	.122	1.246
본건 범죄	21.536	7	3.077	31.476***
야간외출제한* 본건 범죄	1.178	6	.196	2.009
오차	592.624	6063	.098	
합계	743.000	6078		
수정 합계	652.173	6077		

*** $p < .001$, ** $p < .01$, * $p < .05$

보다 세부적인 죄명과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재범률을 살펴보면, 본건에서 죄명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1.476$, $p < .001$). 구체적으로 가장 재범률이 높은 것은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 중에서는 강제추행(0.34, $std=0.476$) 이었고, 강도강간(0.27, $std=0.451$), 강간(0.23, $std=.419$) 순이었는데 반해, 그 외 명령 부과자 중에서는 강간(0.22, $std=0.423$), 강제추행(0.21, $std=.41$), 준강간(0.2, $std=.399$) 순이었으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246$, $p > .05$).

(9) 처분유형에 따른 차이

〈표 3-65〉 처분유형에 따른 차이

	처분유형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가석방	.01	.115	223
	가종료	.13	.342	16
	가출소	.28	.451	65
	소급형기종료	.27	.443	285
	집행유예	.00	.000	7
	형기종료	.25	.437	153
	전체	.18	.388	749
그외명령	가석방	.02	.134	3055
	가종료	.10	.298	234
	가출소	.14	.359	21
	소급형기종료	.27	.446	1216
	집행유예	.21	.412	154
	형기종료	.24	.425	1115
	전체	.12	.328	5795

R Squared = .121 (Adjusted R Squared = .120)

〈표 3-66〉 처분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89.563a	11	8.142	81.818***
절편	12.484	1	12.484	125.45***
야간외출제한여부	.008	1	.008	.076
처분유형	32.529	5	6.506	65.37***
야간외출제한* 처분유형	.663	5	.133	1.333
오차	650.031	6532	.100	
합계	850.000	6544		
수정 합계	739.594	6543		

*** p<.001, **p<.01, *p<.05

처분유형과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여부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야간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에 있어서는 가출소의 경우가 가장 재범률이 높았고(0.28, std=.451), 소급형기종료(0.27, std=.443) 또는 형기종료(0.25, std=.437)의 경우가 다음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외 명령 부과자의 경우에는 소급형기종료(0.27, std=.446)에서 가장 재범률이 높고, 형기종료(0.24, std=.425), 집행유예(0.21, std=.412) 순으로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야간외출제한명령여부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처분유형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5.37$, $p<.001$). 가출소된 자나 소급을 포함한 형기종료 중에서 재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서, 사후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0) 감독여부에 따른 차이

〈표 3-67〉 감독여부에 따른 차이

	감독여부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중지및종료	.20	.404	392
	감독진행	.16	.369	357
	전체	.18	.388	749
그외명령	중지및종료	.11	.317	4064
	감독진행	.15	.353	1731
	전체	.12	.328	5795

R Squared = .006 (Adjusted R Squared = .005)

〈표 3-68〉 감독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4.162a	3	1.387	12.337***
절편	63.381	1	63.381	563.63***
야간외출제한여부	1.869	1	1.869	16.623***
감독여부	.011	1	.011	.102
야간외출제한* 감독여부	.907	1	.907	8.063**
오차	735.432	6540	.112	
합계	850.000	6544		
수정 합계	739.594	6543		

*** $p<.001$, ** $p<.01$, * $p<.05$

대상자에 대한 감독여부와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하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감독진행중인 경우의 재범률(0.16, std=.369)이 감독이

중단 및 종료된 경우의 재범률(0.2, std=.404) 보다 낮았고, 그 외 명령 부과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감독 진행 중인 경우의 재범률(0.15, std=.353)이 감독이 중단 및 종료된 경우의 재범률(0.11, std=.3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와 감독여부에 따른 재범률에 대해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그 외 명령에 비해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유의미하게 재범률이 높았던 반면($F=16.62$, $p<.001$), 감독이 중단 및 종료된 경우가 진행중인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재범률이 높지는 않았다($F=0.1$, $p>.05$). 다만,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 있어서 감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감독이 중단 및 종료된 경우에 비해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06$, $p<.001$).

(11) 신상정보공개여부에 따른 차이

〈표 3-69〉 신상정보공개여부에 따른 차이

	신상정보공개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해당없음	.13	.334	531
	등록,공개,고지,열람	.32	.468	218
	전체	.18	.388	749
그외명령	해당없음	.07	.257	4302
	등록,공개,고지,열람	.27	.445	1493
	전체	.12	.328	5795

R Squared = .072 (Adjusted R Squared = .071)

〈표 3-70〉 신상정보공개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52.950a	3	17.650	168.110***
절편	85.129	1	85.129	810.81***
야간외출제한여부	1.527	1	1.527	14.542***
신상공개여부	21.039	1	21.039	200.39***
야간외출제한*신상공개여부	.008	1	.008	.078
오차	686.643	6540	.105	
합계	850.000	6544		
수정 합계	739.594	6543		

*** $p<.001$, ** $p<.01$, * $p<.05$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인지 여부와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하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신상정보공개자의 재범률이 평균 0.32(std=.468)이고, 공개대상자가 아닌 자의 재범률은 평균 0.13(std=.334)인 반면, 그 외 명령 부과자의 경우 신상정보공개자는 재범률이 평균 0.27(std=.445), 공개대상자가 아닌 자는 평균 0.07 (std=.257)로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인지 여부에 따라 재범률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와 신상정보공개자 여부에 따른 재범률에 대해 이원분산분석한 결과,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그 외 명령 부과자보다 유의미하게 재범률이 높았고($F=14.5$, $p<.001$), 신상정보공개자의 경우 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200.4$, $p<.001$). 그러나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신상정보공개자와 비해당자의 재범률의 차이와, 그 외 명령 대상자의 신상정보공개자와 비해당자의 재범률의 차이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두 변인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F=0.078$, $p>.05$).

(12) 장치 훼손여부에 따른 차이

〈표 3-71〉 장치 훼손여부에 따른 차이

	훼손여부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훼손하지 않음	.17	.378	721
	훼손함	.50	.509	28
	전체	.18	.388	749
그외명령	훼손하지 않음	.12	.324	5679
	훼손함	.32	.468	116
	전체	.12	.328	5795

R Squared = .013 (Adjusted R Squared = .013)

〈표 3-72〉 장치 훼손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9.951a	3	3.317	29.731***
절편	26.835	1	26.835	240.53***
야간외출제한여부	1.195	1	1.195	10.708**
훼손여부	6.077	1	6.077	54.468***
야간외출제한* 훼손여부	.356	1	.356	3.195
오차	729.643	6540	.112	
합계	850.000	6544		
수정 합계	739.594	6543		

*** $p < .001$, ** $p < .01$, * $p < .05$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와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하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장치 훼손자의 재범률이 평균 0.5(std=.509), 훼손자가 아닌 자의 재범률은 평균 0.13(std=.378)인 반면, 그 외 명령 부과자의 경우 장치 훼손자는 평균 0.32(std=.468), 훼손자가 아닌 자는 평균 0.12(std=.324)로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에 따라 재범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와 위치추적장치 훼손 여부에 따른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그 외 명령 부과자보다 유의미하게 재범률이 높았고($F=10.7$, $p < .01$), 위치추적장치 훼손자의 경우 훼손하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54.5$, $p < .001$). 그러나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와, 그 외 명령 대상자의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3.2$, $p > .05$).

(13) 가해제 여부에 따른 차이

〈표 3-73〉 가해제 여부에 따른 차이

	가해제여부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가해제 아님	.20	.397	707
	가해제	.00	.000	42
	전체	.18	.388	749
그외명령	가해제 아님	.14	.343	5143
	가해제	.02	.129	650
	전체	.12	.328	5793

R Squared = .017 (Adjusted R Squared = .016)

〈표 3-74〉 가해제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12.230	3	4.077	36.645***
절편	4.503	1	4.503	40.48***
야간외출제한여부	.065	1	.065	.587
가해제여부	3.671	1	3.671	32.997***
야간외출제한* 가해제여부	.213	1	.213	1.917
오차	727.330	6538	.111	
합계	850.000	6542		
수정 합계	739.560	6541		

*** p<.001, **p<.01, *p<.05

가해제 여부와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하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가해제 대상자의 재범률이 평균 0.0(std=.00), 가해제 대상이 아닌 자의 재범률은 평균 0.2(std=.397)인 반면, 그 외 명령 부과자의 경우 가해제 대상자는 평균 0.02(std=.129), 가해제 비대상자는 평균 0.14(std=.129)로 가해제 여부에 따라 재범률의 차이가 있었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와 가해제 여부에 따른 재범률에 대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그 외 명령 부과자와 재범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고(F=0.065, p>.05), 가해제 대상자의 경우 가해제 아닌 자보

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32.997$, $p<.001$). 그러나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가해제 여부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와, 그 외 명령 대상자의 가해제 여부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9$, $p>.05$).

(14) 입원경험 유무

〈표 3-75〉 입원경험 유무

	입원경험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없음	.17	.374	662
	있음	.36	.485	55
	전체	.18	.387	717
그외명령	없음	.11	.318	5106
	있음	.21	.411	458
	전체	.12	.328	5564

R Squared = .012 (Adjusted R Squared = .011)

〈표 3-76〉 입원경험 유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8.446a	3	2.815	25.297***
절편	33.467	1	33.467	300.71***
야간외출제한 여부	1.870	1	1.870	16.802***
입원경험유무	3.963	1	3.963	35.61***
야간외출제한* 입원경험유무	.419	1	.419	3.765
오차	698.579	6277	.111	
합계	812.000	6281		
수정 합계	707.026	6280		

*** $p<.001$, ** $p<.01$, * $p<.05$

입원경험 유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하면, 야간외출제한 명령 부과자의 경우 입원경험이 있는 자의 재범률이 평균 0.36($std=.485$), 입원경험이 없는 자의 재범률은 평균 0.17($std=.374$)인 반면, 그 외 명령 부과자의 경우 입원경험이 있는 자는 평균 0.21($std=.411$), 입원경험이 없는 자는 평균 0.11($std=.318$)로 입원경험

유무에 따라 재범률에 차이가 있었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와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재범률에 대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경우 그 외 명령 부과자와 재범률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6.8$, $p<.001$),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가 입원경험이 없는 자에 비해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35.6$, $p<.001$). 그러나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와, 그 외 명령 대상자의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765$, $p>.05$).

(15) 정신질환 진단자 여부에 따른 차이

〈표 3-77〉 정신질환 진단자 여부에 따른 차이

	진단자여부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진단자 아님	.17	.376	659
	진단자	.29	.456	90
	전체	.18	.388	749
그외명령	진단자 아님	.11	.316	5111
	진단자	.20	.403	684
	전체	.12	.328	5795

R Squared = .012 (Adjusted R Squared = .011)

〈표 3-78〉 정신질환 진단자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8.626	3	2.875	25.727***
절편	41.952	1	41.952	375.35***
야간외출제한 여부	1.442	1	1.442	12.89***
진단자여부	3.088	1	3.088	27.62***
야간외출제한* 진단자여부	.054	1	.054	.485
오차	730.967	6540	.112	
합계	850.000	6544		
수정 합계	739.594	6543		

*** $p<.001$, ** $p<.01$, * $p<.05$

입원경험 유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하면,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진단자의 재범률은 0.29(std=.456)이고 진단자가 아닌 경우의 재범률은 0.17(std=.376)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명령의 경우에도 진단자의 경우 재범률이 평균 0.2(std=.403), 진단자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 0.11(std=.316)의 재범률을 나타내 진단자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와 정신질환 진단자인지 여부에 따른 재범률에 대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록 두 변인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가 재범률에 차이를 나타내고($F=12.89$, $p<.001$), 진단자인지 여부 역시 재범률에 차이를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F=27.62$, $p<.001$).

(16)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차이

〈표 3-79〉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차이

	질환유형	평균	표준편차	N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증적장애	.21	.412	29
	기분장애	.41	.503	22
	불안장애	.00	.000	3
	물질사용장애	.40	.497	42
	성격장애	.67	.577	3
	충동조절장애	.50	.548	6
	변태성욕장애	.63	.518	8
	기타정신장애	.20	.414	15
	신체장애	.00	.000	2
	알수없음	.19	.396	27
	해당없음	.15	.356	591
	전체	.18	.388	748
그외명령	정신증적장애	.11	.319	218
	기분장애	.21	.409	195
	불안장애	.17	.384	29
	물질사용장애	.35	.479	240
	성격장애	.20	.414	15
	충동조절장애	.58	.499	45
	변태성욕장애	.48	.508	33
	기타정신장애	.21	.407	92
	신체장애	.18	.393	17
	알수없음	.11	.315	216
	해당없음	.10	.299	4690
	전체	.12	.328	5794

R Squared = .056 (Adjusted R Squared = .053)

〈표 3-80〉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모형	41.291	22	1.877	17.522***
절편	14.701	1	14.701	137.25***
야간외출제한여부	.214	1	.214	1.999
질환유형	19.522	11	1.775	16.57***
야간외출제한* 질환유형	1.316	10	.132	1.228
오차	698.269	6519	.107	
합계	850.000	6542		
수정 합계	739.560	6541		

*** $p < .001$, ** $p < .01$, * $p < .05$

정신질환의 유형별 차이와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여부에 따른 재범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 중에서는 성격장애의 경우가 0.67(std=.577)로 가장 재범률이 높았고, 변태성욕장애를 가진 경우 0.63(std=.518),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0.5(std=.54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명령 부과자 중에서는 충동조절장애의 경우가 0.58(std=.499)로 가장 재범률이 높고, 변태성욕장애가 0.48(std=.508)로 다음으로 높았다. 재범률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와 질환유형과의 상호작용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정신질환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6.57$, $p < .001$). 즉, 정신질환 진단자 중에서도 변태성욕장애나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제5절 효과성 분석결과

1. 비교집단 구성: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집단과 비교할 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을 의미하며($p(x)=Pr(d=1 \mid x)$ (Rosenbaum & Rubin, 1983; Becker & Ichino, 2002; Franklin et al., 2012), 이 점수를 이용한 매칭(PSM)은 실제 실험집단을 구성하는 각 관측치마다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갖는 관측치를 짝짓기함으로써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성향점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여부를 나타내는 이분형 변수를 이용하여 probit 모형으로 추정하였고, 매칭에 활용한 변수들은 연령, 혼인, 직업, 학력, 주거안정성, 경제수준, 동거인과의 친밀도, 감독여부, 이수명령부과시간, 위치추적기간, 본건 야간여부 등이다.

〈표 3-81〉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프로빗 분석결과

	Coef.	Std. Err.	z
연령	-0.006**	0.002	-2.66
위치추적기간	0.000***	0.000	3.58
혼인여부	-0.232**	0.073	-3.19
직업유무	0.097	0.051	1.9
학력	-0.130*	0.052	-2.48
주거안정성	0.073	0.061	1.2
경제상태	0.015	0.042	0.36
동거인과의 친밀도	-0.023	0.032	-0.72
이수명령이행시간	0.002**	0.001	3.18
본건야간범행여부	0.307***	0.047	6.55
감독여부	0.240***	0.054	4.42
_cons	-1.317***	0.159	-8.27
Log likelihood	-1837.9767		
Pseudo R ²	0.0524		
obs	5,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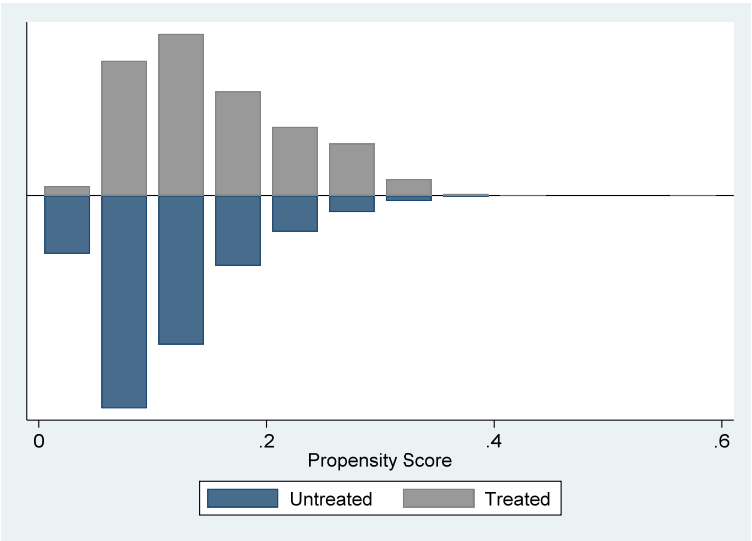
* 종속변수: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여부

매칭 방법으로 선택한 NN(Nearest Neighbor) matching 방법은 하나의 처리 관측치를 성향점수가 가장 가까운 관측치 하나와 매칭하는 방법으로, kernel matching, radius matching, caliper matching 방법을 통한 결과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ATT(Average impact of Treatment on the Treated) 값이 유사하게 나타나 공통영역 및 매칭의 질을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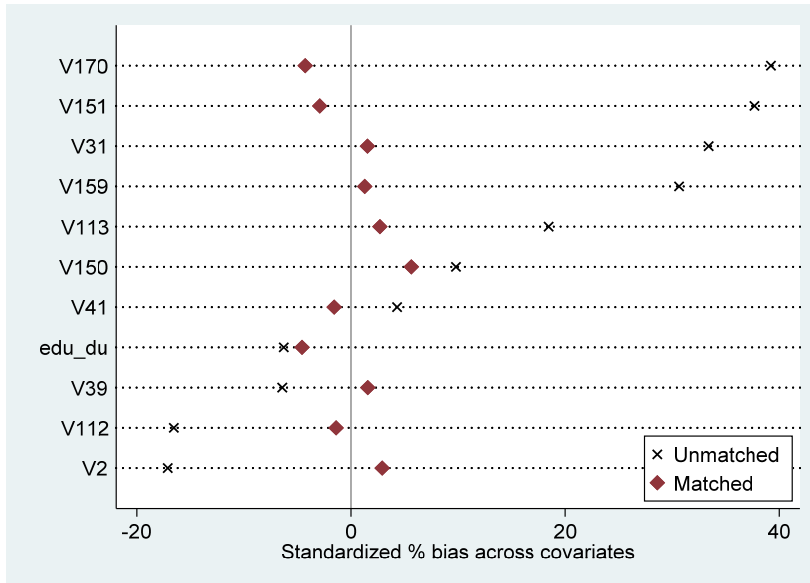
〈표 3-82〉 NN(Nearest Neighbor) matching 결과

	Treated	Controls	Difference	S.E.	T
Unmatched	0.210	0.138	0.072	0.015	4.82
ATT	0.210	0.195	0.016	0.024	0.67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성향점수 공통영역을 점검한 결과, 공통영역 내에 있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자는 749명 중 632명으로, 공통영역 밖의 137명은 탈락되었다. NN matching 방법에 의해 표본의 손실은 존재했으나, 다른 방법의 경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매칭의 질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 통제변수들과 성향점수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두 집단의 성향점수의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3〕 성향점수 매칭 결과



[그림 3-4] 성향점수 매칭 결과(2)

다음은 매칭 후 균형을 달성한 검증결과로서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 성향점수 매칭 후 투입된 변수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그 방법은 전체 표본 중에서 성향점수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매칭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경우 7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매칭되었다. 매칭 결과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83〉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매칭의 질 평가: 매칭전후

	Unmatched	Mean		t
	Matched	Treated	Control	
연령	U	41.104	43.037	-3.87***
	M	41.104	40.775	0.54
위치추적기간	U	1713.8	1223.1	9.29***
	M	1713.8	1767.3	-0.7
혼인여부	U	0.10759	0.16414	-3.67***
	M	0.10759	0.11234	-0.27
직업유무	U	0.71203	0.62545	4.25***
	M	0.71203	0.69937	0.49

	Unmatched	Mean		t
	Matched	Treated	Control	
학력	U	0.60759	0.63803	-1.49
	M	0.60759	0.62975	-0.81
주거안정성	U	0.82753	0.78896	2.25*
	M	0.82753	0.80538	1.02
경제상태	U	1.5585	1.5325	1.01
	M	1.5585	1.568	-0.28
동거인과의 친밀도	U	2.1899	2.2417	-1.52
	M	2.1899	2.1772	0.28
이수명령이행시간	U	32.462	19.537	8.33***
	M	32.462	31.866	0.25
본건야간범행여부	U	0.57911	0.42763	7.23***
	M	0.57911	0.57278	0.23
감독여부	U	0.52532	0.34172	9.08***
	M	0.52532	0.53956	-0.51

2.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 비교집단과의 재범률 차이

성향점수 매칭 과정을 거친 후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재범률의 차이(Average effect of Treatment on the Treated)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를 ‘재범여부’로 한 경우, 매칭을 통과한 처리집단, 즉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대상으로서 처리집단(treat group)은 632명으로 줄어들었고, 비교집단(control group)은 4,691명으로 처리집단과 공통영역(common support)을 구성하였으나, Nearest Neighbor 매칭방법을 통해 비교집단으로서 ATT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573명이었다. ATT 분석 결과, 평균 차이는 0.017(s.e.=.024)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리집단과 그 외 명령 비교집단간 재범률은 1.7%의 차이로 나타났다($t=0.7$).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종속변수로서 ‘야간시간대 재범여부’에 대한 처리-비교집단간 AT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집단(632명)에 대하여 매칭을 통하여 비교집단으로 106명이 구성되었고, 두 집단간 차이는 -0.081(s.e.=.054)로 나타났다($t=-1.505$).

〈표 3-84〉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 비교집단과의 재범률 차이

	n.treat.	n.contr.	ATT	S.E.	t
재범여부	632	573	0.017	0.024	0.701
야간 재범여부	632	106	-0.081	0.054	-1.505

즉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보다 재범을 하는 경우가 보다 많아 재범 자체에 대한 효과는 적었으나, 범행 시간을 야간으로 좁게 보고 분석하였을 때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경우 야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야간 시간대에 한하여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라는 점에서는 비록 전체 재범 자체의 억제 효과는 적지만, 적어도 당해 야간시간대의 제한에 있어서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재범에의 영향요인

매칭 후 분석의 모형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연령, 혼인, 직업, 학력, 주거, 경제수준, 친밀도)와 범죄 특성 변수(범죄유형, 수사의뢰횟수, 위치추적기간, 본건 야간시간 여부, 감독여부, 신상정보공개여부, 추적장치 훼손여부), 정신병리학적 특성 변수(심리치료횟수, 정신질환 진단자여부)를 투입하여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선택은 분석대상이 가지는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야 하고, 본 연구의 자료의 경우 연도별 자료를 포함하면서도 매칭에 따른 표본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본수가 크지 않은 경우 자유도 손실에 따른 문제와 time-constant 변수의 coefficient를 구할 수 없는 FE모델의 한계, 그리고 RE 추정시 자유도 문제의 해결과 time-constant 및 time-varying 변수의 coefficient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가능성과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시행하였다. 검정결과, 본 분석데이터에서 개체별 고정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종적인 분석모델은 pooled model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선택하였다. 분석은 1) 모델1_인구사회학적 요인, 2) 모델2_범죄특성별 요인, 3) 모델3_정신심리학적 요인에 대해 각각 재범에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구분하여 5가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야간의 출제한명령여부이고, 종속변수는 ‘재범여부’와 ‘야간시간대 재범여부’이다.

(1) ‘재범여부’에 대한 요인

먼저 독립변수인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만을 투입한 기본모형에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을 할 확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V2), 혼인여부(V112), 직업유무(V113), 학력(edu_du), 주거안정성(V150), 경제수준(V41), 동거인과의 친밀도 변수(V39)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모형1)에서는 나이, 학력, 주거안정성, 경제수준, 동거인과의 친밀도 변인이 재범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경우 Odds Ratio가 1에 가까워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거인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재범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seudo R²=.0405).

범죄특성을 투입한 모형(모형2)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독립변수로 하면서 범죄특성 요인들을 통제하였으며, 여기에는 범죄유형(살인, 강도, 성범죄, 유괴)(cri_du1~4), 수사의뢰횟수(V67), 본건범행야간여부(V159), 신상정보공개여부(V148),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V190)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범죄유형 중 살인범과 강도범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가능성이 낮게 나타났고(OR:0.04, $p<.001$), 수사의뢰횟수가 많은 자일수록 재범의 확률이 1.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중단된 경우에 비해 재범 확률이 0.57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시스템상 신상정보공개대상자인 경우에 재범을 하는 비율이 1.93배 높게 나타났으며,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의 확률이 2.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seudo R²=.1856).

정신병리학적 특성을 반영한 모형(모형3)에는 정신질환 진단자여부(V161)와 심리치료횟수(psy)를 투입했으며,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를 독립변수로 이들 정신병리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진단자인 경우 재범의 확률이 1.9배 높았고, 심리치료횟수와 재범확률간에는 양적 관계가 나타났다(OR:1.02, $p<.05$). 정신질환 진단자여부와 심리치료횟수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은 1.4%로 낮게 나타났다(Pseudo R²=.014).

범죄특성과 함께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신병리학적 진단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모형(모형4)의 경우, (이 경우 정신질환이나 심리치료여부가 현 성범죄자 위치추적장치 제도상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관련 모형으로 포함시켰다) 범죄특

성만을 투입한 모형2에서와 다른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모형3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정신병리학적 특성의 영향이 모형4에서는 사라지고, 다만 모형의 설명력만을 다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seudo $R^2=.1862$).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 특성, 정신병리학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 전체 모형(모형5)에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여부가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었으나, 혼인을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73배로 재범 확률이 낮아졌고,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재범 확률이 1.25배로 높았다. 주택 및 전월세로 자신의 일정한 주거환경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장소에 기거하는 경우보다 주거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모형5에서는 주거안정성이 높을수록 1.49배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고 동거인과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재범확률이 더 높았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모두 통제된 모형5에서는 범죄유형 중 살인, 강도의 경우에는 재범을 할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범죄나 유괴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수사의뢰횟수가 높을수록 재범의 확률은 1.6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스템상 신상정보공개대상자인 경우 앞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재범의 확률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한 경우에도 2.24배로 재범 확률이 높아졌다. 다만, 이 모형에서도 감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범의 확률이 0.54로 절반가까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살인, 강도, 수사의뢰나 신상정보의 공개에 달하는 중한 범죄일수록, 재범의 확률이 높고, 또한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할 정도로 비순응적인 성향을 가지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도 높아지는 점을 설명해준다. 이 전체모형의 설명력은 19.62%(Pseudo $R^2=.1962$)로 분석모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85〉 재범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Odds	S.E.	Odds	S.E.	Odds	S.E.	Odds	S.E.	Odds	S.E.
외출제한명령 대상 여부	1.51***	0.16	1.19	0.139	1.59***	0.164	1.20	0.141	1.18	0.141
나이	0.97***	0.004							0.99	0.004
혼인	0.78	0.100							0.73*	0.103
직업유무	1.12	0.091							1.25*	0.123
학력	0.71***	0.059							0.92	0.089
주거안정성	1.3**	0.126							1.49**	0.171
경제상태	0.74***	0.055							0.83*	0.068
동거인과의 친밀도	0.66***	0.034							0.86*	0.050
강도범			0.04***	0.027			0.04***	0.030	0.04***	0.030
살인범			0.04***	0.032			0.05***	0.035	0.05***	0.037
성범죄			0.467	0.328			0.50	0.35	0.48	0.34
수사의뢰횟수			1.674***	0.088			1.66***	0.09	1.6***	0.08
본건 야간여부			0.942	0.08			0.95	0.08	0.94	0.09
감독여부			0.572***	0.05			0.57***	0.05	0.54***	0.05
신상정보공개여부			1.932***	0.17			1.92***	0.17	1.99***	0.18
장치훼손여부			2.266***	0.49			2.25***	0.48	2.24***	0.5
진단자여부					1.92***	0.19	1.19	0.14	1.23	0.15
심리치료횟수					1.02*	0.01	0.99	0.01	0.99	0.01
_cons	1.49	0.35	0.49	0.35	0.12***	0.01	0.45	0.31	0.79	0.59
Log likelihood	-2348.4		-1842.7		-2481.1		-1839.5		-1762.8	
Pseudo R2	0.0405		0.1856		0.014		0.1862		0.1982	
Prob>chi2	0.000		0.000		0.000		0.000		0.000	

(2) ‘야간시간대 재범 여부’에 대한 요인

다음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야간시간대에 재범을 했는지 여부를 두 번째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야간외출제한명령여부와 나이, 혼인, 직업, 학력, 주거안정성, 경제수준, 동거인과의 친밀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모형(모형1)에서는 나이와 직업유무가 야간시간대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야간시간대에 재범을 하는 데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던 반면, 직업유무의 경우에는 야간시간대 재범을 할 확률을 1.7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직업이 있는 경우 야간시간대의 재범에 영향력이 컸다(Pseudo $R^2=.0002$).

범죄특성을 포함한 모형(모형2)에서는 범죄유형이나 수사의뢰횟수, 감독여부, 신상 정보공개여부, 장치훼손여부 등은 야간에 재범을 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만 본건에서 야간에 범행을 했는지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R:2.75, $p<.01$). 본건에서 야간시간대에 범행하였던 경우에는 재범 역시 야간에 할 확률이 2.75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2.87%로 모형1보다 다소 높았다(Pseudo $R^2=.0287$).

정신병리학적 특성을 포함한 모형(모형3)에서는 정신질환 진단자인지 여부와 심리 치료횟수 모두 야간시간대의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신질환 진단자의 경우에는 야간에 재범을 할 확률이 오히려 0.67배로 낮게 나타나, 정신질환 진단자의 경우 오히려 낮시간에 범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심리치료횟수는 재범횟수 자체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심리치료횟수의 단위변화가 야간의 재범 확률에의 변화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OR:0.96, $p<.05$). 모형3의 설명력은 모형1보다는 높았지만, 모형3보다는 낮은 1.09%로 나타났다(Pseudo $R^2=.0109$).

범죄특성과 정신병리학적 특성을 포함한 모형(모형4)에서도 야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본건에서의 야간시간 범행여부(OR: 2.74, $p<.001$)와 심리치료횟수(OR: 0.96, $p<.05$)였으며, 그 크기는 모형3에서와 유사했다. 모형4의 설명력은 5.9%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특성, 정신병리학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모형5)에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이라는 독립변수가 야간시간대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나이와 본건의 야간범행여부 만이 재범의 야간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나이의 효과(OR: 0.97, $p<.01$)보다는 본건을 야간에 저질렀는지여부(OR: 2.48, $p<.001$)가 재범의 야간범행 여부에 더 높은 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은 7.6%로 가장 높았다(Pseudo $R^2=.076$).

〈표 3-86〉 야간시간 재범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Odds	S.E.	Odds	S.E.	Odds	S.E.	Odds	S.E.	Odds	S.E.
외출제한명령 대상 여부	0.84	0.175	0.77	0.165	0.96	0.194	0.80	0.171	0.76	0.169
나이	0.98**	0.008							0.97**	0.008
혼인	1.24	0.329							1.16	0.329
직업유무	1.73**	0.291							1.36	0.256
학력	0.97	0.162							0.83	0.148
주거안정성	0.98	0.197							1.05	0.231
경제상태	1.19	0.166							1.08	0.163
동거인과의 친밀도	1.02	0.103							0.99	0.108
강도범			1.02	1.475			0.74	1.086	1.17	1.754
살인범			0.85	1.100			0.58	0.769	0.92	1.234
성범죄			0.81	0.997			0.53	0.672	0.72	0.924
수사의뢰횟수			0.95	0.076			0.95	0.077	0.98	0.083
본건 야간여부			2.75**	0.442			2.74***	0.442	2.48***	0.415
감독여부			1.30	0.213			1.36	0.226	1.36	0.238
신상정보공개여부			0.82	0.135			0.88	0.148	0.87	0.153
장치훼손여부			0.91	0.305			0.92	0.308	0.87	0.297
진단자여부					0.67*	0.133	0.75	0.158	0.72	0.161
심리치료횟수					0.96*	0.017	0.96*	0.018	0.96	0.018
_cons	0.75	0.357	0.46	0.570	0.64***	0.059	0.76	0.965	1.23	1.726
Log likelihood	-526.1		-494.8		-518.17		-466.9		-445.72	
Pseudo R2	0.0002		0.0287		0.0109		0.059		0.076	
Prob>chi2	0.6865		0.0003		0.0098		0.0000		0.000	

제6절 소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범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였을 때, 전통적 범죄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나이가 재범에 부(-)적 영향을 미치나, 다른 통제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교육과 동거인과의 친밀도, 경제수준도 재범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결혼은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에서 재범억제의 효과가 있었다. 이는 사회통제이론에서 가정하는 사회적 결속의 재범 억제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혼을 통한 가족의 구조적 안정이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데 기능하고, 이러한 사회구조가 집단내 개인주의적 특성을 약화시키면서 개인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재범의 확률이 적어지는 결과와는 달리, 주거안정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자택이거나 전월세 등 일정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을 하는 확률이 높다는 점은 주거지원 정책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요하게 하는 부분이다. 범죄특성 측면에서는 살인, 강도, 성범죄, 유괴로 나누어 보았을 때, 유괴의 경우는 본 분석자료에서는 관측치가 너무 적어 분석과 해석에 한계가 있고, 다만 전체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범죄유형이 어떠한지는 재범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리학적 측면의 변수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재범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나, 다른 범죄특성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정신병리학적 변인의 유의미성이 사라지게 되어 제도변수의 영향이 이를 포섭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특성 중에서는 특히 수사의뢰횟수가 많은 자와 신상정보공개 대상자, 그리고 가해제 대상자인 경우 재범 확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재범 통제에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시간 재범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나이와 직업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역시 나이는 부적 영향을, 직업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범죄특성에 있어서 야간시간대 재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본건에서의 범행시간이 야간인지 여부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야간시간의 재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병리학적 측면의 심리치료 횟수는 재범과 부적

관계를 가지나, 그 효과는 미미하여 이에 대한 내용적 보완이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 진단자 여부는 재범에 있어서는 유의미하게 정적 관계를 가지는 요인으로서 진단자일수록 재범의 확률이 높았으나, 야간시간의 재범에는 그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야간시간대의 재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세부범죄유형, 정신질환유형, 피해자와의 관계는 통합모형에서 다루기에는 변인의 범주가 지나치게 많아져 분석을 해칠 위험이 크고, 위치추적장치 훼손여부나 재범시 음주여부, 가해제여부 등은 관측치가 매우 적어 다루기 적합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여부와 각 변인들과의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범죄의 세부 유형에 있어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들의 재범시 살인과 강간의 비중이 줄어들지만 오히려 기타 성범죄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과, 피해자는 본건과 재범에서 모두 낯선 사람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정신질환 유형에 관하여는 특히 성범죄와 크게 관련성을 가지는 변태성욕장애나 충동조절장애에 대해 보호관찰 감독 단계에서 성충동 등의 질환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살인에 가장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정신증적 장애나 기분장애, 인격장애 등에 대해서는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였을 때, 질환의 진단시부터 엄격한 관리와 보호관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한한다.

재범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한 재범에 대한 효과는 적었으나, 야간시간대 재범여부로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을 때에는 야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야간 시간대에 한하여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라는 점에서는 비록 전체 재범 자체의 억제 효과는 적더라도, 적어도 당해 야간시간대의 제한에 있어서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제 4 장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박 형 민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제1절 피면접자 특성

전자감독과 준수사항의 시행 과정과 준수사항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호관찰 직원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로부터 6명의 보호관찰 직원과 6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에 응해준 보호관찰 직원은 보호관찰 직원으로 6년에서 15년을 근무한 직원으로서 전자감독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중 일부는 전자감독 업무를 법무부에서 시작할 때부터 전자감독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었다.

〈표 4-1〉 보호관찰 직원 피면접자 분포

	주요 업무	근무경력
직원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5년 (전자감독업무 9년)
직원 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6년 (전자감독업무 6년)
직원 3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9년 (전자감독업무 9년)
직원 4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치료변경대상자 관리	15년 (전자감독 업무 7년)
직원 5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6년 (전자감독 업무 4년)
직원 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1년 (전자감독 업무 8년)

면접에 응해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5명, 강력범죄인 강도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1명이었다. 이들 중 4명은 전자감독 기간이 10년 부과되었으며, 7년이 부과된 사람과 3년이 부과된 사람이 각 1명씩 분포하였다. 그리고 소급적용 2명, 형집행 종료후 부과된 사람이 4명이었다.

〈표 4-2〉 전자감독 대상자 피면접자 분포

	부과 구분	죄명	부과내용 및 기간	경과 기간
대상자 1	집행종료 후	성폭력	전자감독 10년 정보공개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야간외출제한 10년 피해자 접근금지 10년	18일
대상자 2	소급적용	성폭력	전자감독 10년 야간외출제한 10년 신상공개 10년 출입금지 10년	2년
대상자 3	소급적용	강도	전자감독 3년 야간외출제한 3년	2년
대상자 4	집행종료 후	성폭력	전자감독 10년 야간외출제한 10년 피해자 접근금지 10년 신상공개 4년	3년
대상자 5	집행종료 후	아동 청소년 성폭력	전자감독 10년 야간외출제한 10년 시설접근금지 10년 신상정보공개 5년	5년
대상자 6	집행종료 후	성폭력	전자감독 7년 야간외출제한 7년	4년

이들에 대한 면접은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의 회의실 또는 상담실에서 이루어 졌으며, 비구조화된 일대일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 졌다. 면접은 개인당 1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면접 내용이 보고서 작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받고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내용의 정리는 피면접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하되, 문맥상 면접자의 질문 내용이나 앞서 진술한 피면접자의 진술내용을 언급하는 상황에서는 () 안에 내용을 삽입하여 제시하였다.

제2절 보호관찰 직원의 인식

1.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재범방지 효과

보호관찰 직원 대부분은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효과는 야간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물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나 상황을 막는다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보호관찰 직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서 특정 대상자에게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전자감독 대상자 중 많은 수가 성범죄자이고, 성범죄의 많은 비율이 심야시간에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외출제한이 사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패턴이 젊은 사람들은 특히 밤에 움직이고 낮에 퍼자고 그런게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밤에 돌아다니게 되면 음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게 있어서 아무래도 위험성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외출제한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주는 효과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직접적으로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기여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 4〉

외출제한 같은 경우도, 새벽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건이, 사실은요.

〈직원 2〉

외출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가 야간에도 일어나고 하니까, 외출제한은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직원 3〉

따라서 보호관찰 직원들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다음 사례의 대상자는 처음에는 전자감독 이외에 다른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보호관찰직원은 이 대상자가 주취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야간외출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직원 6>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 야간외출제한을 신청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하였다.

주취자 문제인데요, 그 전에 상황을 보니까... 제가 그 사람 맡은지 두 달 되었거든요. 상황 보니까 이제 주취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외출제한 명령을 신청해서 부과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출제한을 걸어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외출제한 위반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처벌 받는 것이, 법률이 명확히 있으니까. 준수사항 위반은. 22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으니까 들어 가더라고요. 그 전에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자더라고요. 이제 위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들어가고 벌금도 받게 되니까. 지풀에 지쳐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효과성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 그것도 또 뭐 다 처벌을 통해서 애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그렇게 해서 조금 효력을 본 것도 있습니다.

<직원 6>

또한 <직원 3>은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대상자가 강제적인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통해 생활개선이 되었다는 사례도 소개하였다.

그 뭐, 한두 명 본 것 같아요. 자기는 외출제한 있는 게 차라리 더 좋다고 해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자 마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통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는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 한 번 술 먹고 하면 자기는 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많아요. ... 저하고 거의 동갑인데도, 뭐. '저는 차라리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직원 3>

그러나 외출제한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니 만큼, 강한 저항을 보이는 대상자들이 있다고 진술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아, 대상자들한테 미치는 영향? 저항이 굉장히 큰 거...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 대상자들이,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든 법원에서 부과를 해서 받든 그거를 순응하는 데는 최소한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거죠.

〈직원 5〉

이러한 저항은 때로는 적극적인 위반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직원 6〉은 야간의 출제한 명령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상황은 대부분 주취 상태이며, 처음에는 잘 지키다가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야간외출제한 같은 경우 대상자들이 동의나, 받아들이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거의다가 받아들이지는 못하고요, 100프로는 못하고요, 그냥 현실에 수긍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 적극적으로 나 못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위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지켜요.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애도 짜증나니까 이제 음... 이제 나도 이거 못하겠다... 거의 다 맨 정신으로 안 그러고요, 주취 상태에서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초기 시행 단계에는 좀 많이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외출제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잘...

〈직원 6〉

다음 사례는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준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저항이 발생하였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직원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면은 있어야할 곳에 재택장치가 없어요. 처음에. 가봤더니. 이사람 서랍에 넣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원래 그렇게 있었대요. 이거 갖다가 다른데 세팅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죠. 너는 나를 귀찮게 하려고 온 사람이다. 이런거. 이 사람이 되게 저 해꼬지하려고 저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혼자 있었는데 당직자가 있었는데 당직자가 모른척하고 가버리더라구요. 9시 딱 되니까 가버려요. 그사람이 오고 있는데. 9시5분에 왔어요. 저 혼자 있잖아요. 술 이빠이 처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방검복을 입었어요. 방검복을 입고 삼단봉, 전기충전기 옆에다가 감춰놓고 그렇게 있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끝나고 이 사람 관리하면서 되게 힘들었

쥬. 끝나고 지난달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작년 10월에 끝났는데 지난달에 전화와서 팀장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이제는 밥한번 먹자고 이렇게 전화왔더라구.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 안했죠 아직도.

〈직원 4〉

따라서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부과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야간외출제한과 같은 금지사항과 함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원 5〉의 의견은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례에 맞는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취범죄 대상자에 야간외출제한 붙이고 일정량의 이상의 음주 금지. 어차피 직장생활을 하니까 소주 한 병 정도 붙이고. 매일 가서 집에 가서 불시에 음주 측정기 대고 ‘붙어보세요~’ 하고, 또 붙였을 때 많이 나오면 ‘수사의뢰 합니다.’ 아니 내가 그거 좀 못 마시냐고 했을 때, 좀 초반에 충돌은 있었지만 나중에 순응은 하시더라고요. 평온한 가정을 가지고 꾸리시니까. / (그러니까 야간외출제한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같이 그 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같이 부과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더라는 말씀...?) / 아, 예. 어느 하나 준수사항을 딱 들이대서 한다면 그 직업훈련에 참여할 것? 그것도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출소하셔서 많이 갑갑해 하시거든요. ... 채찍을 삭 들면서 채찍만 드는 게 아니라 같이 반드시 당근이 수반되어야지 대상자하고 관계가 안 깨지고서 흘러가거든요. 내가 채찍으로 때리면서도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면서, 그니까 태형제도처럼. 약 발라주면서, 우리 잘해야 된다, 손 붙잡고. ... 대상자하고 같이 손 붙잡고 저 이렇게 공무원입니다, 같은 공무원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대상자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줬을 때 사회복지 공무원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관 내에 성범죄자가 있지만 이렇게 오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하거든요.

〈직원 5〉

그러나 일부 직원의 경우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직원 3〉의 경우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야간외출제한의 효과가 아니라 전자감독 자체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상 효과라고 하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보다는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냐 없냐는 사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이제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저 같은 일선 사람들은 관리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사실 주간에는, 대낮에 누가 뭐 범죄를 저지르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눈도 많고, 우리 직원들도 다 눈 뜨고 있고. 그런데, 밤에는 사실은 사각지대라기보다 무방비 상태에 가까운데, 그 때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사실은. 관리하기가. 그리고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한 두시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여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재범 방지 차원은 두 번째인 것 같고, 관리의 효과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미 야간 외출 제한이 있냐 없냐가 사실 아니잖아요. 발목에 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를 사람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실은 다 저지른다는 것이죠. 굳이 뭐 이 사람이 꼭 야간에 ... 사실 이 사람은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검거가 된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사고를, 그 시간대에... / (그러니까 외출제한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일단 전자발찌의 효과성이지, 야간 외출제한의 효과성은 아닌 것 같다?) /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도 이 사람이 이제 안 가던 데를 갔어요. 한 저녁 7시쯤인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술 먹고 친구들이랑 이제, 좀 있으면 가요~. 그래놓고, 10분 정도 안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강간을 하고 나왔어요. 지가 할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한다는 거죠. ‘아 지금 드가요’, 그래놓고 전화 끊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간을 해요.

〈직원 3〉

2. 재검토가 필요한 준수사항

야간외출제한과는 달리 일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거주지 제한’, ‘이수명령’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1) 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금지

‘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금지’ 명령은 영유아 시설이나 청소년이 활동하는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지만, 도심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너무 많아 필요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영유아 시설 같은데, 특히 영유아 시설 접근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치원부터 영유아 시설에는 거기에 원생들이 있으면 직원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는 애들 학교같이 이렇게 놀게 하지도 않아요. 다 건물 안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영유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도감독 시행해가지고 그 준수사항이 부과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준수사항 부과된 모든 대상자가 거기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게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휴일날, 예전에는... 학교보안관이 요즘은 또 다 있잖아요. 학교보안관이 없는데 초등학교에 놀이터에서 놀았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지금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면, 요즘은 학교보안관 다 있어요. 수업이 진행 중이고, 영유아시설에는 다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다 건물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굳이 접근금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는 그 시설이 너무 많아요. 막 불필요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 이게. 너무 집행하는 단계에서 너무 과도한 경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뭐 범위를 줄이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넓히면 막 동그라미가 계속 겹치거든요. 있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학교는 뭐 저도 인정해요. 학교가 워낙 넓고 요즘에 담벼락을 다 허물었고. 그러니까 뭐. 근데 요즘에 또 휴일날 가도요, 학교에서 노는 애들도 없어요. ... 요즘 학원까지 초등학교도 누가 학교에서 그네타고 놀니까. 그냥 남자애들이나 축구한다고 자기 학교에서 축구나 하지. ... 그래서 저도, 학교는 그래도 인정을 해요. 특히 중학생만 해도 학교 안 가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영유아시설은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 그런데 문제는 판결문에 아동시설접근금지 이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애에 대해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제주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계 상으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자감독이라는 것은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기계적 방법이 가능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동시설로 하고, 하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부 지침으로 이 사람이 자주 가는 곳, 거주하는 곳, 그런 곳에서만 섹터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직원 3〉

〈직원 6〉은 아동성범죄와 관련 없는 대상자에게도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부과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네. 별 아동 성범죄하고 관련 없는 사람인데, 성범죄자인데 출입금지를 부과해 놓은 경우가 있어서 아동 관련 검사를 해도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왜 아동 출입금지를 부과를 해 놓았는지 제도도 좀 불편부당하는 생각이고. 제 나름대로 뭐, 대상자들에게 필요가 있나. 지금 대상자도 힘들고 우리도 행정적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굳이 부과해야 될 사항이라면 출입금지 구역은 좀 한정되게 하던가,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 해놓던가 담당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출입금지구역도 제가, 외출금지보다 출입금지구역이 제일 힘들었던 것 … 행정력 낭비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보도 출입금지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애가 생업종사하느라 왔다갔다하는데 너무 대상자도 스트레스 받고 맨날 전화오고. … 휴일도 그렇고. 운영도 안 하는데 가서 출입금지… 근데 본부 방침이. 그런 거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본부 간부님이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전화를 더 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심리적인 압박감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라면 저희도 할 말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 6〉

또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이 주간시간에는 재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으나 야간에는 더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직원도 있었다.

아, 그건 근데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전, 그렇게, 특히, 출입금지, 그거 솔직히 밤에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유치원도 솔직히 없구요. 그걸 좀 주간 야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출입금지가 밤 10시 이후로는 좀 풀어지게. 왜 그러냐면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유치원은 솔직히. 텅 비어 있는데… 대부분 비어 있어요. 제가 다 가봤는데. 그건 좀…

〈직원 2〉

(2)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직원 3〉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명령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직원 3〉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요한데, 범죄자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에 피해자를 접촉하여 접근 금지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명령 자체도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보호관찰 직원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가장 좀 현실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는 게, 피해자 접근금지. 왜냐면 이제 피해자가 이러저러하게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나 그랬으면 되는데 지나가다가 지하철에서 그냥 여자 엉덩이 만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사실 뭐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때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래도 추행은 좀 나아요. 근데 뭐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디 집에 들어가서 강간을 했는데 그 때 그 여자가 예를 들어 열 몇 살이었고 스무 살이었다, 그런데 한 5년, 10년, 심지어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소를 하면은 우리가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이제... 왜냐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애가 19살이었는데 28살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하는데, 전화걸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사실 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 집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했는데 누가 나올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나올지... 그래도 친정어머니면 나는데, 시어머니가 나올지 남편이 나올지 거기서 우리가 아주 재치 있게 잘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실수하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만난들,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와의 접촉을 요구하지 않아요. 거의 8~90프로는. 어차피 뭐 옛날같이 심부름센터 통해서 그 사람 주민번호를 알아서 주소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소를 안다는 것은,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간다는 것도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접근금지에서 가장 어렵고, 접촉을 해도 거의 80프로 이상은요, 접촉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해봐가지고 딱 2명만 접촉을 원한다, 접촉을 원하면 우리 규정에 두 달에 한 번 전화통화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분이 가장 어려워요. 집행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고, ...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피해자가 보복이 우려될 정도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해야되겠죠. 근데 피해자가 그걸 뭐 원하지도 않고 ... 얼마 전에도 전화했

는데 ... 20대 초반에 강간당했는데 지금 임신했다고, 전화가 굉장히 미안한 거죠.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직원 3〉

피해자가 보호관찰 직원의 접촉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인 운영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을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단말기를 주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저희가 검찰이나 법원에게 요구를 합니다.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가 붙어 있을 때는. 왜냐면 판결 송고 시점 대비 부착 명령 집행이 개시되는 시점은 이 사람의 수용 기간을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상당기간이 지나있는 형태고, 그러면 피해자 인적정보라고 저희가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최종 주거지 주소, 그 다음에 조사 당시의 피해자 조사할 때 연락처 이 정도 정보만 저희가 제공을 받게 돼서, 저희가 그 연락처를 통해가지고 또 주민조회를 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서 알게 되는 정보가 있으면 먼저 동의를 구하죠. 그 당시에 범행 가해자가 부착명령 집행을 하게 되는데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거주지 정보나 직장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 해주고 한다면 저희가 그 지역을 섹터로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상자가 출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연락오는 게 나는 싫다, 관심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진 좀 지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이나 이렇게 출입금지 구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설정해서 대상자가 출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피해자가 항상 집이나 직장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냐 라는 반문이 생길 수 있고요. 저희가 뭐 피해자한테 단말기를 지급해서 반경 얼마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닌 터에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직원 1〉

뭐 피해자 접근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거예요. 이제 뭐 지금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로 운영되고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에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가 되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고 있죠.

〈직원 4〉

(3) 거주지 제한

거주지 제한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것은 작은 도시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도시에서는 준수가 불가능하며, 구역을 설정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한다.

거주지 제한은 ... 대상자가 살고 있는 시·군·구로 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 원주나 충주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그 충주시 안에서만 머물러라, 근데 서울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이게 사실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어차피 저도 그거는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주지 제한이 왜 있는 건지 ...왜냐면 어차피 7일 이상 여행을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한테. 나는 어쨌든 간에 충주시 안에서만 머물러라, 굳이 뭐 그럴 필요가 ... 왜냐면 이게 발찌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니가 충주시 안에서만 머물러라, 그게 되는데 발찌를 차 갖고 다 파악이 되는데 굳이 충주시 안에서만... 이걸 아마... 준수하거나 부과 받는 대상자들이 아마 극소수일테고. ... 전국적으로도 집행하는 기관이 아마 없어요. 그리고 설정을, 뭘 설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동대문구가 있으면 동대문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지도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동그라미로 이렇게 했다가는 ... 이렇게 집행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집행할 수도 없어요. 지방같은 그런 데는 가능하죠. 니가 단양을 벗어나지 말라고. 가능하죠. 근데 서울에서 동대문구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거는 뭐

〈직원 3〉

(4) 이수명령

이수명령의 경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지교정을 위한 수강을 명령하는 것으로서, 수강 자체의 효과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직원 6〉의 경우 수강명령에 대한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소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네. 아니면 그 다음에 수강이수명령 같은 건데,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관리 뭐 이런

것도 뭐 수강이라는 것도 선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부과된 게 적절한. 근데 우리 대상자들이 그 성폭력으로 인해서 성폭력 수강 받았다고 해서 애네들이 실질적으로 감동을 느끼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행동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 다 억지로 하는 거라서 하다 짜증나면 내가 생업종사하는 데 이걸 왜 받느냐,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받으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걸 믿고 행동 개선이 됐다고 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 개선이 되는 대상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저도 몰랐는데 저희 대상자 중에 좀 상담을 진짜 원하는 대상자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부른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원해서, 상담을 원해서 상담을 받고 있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봤거든요.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확실히 자기가 할 의향이 있냐고, 어,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럴 때는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네. 근데 강제적으로 이수명령, 외출명령, 수강명령 이게 법원에서 부과된다는 것 자체가, 개네들이 뭐 자발적으로 수강을 받겠다는 건 아니니까. 좀 강제적인 면이 있으니까 좀 교육적인 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 교육을 하겠다 하는 건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6〉

한편 〈직원 3〉은 성폭력 범죄자들이 교도소 수감 중에 성폭력 예방 강의를 충분히 수강한 이후이기 때문에 출소 후에 다시 수강을 하는 것은 저항이 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직원 3〉은 교도소 수감중에 들은 강의도 이수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수명령이라고 하는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거 교육도 사실은 이제 교도소에서 100시간씩 이렇게 받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판결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잖아요? 교도소 자체 프로그램으로 뭐 사실 이걸 100시간씩 받고 나와요. 받고 나오는데 또 나와 가지고 원래 판결문에 있으니까 니가 이거를 또 받아라. 예를 들어 그게 40시간 정도면 그 뭐 사회생활에서 한 번 받아라, 이게 가능한데, 200시간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100시간씩 받고 나왔는데, 나와서 200시간을 또 받으라고 하니... 사실 좀 이게 너무... 교도관들은 사실 또 그래요. 가능하면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야, 너 이거 받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다 이게 통합이 돼' ... 예. 근데 저라도 그러겠어

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압니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나와서 봤더니 그건 그거고 이걸 이거다 이러니까 ‘뭐요?’ 이래되는 거죠. ... 교도소 안에서는 300시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가지고 그렇다고 뭐 40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짝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6시간씩 뭐, 매주 수요일 이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그걸 하면은, 성폭력 프로그램에서 뭐 교도소에서 그걸 예를 들어... 법률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했으면 그 증명서를 우리가 나중에 교도소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하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한 40시간 정도만요, ‘니가 이거 받은 지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한 번 받아라.’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120시간, 200시간 어휴... 너무 힘들어요.

〈직원 3〉

3.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일시감독정지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전담보호관찰관은 치료, 생업 등 피부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수사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부착자로부터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신청서’를 제출 받아 준수사항의 일시 감독정지를 허가할 수 있다(특정 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 제46조(준수사항의 일시 감독정지)). 일시감독정지는 외출제한,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의 감독정지가 가능하지만, 특히 야간외출제한 명령에 대해 주로 운용되고 있다.

보호관찰 직원들은 대상자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감독정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네 다시볼 대상자예요. 다시 볼 대상자고 내가 무탈하게 이 사람을 내가 있는 임기동안에는 끝까지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다시 왔을 때 그게 쉽게 되겠냐 그거죠. 껄끄러운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인 동료관계나 사회적인 지인들도 좀만 껄끄러워도 얼굴 보기가 힘든데 매번 얼굴을 봐야하고 그리고 장치라는게 이제 대상자가 잘못해서만 경보가 발생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제 초기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거 때문에 대상자한테 끌려다니는 반대의 포지션 반대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준수사항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대상자가 요구했을 때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그것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저는 아마 없을거라고 생각해요.

〈직원 4〉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죠.

〈직원 3〉

그게 진짜 딜레마예요. 자주 그러는 대상자가 아닌데 그거 한 번 해달라 하는데 그 드물게 잘해준 게 아까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잘하다가 한 번에 혹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뭐 만약에 이걸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거는 인제 누가 책임을, 책임을 꼭 지라고 한다면 책임 뭐...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벗어날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허허. ... 솔직히 대상자도 보면 좀 어불성설이지만, 어떤 대상자들은 강력하게 해서 먹히는 대상자가 있고 안 먹히는 대상자가 있고. 선별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먹히는 대상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강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먹히는 대상자는 또 안 되고. 어떤 대상자는 보호관찰관하고 싸우고 몇 년 동안 긴 싸움 끝에 어떻게 했냐면은 외출제한도 맨날 위반하고 하면서 뭐 수사의뢰 계속 하고 자기도 교도소 왔다갔다 하니까 자기가 풀에 지쳐서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직원 6〉

이와 같이 일시 감독정지를 지침에 따라 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직원들은 일시 감독정지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었다.

일시정지도요, 저희가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판사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딱 법으로 해서 정해진 건데, 일개 9급 8급이 응? 이거 일시정지 풀어주고 뭐냐, 응? 니맘대로 풀어주고”, 그런 말 들은 적 있거든요, 제가요. 솔직히 이거 일시정지하는 것도 풀어주기가 ...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을 했어요. 근무자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풀어주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화로 그러죠, 풀어주라고. 그러면은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 풀어줄라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근무자는. 그러면은 니 아이디하고 비번을 줘라. 그래서 밖에 있는 제가 아이디하고 비번을

취요 근무자한테. 그러면은 근무자가 그걸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왜. 그 K-PIS에 남잖아요 기록이. 그것도 제 이름으로.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걸 일시정지해주는 그런 것부터요, 부담감이 커요. 왜. 아까 말했지만 사고 치면은 그 뒷감당하기가...

〈직원 2〉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사실 내심 부담이 많이 돼요. 담당자도 아, 내가 풀어줘서, 이거를 이 기간 동안 정지해줘서 만약 사고를 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그 책임 내가 지지 않으면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담당자인데’ 그런 걸로 가더라고요. 그냥. 흐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걸 거부했다가는 대상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조차도... ‘안돼요’라는 말만 나오니까.

〈직원 5〉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시감독정지를 운용하는 상황은 앞서 언급한 대로 ‘치료, 생업 등 피부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운용은 본인의 치료와 생업활동을 위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유는 ... 뭐 치료, 생업활동. 저희가 제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생업활동이 거든요? 치료는 뭐 당연한거고. / (가족치료는 어떤가요?) / 가족치료... 기타라면 가능하겠네요. 본인 질병이 아니니까. / (본인 질병이라면 사유가 되는데, 애가 아픈데 병원갔다 전화받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 아픈데 모시고 병원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 ... 그게 들어가는 게 적당할까요? ... 대상자들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게 사유로 포함되는 게 적절한지...?) / 그거를 아무리 그렇게 명문화해주시고 넓혀 주셔도 기존의 보호관찰관들, 저는 어차피 보호관찰관이 아니니까. ... 보호관찰관들께서는 그게 타당하거나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해주십시오. 하다못해 친구들하고의 모임, 절대 안 해주십시오. 뭐 친구들하고 동호회 1박 2일, 안 해주십시오. / (가족 여행은요?) / 가족 여행 같은 경우에는 해 주죠. 뭐 돌잔치라든가 관혼상제 플러스, 가족 여행 까지는 좀 해주세요. 가족이 같이 가야되는 거고, 또 하다못해 셀카라도, 가족사진 셀카라도

찍어서 보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받죠. 그 분들은 그거 한 번 하고서 끝내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또 하시거든요, 나중에? 본인도 할려면, 나중에 또 받으려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되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직원 5〉

그 때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데 프렌차이즈를 운영을 하는데 12시에 끝나요. 외출제한이 있어요. 이사람이 사장이에요. 직원들을 데리고 고용하고 있어요. 근데 12시에 끝나면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고. 회식을 사유로 해서 외출제한을 요구할 때 이거를 안 들어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외출제한 허가율이 2위였어요 2위. 전국 2위. 1위가 부산 어디였고 제가 2위였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한번 제가 뭐 꾸중들은 적이 있었어요.

〈직원 4〉

장례식장. 그게 좀 은근히 있어요. 장례식장이요. 아니, 근데, 친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거, 좀 풀어줘라, 제가 그러죠. 요즘 장례문화를 모르냐. 요즘 열두시면 다 자야 된다, 그래서 풀로는 안 풀어줘요. 2시나 3시까지만. 그 안에 들어가라, 야, 상주도 자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례식장은 어쩔 수 없어요, 풀어서 수밖에요. /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대상자도 알지만, 관계상이나 실무상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 / 너무 움아 매면 반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면담할 때도 힘들고, 또 한 번 확 틀어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애네들이 과장님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담당자 바뀌 달라고 해요. 근데 담당자를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직원 2〉

같은 대상자인데 처가를 많이 방문을 해요. ... 처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여행. 특히 이렇게 가족여행 처가 생업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막 들어섰는데 생업에 잘 종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재범 위험성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괜찮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족여행은 뭐 여기서 허락을 해주기가 애매해서 안 해준다고 하기가 실무적으로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게 또 사회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 이거는 또 전자발찌 때문에 이런 거 조차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게 가정불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당신 전자발찌 때문에 이게 뭐냐.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사회부적응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재범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외출제한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실무상으로는 많이 어려워요. 담당자들이 많이 이거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를 한계로 해서 허용을 해 주고 말고. 허용해줬는데 정당한 사유로 허용해 줬는데 만약에 그 시간대 사고가 나면 그건 또 어떻게 비난할 것인가.

〈직원 4〉

회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회식이나 그런 거는 술 먹는 회식은 절대 안 해준다... 근데 회식하면 다 술 먹게 되지 않냐, 원칙대로 하면 힘들겠지만 12시 안에는 다 끝내고 들어와라.

〈직원 6〉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일시 감독정지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실무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었다.

예. 저도 그, 외출제한 풀어준다는 거에 대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한 달에 한 번은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 (그거는 선생님 자체 기준인 거죠?) / 예. 제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은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한 달에 한 번도 솔직히 해줬으면 그 다음달에는 안 해줄라고 해요. 버릇 드니까요. 왜냐면요, 애네들은 뭐 하나 해주면은, 아, 이게 해주네, 그런 생각 갖게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한 번 하기가 힘든 앤데, 이런 생각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해주기는 해주네. 하지만 쉽지는 않은 애다는 거를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애네들하고 저하고는 땅기는 게, 밀고 땅기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런 게 서로 간에. / (실제로 그런 일시정지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나 판단은 담당자들이?) / 예, 담당자가 하죠. 하는 거고, 과장님한테 올라갔을 때 과장님도 판단을 해주죠. 그러죠 과장님이, 이걸 좀 아니지 않냐. 그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거예요 또. ... 예. 제가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황밖에 없어요. 이걸, 뭔가 터졌을 때 상황만 보거든요. 상황만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뭘 해주든 간에 그 상황을 자세히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 예. 무작정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이거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굳이 한다면은 문서로 있잖아요. 뭔가 명확한, 그런 게 있어야죠.

〈직원 2〉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허가 기준이요? / (예. 허가 기준이요.) / 허가 기준은 말한 것처럼 그... / (직원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예예. 판단을 하고 아니면 뭐 과장님께.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외출을 허가하기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고 ...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 장소를 제한을 두자, 어디 갈까냐, 아까 말한 회식도 어디 모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 뭐 여름에 어디 단체 1박 2일로 갔다 온다 그러면 어차피 아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는 보고된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해주는데. 자주 그러는 건 아니니까.

〈직원 6〉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미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결제를 받아서 가는건데 실제적으로 운영될 때는 어떻습니까?) / 운영될때는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뭐 담당자한테 구두보고라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사후결제가 가능하긴 해요.

〈직원 4〉

대부분의 직원들은 실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일시감독정지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법적 근거를 가진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직원도 있었다. 일차적으로 일시감독정지의 결정이 실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깔끔하게 ‘안돼요’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면은 대상자 지도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어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사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다면 애초부터 안돼요 라는 게 불가능하다면,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해서 ...) / 어차피 그거... 그 부분이 또 일반 개인 직원의 의견도 포함이 되겠지만 보호관찰관의, 관리자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남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재범을 했을 때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권한을 주신다고 해서... /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사유를 명확히 해서 그 사유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면 좀 일하시기 편하실까요? 좀 부담 없이?) / 어...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부담이 좀 덜어질 것 같습니다.

〈직원 5〉

이처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보호관찰 직원이 실무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규정화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저는 쉽게 지침이나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일단 규정해놓는 순간 그거에 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 네, 많아요, 맞아요. 아... (격한 긍정)

〈직원 2〉

반면 일시감독정지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허가해 줄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허가를 해 주자)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외출제한 허가 사유를 딱 정해 놓으면 뭐 생업종사사유, 피치 못할 직장 내에서의 사유나, 회식 같은 거는 빼고... / (그렇게 정하면 되게 애매한 게 생업종사라고 했을 때 회식도 근무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은 병원 치료 등으로 되어 있지만, 애가 아플 때, 아빠가 아플 때...) / 그런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아프다고 급히 나가봐야 된다...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허가를 해 주고, 좀 의심되는 대상자... 저는 이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좀 의심하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의 의심이 가는 대상자는 회식이나 이럴 때는 담당직원이, 신속대응팀 있으니까...

〈직원 6〉

이러한 상황에서 한 직원은 직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판단하기 힘들 상황이나 판단에 수반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네. 아니면은, 뭔가 좀 본부 메시저가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질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다이렉트로 이것만, 이거 관련해서만 뭔가 다이렉트로 연락이 갈 수 있게, 뭐 그런...

〈직원 2〉

4. 준수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

(1) 준수사항 일반에 대한 의견

전자감독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에 대한 대다수 직원들의 목소리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인식하는 현재의 준수사항 부과는 너무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야간 외출제한도 처음에 이 전자발찌 제도가 생겨서 법원에서 상고를 했을 때 각종 준수사항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냥 선고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대상자의 어떤 범죄 특성, 범행 시간대, 범행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인 특성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게 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다 때려버리면, 그게 꼭 전자발찌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보호관찰 제도에 서도 일부 판사님들이 준수사항을 그냥 있는거를 시행령에 있는거다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 그럼 실무에서는 정말 이게 어려운거죠. 이게 도대체 일반 준수사항은 법률은 법률에 그대로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준수사항을 막 10개씩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대상자한테 안내도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판결전문 올 때도 그게 붙어서 오거든요. 어떤 법원에서는 굵게 표시를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쥐버리는 경우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애초에 부과할 때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거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선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일반적으로 선고를 해버리다던가 과도하게 선고를 해버리다던가.

〈직원 4〉

우선 법원 입장에서 준수사항을 부과하실 때는 이치에 안 맞거나 아니면 상황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 상황만 보시고서 부과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보호관찰관이 부과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대상자한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2가지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선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선 가족부양의 의무 그리고 생업에 성실히 종사할 것, 보호관찰관이 지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이것은 대상자한테 오히려 득이 되는 보호관찰이거든요. 준수사항.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말 그래도 득이 되는, 대상자들이 아픈, 야간 외출 제한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참여라든가 피해자 접근금지라든가 요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는데, 법원에서 하실 때는 판결문 내에 그리고 사건 관련한 자료들만 보고 하시니까 적절치는 못해요.

〈직원 5〉

저도 이렇게 판결문을 보면은요 ... 근데 외출하고 상관이 없는, 범행 시간대가 ... 아니면 그 사람 비행이나 어떤 모든 그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거의 외출제한하고 상관없을 범행이 있거든요. 뭐 간혹 친족관계가 있거나... 뭐 그런 성범죄나 또 다른 지인상에 관련한 범죄나 이런 것... 외출제한과 관련한 범죄라는 것은 밤에 심야시간에 지나가면서 때려서 강간하든가, 술 많이 먹거나. 음주 상태에서 재범이, 범행이 많다는 거. 밤에 상습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면은 유흥업소 종사한 경력이 많다는 거. 그걸로 일하면서 범죄경력이 그런 사람들은 외출제한을 걸어야 된다는 적절성은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외출하고 상관없는 죄명 같은 경우는 굳이 부과할 필요가 있나... 법원에서도. 예전에는 판사님들 성향이 뭐, 전혀 외출... 심야시간하고 관련없는 대상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왜 외출제한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나 ... 술도 안 먹고, 밤에 범죄 경력도 없고, 그런 애들은 굳이 걸 필요가 있나, 단순히 그냥... 모든 성범죄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대상자들도. 잘, 항상 잘 집에 있고

〈직원 6〉

대상자의 특성과 괴리된 선고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에 큰 차이가 있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준수사항의 부과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실제 대상자들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시점은 형 집행 종료 후이며, 이 시점은 많게는 10년 이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저도 그게... 그 때 당시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해도, 그 당시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도 지금 교도소 수용 끝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 그리고 객관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6〉

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준수사항 부과 특징은 과도하게 긴 기간동안 준수사항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

네. 절대적으로 너무 길어요. 제가 여태까지 봐도 뭐 부착기간은 5년인데 2년간 외출제한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겠쬬. 근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진짜 나쁜 놈이네? 아이 5년도 부족해,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징역 10년 살고 나오면 힘이 쭉~ 빠져서 나오는데. 사실상 37에 들어간 사람이 47에 나오는 거잖아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연장을 하면 되는 건데, 연장은 쉬워요. 그래도요. 근데 줄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해 주질 않아요.

〈직원 3〉

〈직원 3〉의 진술과 같이 〈직원 5〉도 준수사항 부과 기간이 너무 길고, 중간에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의하는 건 저희들이고. 판사님들이 하는 건 법령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준수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다보니 야간외출제한도 발찌 차는 기간 동안, 피해자 접근금지 이런 것들도 발찌 차는 기간 동안, 기간이 없으니까 다 착용기간으로 돼버리죠. 그니까 지도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지도받는 사람들도 지쳐가고. /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좀 길다라는 느낌이신거죠? 전반적으로 길다 라는?) / 예. 그리고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 ... 검찰이랑 법원하고는 1년에 2회 정도... 계속 업무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사업 설명 같은 것을 쪽 하는데, 공판 단계에서는 제대로... 그 준수사항 변경사항이나 축약신청 같은 단계에서는 크게 고려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성범죄자에 대한 완강한 처벌이 국민적인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법원은 그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 줘야 되다 보니 ... / (그러니까 없는 것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될 거지만 감경시키는 거에서는 거기 자체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 네. 그 분들도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직원 5〉

또 한편으로는 준수사항이 부과되면 이에 대한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특성에 맞게 최소한으로 대상자들 선별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되,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담당자들이 대상자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괴리감이 있죠 아무래도. 가둬놓은 상태에서 풀어줬을 때의 위험성, 풀린 상태에서 재사회화를 위한 위험부담... 그것들을 같은 무게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 항상 제도는 당근과 채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근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대상자들에게 줄 수 있는 원호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채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신구속이니까 쉽지는 않은데 말 그대로 긴급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상자 분들 두 분 면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분 다 나간 이유가, 한 분은 혼자 거동을 못하고 거동을 했다하면 재범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지금 또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마트 직원하고 싸우고서 지금 나가셨어요. 두 분 다 정신질환자세요. 그렇게 그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한 명에서 스무 건, 삼십 건 잡고 있다 보니, 케이스가 많다 보니 깊게 개입을 못 하는 거죠. 저희들로서도 소수의 인원만 붙잡고서 꼭 들고서 집중 개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녹록치 않습니다. ... 정말 빠르게 개입을 해야되고 정말 빠르게 처벌도 나와야 돼요.

〈직원 5〉

이에 대해 〈직원 5〉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준수사항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을 때, 재범 없이 전자감독이 종료된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소급적용기준 대상자였는데, 자기 재혼한 마누라의 자녀를, 의붓자녀를 한 3~4회 정도 강간해서, 그걸 소급적용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셨고, 나중에 인지한 사실이지만 피해자하고 피해자 친구하고 같이 사는 것을 알게 돼서. 아, 피해자 친모하고 같이 사는 것을 알게 돼서 피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가족 및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가족부양의무를 추가시켜 드리고 합동결혼식, 주거지원, 직업훈련 이걸로 원호서비스로 접근을 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드리고. 그런 잘 생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범 사건 없이 잘 끝나서 끝나는 날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잘 끝났다고. 그런 케이스? / (또 비슷한 다른 사례들도... 그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 흔치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골동네에서 남아 추행으로 전자발찌 착용했고, 형기 종료 후에 착용했고 5년 착용했는데 정신지체 2급인데 집안 전체가 다 정신지체.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대상자가 장애인 진단을 받지 못해서 출소하자마자 전자장치 착용하고 집안 자체도 워낙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취업시켜주고 장애인 등급 받게 하고, 결국에는 잘 착용해서 지난 달인가 끝났습니다.

〈직원 5〉

(2) 야간외출제한 명령에 대한 개선 의견

많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야간외출제한의 문제점은 부과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야간 외출 제한의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긴 기간이 설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대상자는 사회에 점점 적응하면서 변화잖아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시점은 처음에 선고시잖아요. 사건에서 얼마 안 떨어진 기간에 선고를 하는데 이게 계속 간다는 거죠. 물론 전자장치 부착법이 처음에는 기간도 정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부과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그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준수사항자체가 기간하고 동일해요. 뭐 전자감독 10년이라고 했으면 외출제한도 10년. 지금은 물론 기간을 정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전에 나왔던 대상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업을 하다가 보면 이런 준수사항들이 퇴소자들은 점점 사회적응하면서 변하고 있는데 준수사항은 그대로예요. 물론 우리가 인제 준수사항을 변경, 추가, 삭제 할수 있는 절차는 있어요. 절차는 있는데 한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신청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기존에 타이트하게 했던 것에 대해 풀어주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만약에 풀어줬는데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전자감독 가해제도 잘 안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 애초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기간이 길다는 거. 그걸 처음부터 적절한 기간만 이렇게 했으면 그걸 해제하는 부담감도 없을 거 아닙니까

〈직원 4〉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의하는 건 저희들이고. 판사님들이 하는 건 법령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준수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다보니 야간외출제한도 발찌 차는 기간 동안, 피해자 접근금지 이런 것들도 발찌 차는 기간 동안, 기간이 없으니까 다 착용기간으로 돼버리죠. 그니까 지도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지도받는 사람들도 지쳐가고. /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좀 길다라는 느낌이신거죠? 전반적으로 길다 라는?) / 예. 그리고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 ... 검찰이랑 법원하고는 1년에 2회 정도... 계속 업무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사업 설명 같은 것을 쪽 하는데, 공판 단계에서는 제대로... 그 준수사항 변경사항이나 축약신청 같은 단계에서는 크게 고려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 그리고 이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성범죄자에 대한 완강한 처벌이 국민적인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법원은 그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 줘야 되다 보니 ... / (그러니까 없는 것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될 거지만 감경시키는 거에서는 거기 자체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 네. 그 분들도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직원 5〉

반면 일단 부과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허가 신청의 이유, 허가 기간 및 횟수, 향후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진술이 많았다. 추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신청 자체도 주저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 우선은 대표적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 어느 순간 가족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살고 가족끼리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근데 그 과정까지 가는데 피해자한테 탄원서나 뭐 그런 것 동의서를 받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직원 5〉

(필요성이 사라져서 해지하고 싶은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 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인가요?) / 일단 행정 절차가 귀찮은 게 있죠. 일단 귀찮은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도 애가 지금 생업이나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준수사항에 적응을 해왔잖아요. 이걸 풀어줬을 때는 애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람마음이라는 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상대방 더군다나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걸 풀어주는 것은 많이 어렵다는 거죠. 이미 부가가된 걸 풀어주는 건 심정으로도. / (그러니까 일단 행정상으로 귀찮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풀어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거나 해지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 네 /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데서는 애초에 적절하게 너무 길지않게 부과한다음에 문제 생기면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 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십년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길게 가버리면 그것은 조금.

〈직원 4〉

저는, 준수사항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외출금지만 딱 하나. 그거 하나면 약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외출제한만. /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그 외출제한이라는 게 좀 많이 불편한 제도인가요?) / 그렇죠. 아무래도 애들도, 누굴,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고 있다, 만나고 있는데, 한 11시쯤 되면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애네들이. 왜. 11시 반 정도 되면 전화가 가요, 저희가. 너 뭐 허냐 거기서. 집이. 야, 너 틀렸어. 따져봐라 니네 집까지 29분 걸리는데 너 지금 30분 쯤다. 너 인자 1분밖에 여유가 없다. 빨리 나가라, 그런 압박이 들어오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없잖아 있구요. 솔직히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되면요, 이 친구들이 험 게 아까워서라도, 생활한 게 아까워서라도, 저는, 죄를 좀 안 지을 가망성이 높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실제로 애들이 그래요, 아, 내일모레 끝난다고 내가 뭘 죄를 짓겠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외출제한 정도는요, 2년도 좀 과하고, 1년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빨리 해제할 수 있는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청을 하는 제도는 있죠?) 판사님한테 올려야죠. 근데, 어느 정도 난항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올렸다가 야가 사고쳤을 때 그 뒷감당... 어떻게 보면 이거 어폐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못 올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책임질래...

〈직원 2〉

따라서 많은 직원들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부과할 때 짧은 기간을 부과한 후,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을 보이거나 보호관찰 직원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외출제한 관련해서는 기간이 따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부착기간이 10년이면은, 이제 2년간 ... 네. 지금은 자동으로 그냥 부착기간 중...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가 봐가지고 이 사람이 하다가 예를 들어 발찌기간이 끝나고 나면 도중에 이 사람이 사고를 쳐요. 그러면 우리가 연장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연장 신청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년인데, 2년으로 줄여달라,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너무, 너무 길어요. 그거를 이제 별도로 해달라, 시간은 어차피 00시부터 06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 젖은 허가를 잘 안 해줘요.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 것들 다 반대하지. 대신에 이제 일용 노동하는 사람들이 일찍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그 사람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직원 3〉

저기, 외출제한을요, 예를 들어서 10년 받았는데 외출제한 10년 줘버리는 건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고 ... 발찌 10년에 외출제한 10년 때려버리면요, 10년간 못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석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솔직히 전자발찌는 예를 들어서 10년 했으면은, 준수사항은, 외출금지 같은 건 한 8년 ... 한 1, 2년만 해줘도 희망이 있죠, 조금 그래도. ... (그럼 어떻게, 아예 명령단계부터 그렇게 부과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하다가 좀 준수사항 잘 지키면?) / 하다가 바꿔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예, 당근이죠.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는 이거 빨리 해줄 수 있다

〈직원 2〉

5. 기타 개선 사항

여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른바 ‘귀가지도’와 관련된 것이다. 귀가지도는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해 심야시간에 귀가하도록 지도하는 것인데, 대략 11시 경부터 전화연락을 취하기 시작하며 12시까지의 거주지로 귀가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귀가지도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외출제한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도의 근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② 3.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야간외출제한은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범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기간 역시 과도하게 길게 설정되어 있어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귀가지도는 준수사항 부과가 없이도 대상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이 전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가지도에 대해서 일선 직원들은 아마 백명이면 거의 한두명 빼고는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대상자가 고분고분하니까 이게 되는거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내가 왜 들어가야하냐. ... 저희가 이제 그냥 이제 담당자가 할 수 있는거는 당신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 이런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압박주는 것은 아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귀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해야하는데 괜찮겠냐 서로 부담되지 않겠냐 저희는 이런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면 담당자와서 만나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시발시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하기도 하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죠. 근데 본부에서 나름 생각이 있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건데 이게 정 필요하다면 박사님 말씀대로 외출제한 형식으로 가야하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일부 대상자에, 필요한 대상자에 한정해서 좀 판단해가지고 해야하지않나. ... 일반적으로. 귀가제도가 필요한 대상자는 사실상 일부일 수가 있어요.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그 이유만으로 통제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죠. 모든걸 다 통제해야하는거죠. 근데 어떤 이 사람의 특성 범행특성을 다 고려하면 고려했을때는 야간에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는 일부일거거든요. 그거에 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살인사범이에요. 살인사범이고 1회예요.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귀가지도. 귀가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귀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생업에 무슨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 4〉

외출제한이 있으면 이제 사전에 해가지고 지도라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엄연히요, 다 큰 어른이 어디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밤 12시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니 지금 뭐하고 있냐’ 저는, 물어보는 자체가 사실은 … 인권침해라는 거지요. 저도 이것도 이래 썼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재범을 해서, 재범위험자라든지, 그 다음에 발찌를 자르고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한정해서 …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좋지만 그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한정해서, 전화를 해서 야간에 확인을 하면 될 거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야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다~ 전화를 하게끔 하고 …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매일요, 데이터로요, 미귀가자 현황이요, 짹짹 메일로 계속 내려와요. 사실 미귀가자 귀가 지도가 법령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선 직원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죠. … 사실 차라리 준수하라고 부과된 외출제한은요, 클리어 하잖아요, 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면 처벌받고, 우린 집행한다, 거기서 게임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애매한 줄다리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비협조적인 사람은 전화를 아예 안 받아 버려요. … 전화를 안 받으면 그때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직원 3〉

물론 〈직원 2〉과 같이 심야시간에 거주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다.

보통 열한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열한시 시작해가지고 열한시반. 열한시반이 절정이죠 사실은요. 삼십분 안에는 틈을 주고 넣어버려야 되니까요, 늦어도 열한시반. 열한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어디 있는가, 어이, 집까지 거리 나오잖아요. 어이 니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거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저는 그것도 사실은 효과성 있다고 봅니다. … 우선 못 나가게 하니까요. 애네들이 밖을 안 나가는 자체가 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 안 나가면 사고를 안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사고 못 치죠.

〈직원 2〉

제3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식

1. 전자감독 또는 준수사항 부여에 대한 순응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면접 결과 대체로 자신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면접 상황이 보호관찰소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순응적인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편이(bias)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 1〉의 경우 자신의 범행시간이 새벽시간이어서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큰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제가 외출금지 붙은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판사님도 2심 재판에서 ‘피고는 전과 전력, 앞전에 보면 모든 게 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다보니까 내 판단에 대해서 이번 사건도 새벽에, 4시경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밤에만 되면 나한테 얹튼 사고가 난다라고 판단하시고, 아마도 밤에는 외출제한을 시킨 것 같아요. 방지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범죄자들, 강력범죄자들 보면 사회에서 격리시키듯이... 저 같은 경우도 전력, 전과 기록도 그렇고, 요번 사건도 그렇고 밤에, 새벽에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밤에는 격리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외출금지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상자 1〉

그러나 〈대상자 2〉와 같이 기간이 과도하다는 부담을 표현하는 사례는 다수 발견되었으며,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부과기간이 감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네. 나는 이렇게 면담 지금 왔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떼어주고, 당장에 떼어준다고 하면 내가 어디서 사고를 친다 그러면 내가 가는 거요 또, 내가 또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2년 동안 살아왔을 때 보면은, 앞전의 감독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 다방 같은 데 외로워서, 가끔 가다가 외출 좀 해주세요, 해서 그 외에 가고 범죄라던

지 뭐 그런 위반되는 거 안 했다고 봐요. 잘 살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의지가 그런 거하고는 이제, 굳건히 마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범죄 할 그게 없는데, 굳이 이렇게 7년까지 꼭꼭 채워가지고 산다는 게 나는 진짜 막 힘들고. 도중에, 앞전에 주임님이 나를 좀 위로할라고 잘만 하면 한 2,3년 깎아줘요. 감안해주니까, 버텨 봐요, 그랬는데. 아 바뀌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없이 아마 7년까지 살아야 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고마워. 아니 뭐 주임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고마워요. 그러니 헛된 꿈을 갖고 있다가 이거 안 되면 얼마나 내가 원망할 거예요, 그분을. 솔직히 얘기해주니까 조금 실망감은 있어도,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한 번 차고 있으면 내내, 재판 받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든 거지. 압박이 오는 거지 또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5년 동안 차고, 7년 동안 어떻게 차지, 이렇게.

〈대상자 2〉

한편 〈대상자 5〉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즉, 당시 사회 분위기와 자신의 범행 내용을 보았을 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 이지만, 다른 지역의 더 심각한 사례 중 전자감독이 시행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건을 통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사건, 다른 아이들이 했고 다른 사건에서 대전이나 서울에서 큰 지역에서 한거랑 제 사건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저같은 경우는 음.. 한명이고 우발적이고 그런건데 다른 지역은 여러 명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아니면 직장인의 신분으로 미성년자를 유인을 해가지고 여러 명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 발찌를 안 찼다. 외출 금지 제한을 안 받았다. 그 정도죠. / (다른 사건이랑 비교했을 때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거죠?) / ... 확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람들 상식으로 미성년자를 건드리면 애짱아요. 30살 저는 넘은거고 일단.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타지역에서는 그렇게 여러명에서 미성년자 한명을 가둬놓고 한명을 그렇게 했는데 개네들은 왜 발찌를 안 찼을까 생각을 하는거예요 저는. 공주는 그런 사건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제 생각으로는 나쁜 생각하면 공무원들 실적 사건이 이런 사건이 안나요. / (그러니까 별로 안나는 지역에서 큰 사건이 있어났기

때문에 좀 과학계 부과된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대상자 5〉

그리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은 참기 힘들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대상자 4〉의 경우 4년의 신상공개가 부과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게 인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는 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억울하다는 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납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근데 이걸로 인해서 자식과 가족, 다 합쳐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말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놀림을 당해서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큰 애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옥천이지만은, 지역에서 동네 유지... 토박이라고 하죠,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그런 분이라 자식이 이렇다 된다 하면은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시골집 가는 것도, 가도 불편한 게 많고. ... 니네 아빠한테 태어난 니가 잘못이며, 이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어? 저런 사람 낳아 가지고 당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는 저보다 솔직히 지금 아이들이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대상자 4〉

2. 전자감독 또는 준수사항 부여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1)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발찌와 준수사항이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 3〉의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가 된 이후 혼자 외지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카, 형수 등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명절에도 가족을 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근데 아마 색안경을... 알면 다시 색안경을 끼까봐. 아무리 가족 관계여도 아마 이게 지갑에 돈이 좀 많이 있어, 그러다보면 내가 있다 보면 치울 수도 있잖아요. 무의식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아예 안 갖게... 제가 그냥 없을 때. ...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안 갑니다.

〈대상자 3〉

〈대상자 4〉은 전자감독, 신상공개, 야간외출제한 등 전반적인 부과사항이 가족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자감독의 경우 자녀들과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 가고 싶지만 전자발찌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신상공개는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이웃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고지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야간외출제한의 경우 밤늦게 부모를 배웅하지 못하였던 일화를 통해 부모에게 도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을 어기지 않고 어떻게 좀 애들하고 자유롭게 단 목욕탕이라도, 수영장이라도 갔다 올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무조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다리를 자를까? ... 그래서 진짜 내가 발목 자르고 내 애들하고 목욕탕이나 한 번 갔다 올까? 아니면 저기 찢질방이라도 갔다 올까? 막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 신상공개만 없어도요, 일단은 신상공개만 없어도 제가 내 아들과 사는 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일단은 제가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내가 조심하면 되지만, 이걸 신상공개 같은 경우는요, 공개를 해버리면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 저 부모님 병원 갔다가요 그게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11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계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다, 시골 데려다 드리고 하면 가는데 40분, 가면 못 오는데? 근데 어머니, 아니 저 아버지가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 밥 사주고 하니가 40분인 거예요, 11시. 저 거동 잘 못하시는 아버지, 택시... 어머니 아버지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시골까지 그냥. 나는 집으로 왔어요. 그 심정을 ... 제가 전화도 한 번 했었어요. 제가 1시부터 2시, 늦어도 2시 안에 꼭 들어올 테니까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안돼요, 안돼요.’ ‘아 저기 아버지가 저기 그렇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대로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뭐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위암 수술한지 몸이 좀 힘을 잘 못 쓰셔요. 아버진 거동 못하시고, 근데 그 두 분을 태워서, 택시 태워 보냈어요.

〈대상자 4〉

한편 야간외출제한 명령으로 인해 야간에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자신에게 매우 불편한 것임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곳에 사는 형제가 집에 방문하여 문제를 일으킬 때, 야간외출제한으로 인해 이를 회피하지 못 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대상자 2〉의 사례였다.

그리고 형이 만약에 술 먹고 와가지고 그랬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힘든 거죠. 집에 있으면 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하고 부딪칠 텐데 언젠가는, 사고 터질까봐. ... 형이 이제, 큰형이 술만 먹으면은 어머님한테 땡강 부리고, 막 꼬장 부리시고, 거, 옛날에 아버님이 좀 못 배우셔가지고 우리를 좀 회초리로 때려야 되는데 무식하게 당했어.

〈대상자 2〉

(2)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대부분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짜증나는 것 보담도. 제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제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 1〉

제 혼자의 생각일 수 있지만 식당에서 일해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사람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식당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해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 그 다음에 또 그냥 빈 방에서 옷 갈아입다가 누가 들어와

버릴까봐. 봉대는 감고 다니지만, 또 그러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봉대 감고 있으면 너 어디 많이 다쳤어?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따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반박이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 야간 하는 3교대 하는 데도 있었고 2교대 하는 데도 있었고, 현장에 가다보면 현장이 대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성도 가고 천안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내일도 하루 일하면 하룻밤 자려고 해도 나와야 된다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아~ 거 진짜 불편하네.' 그런 거를 막 머릿속에 안 떠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대상자 3〉

그래서 다 포기하고, 뭐 용접하는 데, 심지어 그냥 정화조 하는 거 그거도 신청해봤고 다 해봤는데 일단 면접 보면 다 합격이에요, 면접 보면 합격인데 아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래서 거기 출근해서 한 이틀만 일하면 이 용접하는 데가 공장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해야지 뭐 출근해서 다 샤워를 해야 돼요. 그 막 씻가루 막 이런 거. 저는 샤워를 못하잖아요. 안하고 하다보니까 거기 사장님이 '왜 그러냐.' 그렇게 하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변명을 대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씻값 다 받고 나왔는데 내가 왜 이걸 숨겨야 되지? 딱 얘기하면 '아 저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그거 전자발찌 찼으면 분명 성일 것이고 아니면 살인일 것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해요.

〈대상자 4〉

〈대상자 3〉의 경우 야간외출제한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대상자 3〉이 주로 일하는 곳이 PC방이라고 하는데,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비 정기적어서, 언제 일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호관찰소] 근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전 안에 다 해달라는 식이에요. 오전에 내가 이 사람이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한 3시에 오늘 하루 좀 내가 어디서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와줄래, 그러면 전화하면 안 돼요. 시간이 왜 빨리 얘기 안 해주냐고. 아 저도 사장님이 와라 그래야 가지 그냥 가서 제가 돈도 안 받고 일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 (그러니까 미리 신고하면 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자 3〉

〈대상자 4〉도 야간외출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이 많다는 점을 호소하였는데, 야간 잔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직장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 사람들 일하다보면 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가 있어요. ...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철야 뛰어야 돼, 오늘 철야 뛰고 내일 쉬어,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저 오늘 저기 12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 법으로 걸려요. 저 끌려가시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11시 되면 들어가, 10시 되면 들어가, 얘기를 해요. 그럼 들어가서 편히 쉬고, 그 다음에 또 쉬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요. 이럴 때는 좋은데 막상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돈 못 버는 사람도 막... 저, 지금 제가 그래요. 못 벌어요. 제대로요.

〈대상자 4〉

(3)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 발찌를 차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사회생활에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가급적이면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모임은 못하죠. ... 그니까 아예 만들지를 않았어요. ... 없으면은 동회도 가입해서 운동을 하든 끝나고 같이 술한잔을 할 수도 있고 동창모임이나 지역 선후배 모임이나 학교 그런거나. 그런거 다 있죠. 애당초 출소하고 아예 만나지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집 일 그거 밖에 없어요.

〈대상자 5〉

〈대상자 3〉은 호감을 가진 여성에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일일이 꼬치꼬치 물어봐 보면 또 거짓말하기가 영~ 글드라고. 에이 씨발 나 발찌찼어. 그런 얘기는 못하겠더라고. 지인들은 아는 사람 몇 명은 있어요. ... / (그럼 성관계하고 그럴 때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 금계 인자 원래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거짓말을 좀 했죠. 이게 전자발찌인지는 몰라요. 봉대를 감으니까, '다쳤냐', '어, 부러져서 여기

쇠 박아놔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아직도 그 양반은 이게 전자발찌인데 제약이 이렇게 많은 걸 아직은 몰라요. 집에 부착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있고. 신문지로 다 이렇게 싸갖고, … 옛날에 없을 때는 누가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매력이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차고 있는데, … 저한테 대시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자 그러는데 제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대상자 3〉

(4)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 1〉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자발찌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신경쓰고 있었고, 〈대상자 2〉의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것 때문에 대중 목욕, 동호회 활동 등의 일상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이제 시작인데. 첫째 우선 제가 인력사무실 통해서 일을 배정받으면 장소까지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현장까지.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전자발찌가 발목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도 하지만 외관상으로 의자 같은데 앉게 되면 바지가 발목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노출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요즘 매스컴 티브이나 신문이나 방송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찌가 보이다 보니까, 좀 그런 외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두려움도 있고. 과연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무슨 사람으로 시선으로 바라볼까 그런 두려움에,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대상자 1〉

그러니까, 공동 사우나도 하고 싶고 목욕탕도 한 번 가고 싶고 뭐 반바지 입고, 내가 뛰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도 하고 싶고, 금계 그런 부분이 못 하니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는 반바지 입고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게 제일 힘들구요. 그 어디 가서 뭣이야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만나서 하는 게 뭐지? / (동호회?) / 예, 동호회 같은, 운동 동호회 같은 데 가서 뭐 배드민턴도 배우고 싶고 탁구도 배우고 싶고, 그런 게 많잖아요. 마라톤 그것도 동호회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 번 뛰고 싶고. 근데 그런 부분이 못하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죠.

〈대상자 2〉

〈대상자 4〉은 교통사고가 나서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자발찌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워 병원에 가지 않았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에 대한 반발로 〈대상자 4〉은 전자발찌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외출을 하였다가 신고를 당한 일이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저기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교통사고 나갔고 병원에, 119에 실려 가야 되는데, 저 그 병원가면 또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초음파 검사부터 다 찍고 있잖습니까. 가면 이 발찌 보일까 봐요, 무서워서 나 그거, 아유, 나 그 병원 못 갈거 같으니까요, 앓사리 저 갈비뼈 나갔는데도 안 갔어요. ... 왜냐면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어떤 여자 분인데 목에 채워라, 발에 채워야 보이지도 않는 거, 목에 채워야 보일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때는 애들 떠나서 가족들이 다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포자기로 진짜, 그렇다고 또 죄를 짓고 싶지는 않고요. 진짜 죄는 짓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쪽에서 한번 해볼까 해서 생각해본 게 제가 법으로 반바지 입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꼭 긴 바지 입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반바지 입고 나가봤어요. 바로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 발찌 찬 사람이 저기 막 반바지입고 돌아다니면서 위협한다고.

〈대상자 4〉

그 밖에 심리적 스트레스나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호소한 사례들이 있었다. 〈대상자 3〉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라 응답하였으며, 〈대상자 1〉은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민원 때문에 시설 보호소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네. 어차피 마음은 다시는 범죄를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은 제 몸에서 받아들인 게 오래됐어요. 진짜로 남의 것 훔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 보니까 나도 큰~ 자기 지갑이겠죠, 여자 핸드백이 있어도 나는, 옛날에는 어떻게든 주위를 본다 해서든 가지고 갔을 수... 저는 진짜로 이거 차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거 범죄 한다는 것은 그냥 나 잡아가시오 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상자 3〉

전자발찌죠. 전자발찌하고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공개가 있음으로써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보호소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 민원이... 아파트 주변... 아파트라든가 개인 주택이라든가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 1〉

그런데 〈대상자 1〉의 경우 쉼터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시설 자체의 규정에 따라 야간 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야간외출제한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그럼 기독교 기관에서 공동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이면 외출제한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겠네요?) / ... 예. 거기는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안의 규정만 잘 지키면 의무적으로 주말에, 주일에 예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면 강제퇴소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를 택하게 되었고. 거기서 입소를 해서 방을 배정받아 침식, 식사제공만 거기서 보장을 해주고요. ... 외출제한도 제가 뭐, 밤에 뭐 굳이 11시부터 새벽까지 나갈 일, 그런건 뭐 제가 감수해야 되니까. / (그러면 외출제한이 왜 붙었을까요?) / 제가 외출금지 붙은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판사님도 2심 재판에서 '피고는 전과 전력, 앞전에 보면 모든 게 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다보니까 내 판단에 대해서 이번 사건도 새벽에, 4시경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밤에만 되면 나한테 암튼 사고가 난다라고 판단하시고, 아마도 밤에는 외출제한을 시킨 것 같아요.

〈대상자 1〉

3. 준수사항 위반 경험

야간외출제한 명령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대상자 5〉는 출소 후 초반 모임 때문에 1~2분 정도 늦은 의도치 않은 위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위반한 경험을 진술하였다.

출소하고 초반에는 그랬어요. 한 2분 늦었고 1분 늦었고 / (그러니까 몇 번 초반에만 위반이 있는거고 뒤에는 다 허가를 받고 하셨다는거죠? ... 아까 말씀보면 모임 때문에 좀 늦었다 1~2분 그런거죠?) / ... 이런 일이 있을거예요. 집사람이 만약에 모임을 갔는데 집사람 모임은 세시도 들어오고 다섯시도 들어오고 한시도 들어오고 열두시 전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모임자체가 다들 술먹는거 여자들끼리 술먹는거 좋아하고 집사람도 가게를 하니까 여기서. CEO 모임. 공주 지역 살다보니까 많이 친해요. 근데 저 때문에 다 사람들 여자들 아줌마들 언니들 소개받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회생활 하는데 집사람이 좀 늦게 들어와요. ... 근데 만약 전화를 안 받으면은 술을 많이 먹어서 팔라되가지고 택시를 타고 와야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갔다오면 되는데 제가 묶여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담당 전화해서 갔다올게요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그건 타당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고 미리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게 좀 있는거 같아요. 일단은 그런거고 그 외에는 크게 없어요.

〈대상자 5〉

〈대상자 1〉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주지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잠을 자는 방과 화장실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위반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보호관찰 담당자가 인정하여 거주지 내의 이동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체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2층에서 204호에서 지금 혼자 방을, 생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원래 이게 부착장치가 3미터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주거하는 방에서,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요. 전립선도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소변도 자주 보러가고. 간혹 배탈이 나면 화장실도 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며칠... 출소해서 하루 이틀 만에 새벽에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급하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 5층 건물인데, 방에 복도에서 복도 끝까지 건물 거리가 한 30미터 정도 되는데, 제가 맨 끝 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복도 가운데 계단 앞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럼 방에서 거리가 한 15미터 가량 한 15미터 정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3미터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소변을 보러 가든... 소변까지는 잠깐 보고 오니까 관제탑에서 경고가 안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일을 볼 때에는 1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경고가 울려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담당님한테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했어요. 나 어제 새벽에 배탈이 나서 이러이러해서 큰일을 보다 보니까 10분이 넘어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는 했는데, 담당님한테 지금 아침에 전화 드리는 거다, 했더니 고거는 화장실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건물 구조 상 화장실까지 15미터는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거는 저 컴퓨터 기록에 자기가 다 적어놓겠다 ... 네. 그렇게 해서 입력을 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뒤로는 내가 화장실을 가더라도 지금은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대상자 1〉

4. 준수사항 위반 충동 여부

앞서 언급한 면접 상황의 특성에 따라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싶은 충동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래와 같은 응답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위반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최소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가 외출제한을 위반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위반할 아예 생각은 뭐, 머릿속에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상자 1〉

아, 싸우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저요. 막말로 제가 큰 소리 하면은 뭐 '니가 뭐냐, 또 공권력에 반발하네.' 그런 얘기 해버리면 제가 깨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원할 때는 또 있어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일을 나가려면 해달라고 하면 ○○○씨는 11시까지 외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게 있어서~

〈대상자 3〉

그러나 〈대상자 4〉은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으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현하였는데, 자신에게 부과된 준수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나아가 스트레스로 인해 범죄의 충동과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는 것을 진술하였으며, 자살 시도 경험도 이야기하였다.

그건 신상공개도 있었고요, 발찌 스트레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저도 이제 아... 애들... 그 신상공개 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떠올랐었어요. 아, 내가 이게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는구나. 차라리 죽어버릴까? 근데 모르겠어요. 죽을 또 용기는 없었는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차라리 들어갈까? 차라리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애들이 아빠가 그냥 또 외국 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한 10년 살고 나오지 뭐 그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일까? 아니면 묻지마 폭행을 해볼까? 막 진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할려고 그 알루미늄 뼈대 그것도 샀었어요. 사놓고 했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피해를 또 받는다는 게 싫어요. ... 그러다가 떠오르는 게 번개탄이야. 번개탄 하고 화로 있잖습니까, 그거 하고 소주 땃병짜리 하나 사고 그러고선 왔어요. 그러고 창문을 다 닫아놓고 불 켜 질러갔고 하니까 연기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아~ 인제. 혹시 또 숨막혀 내가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 문 안에 또 다 잠그고 그 다음에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 술을 엄청 먹었어요. 먹고나서 이제 머리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제가 깬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막 연기는 있는데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풍풍거리는 소리는 들리고, 아~ 몸이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보니까 차 문이 열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뭐지?' 그런데 뭐가 시커먼게 팍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승사자인가보다, 근데 그게 작은아버지더라고요.

〈대상자 4〉

5. 일시감독정지 경험

면접에 응한 모든 대상자들은 간단한 절차로 쉽게 일시감독정지가 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 절차가 어렵지 않았으며, 간단한 양식의 작성과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일시감독정지는 바로 시행이 된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5시까지인데요, 제가 담당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지갑이 없다보니까, 저 혼자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인력사무실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제까지 이틀을 일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봐달라고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로... 1시간 시간을 봐주기로 해서 4시까지로 규정을 하고,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은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실 나가서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일했습니다. 원 / (그러면 외출

제한, 5시에서 4시로 줄이는 것은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그거 한 3~4일 정도 되었습
니다. ... / (그렇게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그 과정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 신청은 어렵지는 않았고요. 전화상으로 대화를 했는데 담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
다고 관제탑에다가 4시까지 해서 5시까지 한 시간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연락이 와서 내일부터 4시 넘어서 나가서 일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틀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엇그저께부터.

〈대상자 1〉

심지어 급한 사유가 있다면 당일 전화로도 신청과 승인이 가능하였다.

(그러니까 미리 신고하면 상대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신고해야 되는 게 보통 얼마 전에 신고를 하면 좀 쉽게 됩니까? 만약에 오늘
밤 11시부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는 그날 아침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직원분들 퇴근하기 전에 저 담당님한테만 얘기하면 됩니다. / (아~ 담당자가
퇴근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거고?) / 또 퇴근할 시간 다 되었는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 게 어려운 점이죠. 그 사람들은 저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화 하루 이야기하면 오늘 갔다가 오고
사인하고 나가면 돼요.

〈대상자 3〉

(그런 절차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어떤 절차로 그렇게 일시정지가 되는거죠?) 제가
직접 찾아와서 담당한테 말을 하고 담당주임님이 서류 주시면은 지금처럼 읽어보고
싸인을 하고 담당님은 윗선에다 결제받고. 그날은 다 풀리는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처갓집에서 다쳤다 입원을 했다 하면 갔다와야하
는데 시간이 안 맞는거예요 타이밍이. 그런 경우라면 싸인을 하고 가야하는데. 원칙상
싸인을 하고 가야 맞는건데 이도저도 안되는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
고. / ... (전화로도 가능한거죠?) / 예 그죠. 근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런 이유.

〈대상자 5〉

6. 준수사항의 긍정적 효과

전자감독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많은 대상자들은 불편함을 주로 호소하고, 무용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 제시한 응답들은 그 중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응답을 모았다.

이들은 준수사항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준수사항이 자신의 충동성을 억제해 주는 측면이 있었으며, 감정적인 행동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막아 주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음... 뭐랄까... 이게, 조금 기분이 화나가지고 욕하는 성질을 이것 때문에, 뭐랄까, 조금 타치를 당하니까 행동을 못 하잖아요. 금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마운 점도 있죠. / (아, 욕하는 걸 이게 좀 막아주는?) / 그렇죠. 욕하는 성질에 사람이 이 사고를 치고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방지하는 건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대상자 2〉

저도 막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 옛날에는 이 집을 털어야지, 했으면은... 한번 뒤에 꽂히면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 그게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인자 그런 게 없으니까 에이, 금방 가겠지, 근데 금방이 아니더라고. / (그래서 전자발찌가 가지고 있는 게 남의 걸 가져가야겠다는 충동들을 좀 막아준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 네. 진짜 많이 막아줬어요.

〈대상자 3〉

그리고 〈대상자 1〉의 경우 충동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가서 안되는 장소로 가게 되는 경우 경보를 통해 경고하여 의도치 않은 위반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 규제가 있어서 불편하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제2의 범죄, 재발방지는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본의 아니게 그런, 이런 게 없었다면 또 언제 술 한 잔 먹고 잘못될 줄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면,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순간순간에 자기가, 남자 같은 경우는 술 먹다보면 이성을 잃어서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또 생계문제로 뭐 계획적으로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범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이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한이 있다 보면 조금은 재범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일단 저를 보호해주는 장치잖아요. 불편하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제가 재범을 이룰 수 없게끔 정부에서 저를 감시해주는 입장이잖아요 ... 접근금지를 할 거는 ...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상하다 느꼈을 경우 저한테 호출을 할 것 아닙니까. 연락을. 거기 가면 안 된다든가. 통제를 해주시면 또 저한테도 좀 이로운 점도 있고, 재범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대상자 1〉

7. 제도 개선 의견

대상자 중에는 전자감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한 응답도 있었다. 두드러진 개선 방안은 전자감독 장치를 소형화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일부 대상자들은 전자칩 등을 피부 안으로 삽입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전자감독 장치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한다는 바램을 표현하였다.

우선은 누군가하고 만나서 연애도 하고 싶은데, 이게 보이잖아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끔 해주면 안 되겠나, 아 그런 것 좀 나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지금은 뭐를 하게 되도 이거는 사람이 옷을 벗는다 하더라도 다 보일 수 있는 신체 일부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여기에다가 그런 거 안 나오자면 어떻게든 신체에 붙여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었으면. ... 이거 크니까 봉대를 감아도 표시는 나요. 근데 만약에 적다, 그러면 봉대 감으면 이 사람 다리 다쳤는갑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울퉁불퉁 튀어 나와 부렸잖아요.

〈대상자 3〉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전자발찌도 이렇게 엄청 큼니다, 이게. ... 일체형이라 먼저 분리형 보다는 더 크더라고요. 크고 엄청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저희들 같은 생각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꼭 전자발찌 불편하게 이렇게 채울게 아니라, 우리 피부에다가 삽입시키는... / (안 보이게?) / 네. 바코드가든가 예를 들어 전자칩이라든가, 생활하는데 안 보이고 불편하지 않게,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전자칩이라든가 이런 거로 정부에서 개발해서 적용을 시키면 생활하는데 덜 불편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같은 거 강아지 같은 경우들 보면 바코드로 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도.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대상자 1〉

그리고 보호관찰 직원들이 제안한 것과 비슷하게, 모범적으로 준수사항을 지킨 대상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부과기간을 줄여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나아가 전자감독 기간도 가석방과 같은 방식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렇죠. 어차피 5년에 대한 것은, 제가 10년을 받았지만 5년 동안 아무 사건도 없어, 그럼 5년에 대한 것은 가출옥을 준단다가 집행유예를 주듯이... 만약에 다시 이 사람이, 당신이 5년 생활을 잘해서 끊어줬는데 사고를 쳤을 땐 이 5년에 대한 것도 쳐야 되지만 다시, ...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에 한 두 명 정도는 어길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안어길 것 같애.

〈대상자 3〉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걸 제 생각이고. 그리고 발찌 찬 사람도 제 생각에는 잘 하는 사람하고 못 하는 사람하고 해서 그 담당님도 계시겠지만, 담당님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이 사람이 뭐 3분의 2를 살았다, 3분의 2를 살았는데, 이 사람은 3분의 1을 솔직히 안 살았어도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재범 우려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해서 서류를 해갖고 올리면 검찰청에 가든지 법원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가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뭐 그런 것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상자 4〉

〈대상자 4〉는 전자감독 대상자들만의 자조마을 또는 공동체 마을을 제안하였다. 전자 발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심한 긴장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꿈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시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 그 안에서 솔직히 뭐 술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근데 그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 일반인이 아닌, 그 나온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 (뭐 전과자이든 아니든 잘 이해해줄 수 있는 분들로?) / 네.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यो. 그니까 뭐.

여기에 들어올 때는 다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기 이 마을은 이런 마을이다, 라는 거 알고 들어오니깐, 그건 자기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피자집 치킨집 다 놓고 나서, 그 대신 나라에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뭐 10년 받은 사람, 5년 받은 사람, 3년 받은 사람... 해서 그 안에서 더 있고 싶으면 더 있어도 되고. 여기서 돈 이제 좀 모아서 내가 끝났지만 더 모아서 나가서 내가 집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으면 나가서 살고 10년 받은 사람은 10년 살면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은 농사 짓고, 그 대신 이제 뭐 나물을 갖다 팔아야 된다, 그럴 때는 판로를 그냥 나라에서 뭐 오송시에 가져다 주세요, 어디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 주면 거기다가 납품을 하는데, 거기다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경매를 해서 팔든 팔아서 그걸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 나갈때는 필요한 사람들 그냥 한 차로 해서 직원이든 뭐든 간에 한 명 해갖고 같이 타고서 같이 가서, 같이 거기서 밥 먹고 해도 되고, 들어오면 혹시 채워서 내보냈다가 채워서 들어오면 풀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목욕탕 가고 싶으면 목욕탕 가고, 수영장 가고 싶으면 수영장 가고, 거기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대상자 4〉

제4절 소결

보호관찰 직원 대부분은 야간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물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나 상황을 막는다는 점에서 야간외출제한 명령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간외출제한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일부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는 강한 저항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저항은 때로는 적극적인 위반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부과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야간외출제한과 같은 금지사항과 함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외출제한과는 달리 일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거주

지 제한', '이수명령'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은 영유아 시설이나 청소년이 활동하는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지만, 도심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너무 많아 필요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올린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야간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명령은 범죄자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에 피해자를 접촉하여 접근 금지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피해자가 보호관찰 직원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거주지 제한은 작은 도시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도시에서는 준수가 불가능하며, 구역을 설정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수명령의 경우 수강 자체의 효과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는 외출제한,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의 감독정지가 가능하지만, 특히 야간외출제한 명령에 대해 주로 운용되고 있다. 보호관찰 직원들은 대상자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감독정지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일시 감독정지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실무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실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일시 감독정지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차적으로 일시감독정지의 결정이 실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전자감독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에 대한 대다수 직원들의 목소리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대상자 특성과 준수사항의 괴리는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준수사항이 과도하게 긴 기간동안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대체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준수사항이 부과되면 이에 대한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야간외출제한의 문제점은 부과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야간 외출 제한의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긴 기간이 설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반면 일단 부과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직원들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부과할 때 짧은 기간을 부과한 후,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을 보이거나 보호관찰 직원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귀가지도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외출제한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야간외출제한은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범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기간 역시 과도하게 길게 설정되어 있어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귀가지도는 준수사항 부과가 없이도 대상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이 전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자감시 및 준수사항 부과 기간이 과도하다는 부담을 표현하는 사례는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자감독에 따르는 전자발찌의 부착이 대상자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와 긴장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문제, 직업 선택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면접상황에서 보고된 준수사항 위반은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위반사항들이었으며,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고자 하는 충동은 본 면접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면접에 응한 대상자들은 필요시 간단한 절차로 쉽게 일시감독정지가 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급한 사유가 있다면 당일 전화로도 신청과 승인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대상자들은 준수사항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준수사항이 자신의 충동성을 억제해 주는 측면이 있었으며, 감정적인 행동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막아주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상자들의 주된 욕구는 전자감독 장치를 소형화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일부 대상자들은 전자칩 등을 피부 안으로 삽입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전자감독 장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호관찰 직원들이 제안한 것과 비슷하게, 모범적으로 준수사항을 지킨 대상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부과기간을 줄여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나아가 전자감독 기간도 가석방과 같은 방식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제안한 응답자도 있었다.

제 5 장

결 론

박형민·황만성

결론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과 효과성

1.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전자감독은 그 목적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전자감독제도 그 자체 뿐 아니라 준수사항의 내용과 집행도 그 목적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예방목적을 가진 처우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수사항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추가 변경 삭제가 허용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며 그 집행에 있어서의 효력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준수사항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그 준수사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정변경에 의한 준수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전담보호관찰관의 판단을 기초로 한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정당한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준수사항 부과 효과성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주요 변수로는 나이와 교육, 동거인과의 친밀도, 경제수준, 결혼여부. 특히 결혼은 모든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에서 재범억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법 시행 이후 대상이 성범죄 외에 살인, 강도, 유괴로 점차 확대되어, 이에 따라 범죄유형별로 구분해서 분석해보았으나 범죄유형은 재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사의뢰횟수가 많은 경우와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가해제 대상인 경우 재범의 확률이 높았다.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재범 여부를 살펴보면, 성범죄가 가장 크게 관련성을 가지는 유형은 변태성욕장애나 충동조절장애였다. 특히 변태성욕장애의 경우 전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단계에서 성충동 등의 질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살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질환은 정신증적 장애, 인격성장애 등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3.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보호관찰직원들은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따라 준수사항에 대해 일시 감독정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일시감독정지의 운영은 보호관찰관의 최종 판단을 따르는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담당자의 재량과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

보호관찰 직원들은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생업, 효과적인 사회복귀 등을 위해 준수사항에 대한 일시 감독 정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준수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장소에의 출입금지’ 등 일부 준수사항은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감독 이외에 여러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재범억제를 위해 준수사항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감독 기간과 준수사항 부과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호관찰직원들 중에서도 감독 기간이 긴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직원이 있었다. 그러므로 준수사항을 일정기간 위반하지 않을 경우 '가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제2절 준수사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 개인 특성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와 결정에 있어서는 보안처분의 정당화 근거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위험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대상자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준수사항의 부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은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6조 제1항은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위하여 검사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검사의 청구전 조사에는 전문가의 진단결과를 고려하거나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어 재범위험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어려울뿐 아니라,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에는 이러한 청구전 조사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다.⁴⁷⁾ 이는 자칫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비판의 단서

47)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보호관찰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항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 되기도 한다.⁴⁸⁾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부착자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한 준수사항의 부과에 관하여 피부착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개별적 준수사항을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청구전 조사의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⁴⁹⁾도 있는데, 청구전 조사가 일반적으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구속수사 기간 내에 ‘청구 전 조사’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형식적 요건인 특정범죄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단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 전 조사 보고서’ 없이 기소처분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거나 나중에 보고서를 갖춰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⁵⁰⁾ 이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향후 대상자의 양형과 처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심리적 조건 등 행위자에 대한 제반사항과 특성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는 ‘청구 전 조사’가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졸속적·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착명령의 청구단계에서 범죄와 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재범위험성 판단기준을 전문화하고, 성폭력범죄 관련 조사전문가 양성, 청구전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보강 등을 통하여 더 정밀한 측정도구와 체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특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범방지와 피부착자의 사회화에 가장 효과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에서의 청구전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판결전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범위험성 판단의 시기에 관하여도 현행법의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데,⁵¹⁾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장래의 재범위험성이라는

48) 박해진, 앞의 논문, 240면 이하 참조.

49) 김범식/송광섭,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2017.6), 219-220면

50) 김범식/송광섭,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2017.6), 219-220면

51) 김해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 149면 이하

표지의 특성상 행위시에 위험성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시에 더 이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안처분을 부과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형집행을 종료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범위험성 유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행의 필요성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의 신설에 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행법상 가해제제도의 적극적 활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판결단계에서 양형기준이 사용되는 것과 같이, 준수사항 부과기준 등을 만들어 범행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준수사항의 최초 부과는 대상자 개인 특성에 맞게 부과되, 재범방지를 위한 기간이라고 판단되는 최소의 기간을 부과하고, 이후 대상자의 행위와 준수 여부 및 태도에 따라서 필요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의 근거규정 신설

「전자장치부착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만 규정하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일시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신청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의 일시정지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방지,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일시정지를 허가해 주는 것이 「전자장치부착법」과 「보호관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실무상으로도 생업종사 등의 사유에 관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이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어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집행에 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시감독정지의 사유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담보호관찰관이 이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점은 피부착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전자감독의 일시정지 권한이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있고 자신의 신청, 주장에 따라 일시 감독정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보호관찰관의 개인적 차이를 불만으로 호소하며 일시감독정지를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법률에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준수사항 일시정지 중에 피부착자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그 비난을 고스란히 보호관찰관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범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기반의 안정, 가족관계의 유지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준수사항의 일시적 정지는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준수사항의 일시정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개개인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원호로서의 필요한 조치로 이루어지는 준수사항의 일시정지의 허용 사유를 생계유지의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일시 감독정지의 허가 사유를 열거적으로 많이 규정하는 것은 피부착자의 준수의지를 약화시키고 법집행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반면, 일시 감독정지의 허가사유를 법률 등에 규정하게 되면, 피부착자가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일시 감독정지를 신청하고 전담보호관찰관은 이를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전담보호관찰관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집행 순응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일시 감독정지의 사유와 요건 등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리운전이나 화물차운전, 보험출동기사 등과 같이 생계유지를 이유로 하는 야간의 출제한명령의 일시 감독정지는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이러한 사유 등에 관하여는 궁극적으로 준수사항의 변경제도를 통하여 대체적인 준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⁵²⁾

3. 보호관찰 전담 판사 제도 운영

보호관찰은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로서 구금형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인권친화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 평가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시설 내 처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⁵²⁾. 이처럼 사회내 처우의 확대 경향으로 인해, 향후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확대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및 운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호관찰 전담판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준수사항에 대한 일시감독 정지의 경우 법적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운영의 신속성과 합리성을 위해서는 판사의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준수사항 부과 내용 정비

보호관찰 대상자 및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보호관찰 직원 및 대상자의 평가에 따르면, 이들이 대체로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실질적 효과가 의심되는 준수사항이 기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장소에의 출입금지’ 규정은 운영도 어렵고 효과도 의심스러우므로, 이같은 준수사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는 실무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단말기를 주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고, 범죄자가 교도소 등에서 수용기간을 마친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검찰이나 법원에게 요구를 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나 직장정보를 제공하면 그 지역을 접근금지 섹터로 설정하여 대상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공받

52) 같은 취지로, 한영수/강호성/이형섭, 앞의 책 154면

53) 이진국, “형사제재체계 내에서의 사회내처우제도”,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겨울), 521면.

을 수 있는 인적 정보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최종 주거지 주소, 조사 당시의 피해자 조사할 때 연락처 정도인데, 판결 송고 시점과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는 시점은 상당기간이 지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므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오래 전의 범죄피해 사실이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보호관찰 직원과의 면접 결과에 따르면,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협조를 꺼리고 있으며, 보호관찰 직원과의 접촉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쌍방향식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원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스마트 워치 형태로 실제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판결 시점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 접근금지 제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동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접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판결 시점 이후 피해자 정보를 꾸준히 관리하여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장소에의 출입금지’ 규정은 어린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상자가 접근을 못하게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도심에 거주하는 경우 많은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거리를 다니는 경우에도 수많은 경보가 작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직장이 대로변에 있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동안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시간인 심야 시간에도 출입금지 규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

적인 효과에 의문을 가지는 직원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 규정 역시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상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범주를 계획하여 시간을 불문하고 사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고려하여야 한다.

‘야간외출제한’, ‘접근금지’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이외에 ‘생업중사’, ‘병원 진료’ 등 사회복귀를 위한 준수사항도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취업알선’, ‘치료비 지원’ 등의 적절한 지원이 수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조치를 병행시켜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가된 준수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귀가지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많은 보호관찰 직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부가된 야간외출제한의 기간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야간외출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귀가지도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불필요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많은 부작용들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귀가지도에 대해서는 일선의 인식과 법무부의 지침에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호성(2012).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호성(2014).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등
- 강호성·문희갑(2010).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보호관찰 제10권 제2호
- 김대진·최천근(2017). 전자감독제도 운영의 효과성 분석. 법무부.
- 김범식·송광섭(2017).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2017.6)
- 김봉수(2011),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36집
- 김양곤·이수정·이민식(2005).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재중(201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 김정현·최상섭·이문성 외(2007).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심신장애 성범죄자의 인지 및 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제46권 제6호.
- 김종오·유영현(2015). 충동조절 장애범죄의 심리적 접근.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 제3호.
- 김혜정(200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 김혜정(2008).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여름호
- 김혜정(2009).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 박광배·고민조(2006). 한국 성범죄자들의 재범예측을 위한 가능한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법무부.
- 박권수·최상섭·이현정(1999). 정신분열병 환자의 살인에 관한 연구: 가족내 살인과 비

- 가족 살인의 비교연구. 대한법의학회지 제23권 제2호.
- 박선영·심희기·이춘화(2010).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형사정책연구원
- 박소은(2009). 폭력범죄 청소년과 정신장애 성향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3호.
- 박정수(2008).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차이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3호.
- 박지선(2014).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고찰: 범행 특성 및 범죄 전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4권 제1호.
- 박혜진(2008).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 서보학(2013).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 신경백·이영준·김경란 외(2012). 국내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51(4): 170-177.
- 안병훈·최상섭·안성호 외(2008).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존속살인의 임상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제47권 제4호.
- 원혜옥(2014).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보호관찰 제12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 윤영철(2008).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 윤정숙 외(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 외(2015).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III):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숙·최상섭(2000).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정신의학적 연구. 대한법의학회지 제24권 제1호.
- 이동명·류기환(2007). 정신장애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397-420.
- 이민식·김혜선(2009). LSI-R 을 이용한 성별, 범죄유형별 재범유발요인.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 이수정·황의갑·박선영(2010).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재범방지를 위한 범

- 죄자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정·이현성·이정현(2013). 문지마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하위유형 연구. 보호관찰 제13권 2호.
- 이인영(2013).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정민·조윤오(2017).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J-DRAI 및 처우계획서를 중심으로, 소년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 이진국(2004). “형사제재체계 내에서의 사회내처우제도”, 형사법연구 제22호
- 이현희(2004).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형벌과 사회적 결속, 교정연구 제24권호.
- 장승일(2016).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률실무연구 제4권 제2호.
- 장연화(201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 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0권 제2호
- 정지훈(2015). 보안처분의 기능과 정당화 과제 - 형 집행 종료 후 개시되는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 정현미(2009). “성폭력범죄대착과 전자감시 -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 최상섭·강순기(1998). 한국에서의 범법정신질환자의 현황에 대한 연구: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11년간의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제22권 제22호.
- 최상섭·나상욱(1998). 감정의뢰된 강간사건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제22권 제1호.
- 최인섭·진수명(2002).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정학(2007).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 제19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최정학(2014).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영수·강호성·이형섭(2013). 한국 전자감독제도론, 박영사
- 홍영오·강호성·노일석(2012).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urnam. M. A., Stein. J. A., Golding. J. M. et al.(1988). Sexual assault and mental disorders in a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43-850.
- Cassel. E. & Berstein. D. A.(2007). Criminal Behavior.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o, Youn-Oh. (2016). The Study on the Key Factors of Recidivism Rates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형사정책* 28(2).
- Dunsieth. N. W., Nelson. E. B. Brusman-Lovins. L. A. et al. (2004). Psychiatric and Legal Features of 113 Men Convicted of Sexual Offense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5(3):293-300.
- Fazel S. Sjöstedt G, Långström N, Grann M. Severe mental illness and risk of sexual offending in men: a case-control study based on Swedish national registers. *J Clin Psychiatry*. 2007; 68: 588-596.
- Gunderson, J. (1974). Management of manic states: The problem of firesetting, *Psychiatry*, 37: 137-146.
- Häkkänen-Nyholm, Repo-Tiihonen, Lindberg et al. (2009). Finnish sexual homicides: offence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88, 125-130.
- Hanson. K. A. & Gidycz.C. A.(1993). Evaluation of a Sexual Assault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6), 1046-1052.
- Knight & Prentky(1990). Classifying sexual offenders: The development and corroboration of taxonomic models. In W. L. Marshall, D. Richard Laws, H. E. Barbaree(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pp. 23-52). New York: Plenum.
- Marshall. W. L. & Barbaree. E.(1990). An integrated theory of the etiology of sexual offending. In W. L. Marshall, D. Richard Laws, H. 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pp.257-175). New York: Pleunm.
- Orchowski. L. M., Berry-Cabán. C. S., Prisock. K. et al.(2018). Evaluations of Sexual Assault Prevention Programs in Military Settings: A Synthesis of the Research Literature. *MILITARY MEDICINE*, 183, 3-4:421.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mpliance in Electronic Supervision : focused on Curfew Order

Bark, Hyung Min • Park, Jun-hee • Hwang, Man-seong

So far, the discuss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focused on the legal nature and validity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itself.

Electronic supervision is aimed at preventing repeat crimes through electronic supervi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operation status and effectiveness of compliance with electronic supervision regulations, such as the nighttime curfew order, to prevent re-offending, so that electronic supervision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The legal nature of the compliance imposed on electronic supervision should be defined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ompliance of the person to whom the probatio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aspects of social treatment and the need to impose sanctions on crime prevention over complianc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special observances so that the effectiv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system can be made.

○ The Legal Nature of Compliance

Electronic supervision is aimed at preventing re-offenders of electronic devices and returning to a society, so the content and execution of compliance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that objective.

The legal nature of compliance can be said to be treated with a special purpose for fulfilling the purpose of re-socializing the probationary. It basically has the nature of being a security measure.

Article 14 paragraph 2 of the Electronic Equipment Adhesion Act states that

the court provides that the decision to add, alter or delete the compliance of Article 9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a claim from the examination upon application of the Chief of the probation office in the case of a change of assessment. Therefore, it can be determined that compliance is basically different from court trials that additional modifications are permitted by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that the effect of the execution is not absolute, but something that can be understood as changeable. For this reason,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probation officer has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compliance item.

○ The Effectiveness of Compliance

Some of the significant major variables affecting the imposition of compliance were age and education, intimacy with cohabitation, economic level and marital status. Marriage, in particular, has been shown to have the effect of recidivism in the model that controls all relevant variables.

The types of criminals who were more likely to be repeat offenders were those who had a large number of requests for investigation, sex offenders who disclos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subjects to temporary release.

○ The Awar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and compliance

The probation officers were operating a temporary supervisory suspension on compliance under the "Guidelines for Enforcement of the Electronic Equipment Adhesion Act." There's the probation officer's final judgment, in effect, the agency was operating primarily on the discretion and judgment of the person in charge.

The probation agency felt that a temporary suspension of supervision of compliance was necessary to ensure the relationship with the target person, the livelihood of the target person, and effective return to society, also demanded legal grounds for this.

The probation agency generally believed that compliance was appropriate, but some said that they found it difficult to operate and were doubtful about its practical effects, such as "no access to specific people, such as victims," and "no access to specific places."

Electronic supervision objects were under a lot of pressure for compliance other than electronic supervision. But some people admitted that they needed some compliance to reinvent the crime.

Electronic supervision objects generally suggested that the period of electronic supervision and the period of imposition of compliance were too long, some probation agency acknowledged that there was a long period of supervis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temporary release' should be applied actively and be operated flexibly if compliance is not viola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 Policy Proposal

First, it is necessary to impose com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objects. To this e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relapse risk shall be specialized, reflecting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criminal in the billing phase of the attachment order. In the sentencing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s, special compliance items that are most effective in preventing re-offenders and socializing of the subjects should be impos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rimes and criminals. It should also seek institutional measures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pre-candidate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or to conduct a separate investigation before the rul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create criteria for imposition of compliance, such as sentencing standards, to induce imposition that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and the target.

Second, a legal basis should be provided for the temporary suspension of compliance. For prevention of re-crime and for social adaptation, allowing a

temporary suspension of compliance can be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Electronic Equipment Attachment Act and the Protection Observe Act. In this context, a temporary suspension of supervision of compliance is in place when there are practical reasons, such as the employment of a living person. However, it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guidance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Equipment Adhesion Act' without direct legal provisions,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this implementation in practice. Temporary suspension of compliance is justifi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perating a judicial system dedicated to probation. Due to the trend of expanding treatment in society, it is possible to expec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probation and electronic supervision in the future.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o operate a probationary judge who can professionally judge on the imposition and operation of probation orders and compliance.

Fourth, the contents of compliance shall be reasonably readjusted. Regulations such as "No Access to Victims" and "No Access to Specific Places" are difficult to operate and their effectiveness is questionable, so consideration is needed to effectively operate such compliance. In addition to compliance to curb repeat offenders,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operate compliance to return to society such as 'breeding workers' and 'hospital care'. And it will need to be operated so that adequate support can be accompanied by "employment consultancy" and "care support."

연구총서 18-AB-03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중심으로 -

발 행 | 2018년 10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02) 2272-0307

I S B N | 979-11-89908-06-5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